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2018-2019

학부모 학생
안내서



친애하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패밀리께,

2018-19 학년도를 맞이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을 전합니다.

교사의 아들이자 공립학교의 산물로서 본인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훌륭한 교육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학교는 인생 전체 동안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우리 커뮤니티의 중심입니다.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자원봉사를하거나, 학부모 지원 시스템 포털 (PASSport)을 방문하여 자녀의 진도를 모니터링하거나, 로컬 교육구 학부모 및 커뮤니티 참여 부서 행정관에게 특정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및 기타 기회에 대한 정보는 achieve.lausd.net/familie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교육감으로서 제 직무 중 하나는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자녀의 교육 및 학교 커뮤니티에 대한 귀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Austin Beutner
총 교육감

해당 부서

교육 위원회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전화번호. (213) 241-6389

팩스 번호. (213) 241-8953



DR. GEORGE J. MCKENNA, III – 제 1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No. (213) 241 – 6382 팩스 번호. (213) 241 – 8441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5120 11th Avenue, Los Angeles, CA 90043

전화번호 (323) 298 – 3411 팩스번호 (323) 298 – 3406

이메일: george.mckenna@lausd.net



MÓNICA GARCÍA – 제 2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213) 241 – 6180 팩스번호 (213) 241 – 8459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monica.garcia@lausd.net



SCOTT SCHMERELSON – 제 3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213) 241 – 8333 팩스번호 (213) 241 – 8467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6621 Balboa Blvd., Lake Balboa, CA 91406

전화번호 (818) 654 – 3785 팩스번호 (818) 654 – 3788

이메일: scott.schmerelson@lausd.net



NICK MELVOIN – 제 4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213) 241 – 6387 팩스번호 (213) 241 – 8453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nick.melvoyn@lausd.net



DR. REF RODRIGUEZ – 제 5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213) 241 – 5555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ref.rodriquez@lausd.net



KELLY GONEZ – 제 6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213) 241 – 6388 팩스번호 (213) 241 – 8451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Pacoima MS – 9945 Laurel Cyn Blvd., Pacoima, CA 91331

전화번호 (818) 686-4560

이메일: kelly.gonez@lausd.net



DR. RICHARD VLADOVIC – 제 7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213) 241 – 6385 팩스번호 (213) 241 – 8452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richard.vladovic@lausd.net

해당 부서

AUSTIN BEUTNER

총 교육감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전화번호. (213) 241-7000

팩스 번호. (213) 241-8442

이메일: superintendent@lausd.net

로컬 교육구

북동 소교육구

8401 Arleta Avenue
Sun Valley, CA 91352
(818) 252-5400

서부 소교육구

11380 West Graham Place
Los Angeles, CA 90064
(310) 914-2100

남부 소교육구

1208 Magnolia Avenue
Gardena, CA 90247
(310) 354-3400

북서 소교육구

6621 Balboa Boulevard
Lake Balboa, CA 91406
(818) 654-3600

동부 소교육구

2151 North Soto Street
Los Angeles, CA 90032
(323) 224-3100

중앙 소교육구

333 S. Beaudry Ave., 11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213) 241-0126

주요 부서

성인 및 커리어 교육	(213) 241-3150	매그넷 프로그램	(877) 462-4798
비온더 벨 (Beyond the Bell)	(213) 241-7900	관리 및 운영	(213) 241-0352
교육위원 비서 부	(213) 241-7002	ADA 준수 부서	(213) 241-4133
예산 서비스	(213) 241-2100	커뮤니케이션 및 언론 관계	(213) 241-6766
차터 스쿨 부문	(213) 241-0399	교육구 운영 및 디지털 혁신	(213) 241-0596
데이터 책무 부서	(213) 241-2460	비상사태 서비스 부서	(213) 241-3889
교육구 양호 서비스	(213) 202-7580	환경적 건강 및 안전	(213) 241-3199
지역 서비스 센터	(213) 241-1000	독립 사정관 부서	(213) 241-6036
교육구 운영 부	(213) 241-5337	총 조사관 부서	(213) 241-7700
학습지도 부서	(213) 241-5333	비즈니스 매니저 부서	(213) 241-4133
특수 교육 부서	(213) 241-6701	최고 회계 책임자 부서	(213) 241-7888
조기 교육 부서	(213) 241-0415	총 법률 부서	(213) 241-6601
교육 형평성 준수 부서	(213) 241-7682	학부모 및 커뮤니티 서비스	(213) 481-3350
동등한 기회 담당부	(213) 241-7685	인사부	(213) 241-7800
시설물 서비스	(213) 241-4811	학교 경찰국	(213) 625-6631
급식 서비스	(213) 241-2993	학교 성적 보고서	(213) 241-5600
인적 자원	(213) 241-6131	학생 건강 및 인적 서비스	(213) 241-3840
정보 테크놀로지 부서	(213) 241-4906	통학버스 부서	(800) 522-8737
학교 대항 운동경기 부서	(213) 241-5847		
KLCS 채널 58	(213) 241-4000		

목차

주제	페이지
출결석	1
○ 결석- 정당한 결석 사유로 인정됨.....	1
○ 결석- 정당한 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2
○ 종교적 사유로 결석	2
○ 무단 결석 통지서.....	2
○ 종교적 결석 면제 시간.....	2
○ 무단 결석.....	2
알콜, 담배, 약물 및 폭력 – 예방 및 금지.....	3
방부 처리한 유기체 및 생체를 과학 수업에 이용하는 대안책	3
연례 체육 교육 조건 통지서	3
석면 및 납 관리	3
수업 시작 전 및 방과후 프로그램	4
블랙보드 커넥트 통지 시스템.....	4
왕따 및 신고식 괴롭힘 방침	5
캘리포니아 학생 성취도 및 진전도 평가 (CAASPP)	5
캘리포니아 주립 조기 평가 프로그램 (CSU-EAP)	5
휴대폰	6
학생 기록에 대한 이의 제기	6
○ 고소건.....	6
거주지/비상시 연락정보 변경.....	6
학생과의 행동 규범	7
대학 입학 필수조건 및 고등교육 정보.....	8
보건 교육 과정 준수 및 캘리포니아 건강한 청소년 법안	8
훈육 기초 방침	11
교육구 서비스 센터	11
성인 및 커리어 교육 부서 (DACE)	11
복장 규정/교복	11
교육 옵션 학교	12
비상시 대처 – LAUSD	12
○ 부모는 비상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2
비상시 대응책.....	12
모든 학생 성공법: 타이틀 1 학교 통지를 알아야 하는 부모의 권리.....	13
필드 트립.....	13
급식 서비스 부서 (Café LA)	13
○ 교실에서 아침 급식	13
○ 급식 신청서.....	13
○ 학생 급식 가격	14
○ 영양 및 카페 엘레이 메뉴	14
○ 학교 급식 프로그램 자격	15
외국 학생 입학.....	15
포스터케어 – 아동 및 가정국 (DCFS) 또는 보호감찰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은 학생	15
정치적 행동, 집회, 군중, 데모 및 워크아웃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15
성적 변경 요청 절차.....	16
총기없는 안전한 학교	16

건강 정보.....	16
○ 전염병 예방	16
○ 진성 당뇨	17
○ 예방접종 필수조건	17
○ 학교에서 처방약 투약	17
○ 구강 건강 정보	18
○ 건강 신체 검진	18
○ 학교 정신 건강- 학생 건강 및 인문 서비스 (SHHS).....	18
○ 학교 정신 건강 의뢰 절차.....	18
○ LAUSD 의 웰니스 센터.....	19
○ 자살 예방, 중재 및 후속 예방.....	19
고교 졸업 필수조건	19
○ 카운슬링 요소	20
영어 학습생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 및 캘리포니아 주 영어 언어 능숙도 평가 (ELPAC)	20
학습지도 테크놀로지 결의안.....	20
종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	20
통합 안전 학교 플랜.....	21
인터넷 사용	21
학교 대항 운동 경기	22
미성년자 감옥/캠프 수감 후 재입학.....	22
학생 기록 보관 장소.....	23
언론 공개.....	23
차별 금지 성명서.....	23
미 장애인 법 하의 통지	24
패밀리 교육적 권리 및 사생활 보호권 (FERPA)통지서	24
양호사-패밀리 파트너십	26
기회 전학.....	26
학부모 및 커뮤니티 서비스 – 학부모 참여	26
학부모 및 패밀리 참여 방침	26
학부모/보호자 연례 콘돔 제공 프로그램 관련 통지서.....	27
학부모 포털	27
학부모의 권리.....	27
○ 학교 자원봉사 프로그램 (SVP)	28
등록허가증 및 학생 전학.....	28
○ CA 개방 등록법	28
○ 타교육구로의 등록허가 및 전학.....	28
○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 및 전학.....	29
체력 검사.....	29
배상/부모의 배상 책임.....	29
학생 책무 보고서	30
학교-중심 메디칼 서비스.....	30
학교 경험 설문조사.....	30
거주지 학교	30
학교 스케줄	31
성희롱 방침	31
특수 교육: 고소 처리 부서 (CRU)	31
학생 사고 보험.....	31
학생 출석 옵션.....	32
학생 건강 보험	32
학생/학교 품행 규정.....	32

학생 수색	32
거주지가 없는 홈리스 학생	33
학생의 개인 소지품	34
장애 학생 및 특수 교육	34
섹션 504 하의 장애 학생	34
임시 장애 학생	34
의심스러운 아동 학대 및 방치 신고	34
정학 및 퇴학	35
○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항소	37
○ 퇴학 후 재활 및 복원	37
타이틀 IX 및 학생	37
교통편 – 통학버스	37
○ 통학버스 승차시 행동 규범	38
균일 고소 절차 (UCP)	38
학교 캠퍼스 방문인	40
월리엄/벨렌주엘라 균일 고소 절차	41

출석

캘리포니아 풀-타임 의무 교육법

교육법 제 48200 에 의하면, 제 3 장 하에(제 48400 부터 시작) 면제된 6 세에서 18 세 사이의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은 풀타임 의무교육의 대상이 된다. 풀타임 의무 교육 대상자 그리고 제 2 장 또는 제 3 장에(제 48400 부터 시작) 의해 면제되지 않은 의무 컨티뉴에이션 교육 대상자는 정규 공립학교 또는 컨티뉴에이션 학교 또는 클래스에 해당 교육구 운영 위원회에 정한 학교 시간 동안 출석하며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가 위치한 거주지에 사는 기간동안 해당 학생을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 또는 기타 사람은 학생을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거주지 해당 교육구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 전체 학교 시간동안 정규 공립학교나 컨티뉴에이션 학교 또는 클래스에 출석시킨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참터 13.57 항- 미성년자 대상 낮시간 제약

- A.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의 의무 교육 또는 의무 컨티뉴에이션 교육 대상자가 본 조항의 B 부조항에 정의된 바, “학교에 결석한 상태에서 공공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은 불법이며, 다 해당 미성년자가 13.57.020 항에 명시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 B. 이 조항의 취지 상, 다음의 경우 미성년자는 “학교에 결석한 상태에서 공공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며 즉 해당 미성년자가 학교에 있을 동일한 날짜에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1 시 30 분까지, 공공 도로, 길, 고속도로, 차량길, 연석 주변, 골목, 운동장, 놀이터, 또는 기타 공공 운동장, 공공 지역 또는 공공 건물, 유원지 또는 음식점, 공연 또는 감독인이 없는 지역, 또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이리 저리 배회하거나, 천천히 걸거나, 놀거나, 목적지 없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Ord. 96-0009 § 1 (part), 1996]

2012 년에, LAUSD 학생 건강 및 인문서비스 부서, 학생 서비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및 로스앤젤레스 시 경제 및 취업 개발 부서는 낮시간에 학생 통행 금지 법을 위반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무단결석 방지 프로그램을 창설했다. 로스앤젤레스 학교 경찰은 학교 교정 밖에서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 학생에게 위반장을 더 이상 발부하지 않는다. 현재, 낮시간 통급 조례를 위반한 이런 학생들에게는 무단 결석 방지 의뢰서가 발부되며, 그 학생은 학생 서비스 및 출결석 (PSA) 카운슬러와 로스앤젤레스 시 전역에 위치한 관할 유스소스에서 심의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PSA 카운슬러는 해당 학생과 부모를 만나서 교육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학업, 출결석 및 행동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 PSA 카운슬러는 인근 지역의 해당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며 그리고 출석 학교의 교직원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합당한 결석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든 학생들은 매일 풀타이로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 (교육법 제 48200 항). 모든 학생들의 96% 또는 그 이상의 출석률이 목표이며, 이는 일년 동안 7 일 이하의 결석을 의미한다. 결석은, 합당한 사유 또는 부당한 결석 사유에 상관없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지장을 준다. 결석을 진실로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를 학교에 매일 출석시키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부당한 결석사유에 속한다:

- 가족을 위한 심부름
- 동생들 돌보기
- 휴가 또는 여행
- 나쁜 날씨
- 교통편 문제

학교 출석은 학생의 학력 성취에 절대적인 요소이다. 출석률이 양호한 학생은 학업과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학교는 현재 학년도 동안 출석 데이터와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해당 학년도가 종료된 이후에, 출석 데이터와 기록을 정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석한 다음 학교에 다시 온 후 (10)일 이내에, 결석 사유서를 제공하여 자녀가 무단 결석으로 넘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부모/보호자의 책임이다. 지각, 조퇴 및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결석에 해당된다.부모/보호자들로부터 학생의 결석사유를 알게되는 즉시, 다음의 교직원들은 결석사유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제 5, 제 421 항):

- 학교 양호사 또는 공공 보건국 간호사
- 출결석 담당 슈퍼바이저(예: PSA 카운슬러)
- 의사
- 교장
- 교사
- 이런 검증을 하도록 배정된 교육구의 기타 유사직 직원

결석사유 검증을 위임받은 학교-현장 교직원은, 결석사유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사실이 제시될 경우, 결석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해당 결석사유를 거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5, 제 306항).

결석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정당한 결석사유: 캘리포니아 E.C. 48205 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정당한 결석사유로 인정된다:

-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격리
- 의료, 치과, 안과 또는 척추 의료 서비스
- 직계 가족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또는 학생의 직계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친척(캘리포니아 주 1 일, 타주 3 일)
- 배심원 의무
- 학생 자신이 양육 부모이며, 자신의 자녀의 질병 또는 의료 치료가 요함
- 전투 지역의 현역 병역 의무로 방문, 투일 또는 집에 바로 도착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함 (직계 가족; 최고 3 일)
- 선거를 위해 선거구 멤버로 봉사함
- 학생의 시민권 기념 행사 참여
- 합당한 개별적 사유는 부모가 결석을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교장 또는 담당인이 승인을 한 경우이다. 이런 영역에 속한 결석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전투 지역에 파견된 현역 병역 의무 (직계 가족; 최고 3 일 허용)
 - 법정 출두

- 장례식 참석 (연장된 일수)
- 종교적 피정 참석 (한 학기당 4 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합당한 취업 허가증을 지참한 연예 업체에 일하는 경우 (해당 학년도 동안 연속하여 5 일을 초과하지 못하거나 최대 5 일 결석)
- 의료적 제외 또는 면제
- 종교 및 문화적 명절 및 의식 또는 세속적인 역사 기념일
- 종교 교육 (최소 학교일 1 개월마다 4 일을 초과 못함)
- 향소 절차를 통한 기각된 정착처분
-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예술 단체에 참여 (해당 학년도 동안 최고 5 일)
- 미리 예약이 된 정신 건강 서비스(정신 건강 데이 치료)
- 아들 딸의 부모 직장 경험의 날®

위에 언급된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되어 결석이 발생한 적절한 사유를 접수하는 즉시, 해당 학교는 그 결석을 정당한 결석으로 고려할 것이다. 위에 언급된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는 학생은 결석동안 미완성한 과제 및 숙제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주어진 경우 완성하도록 허용되며, 만족스럽게 완성한 경우, 정상시와 동일하게 학점이 수여된다. 결석한 수업의 담당 교사가 과제의 내용과 해당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한다. 테스트 및 과제는 결석 기간동안 하지 못한 테스트 및 과제와 적당하게 상응하는 내용이지만, 동일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결석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위에 명시된 정당한 결석사유로 인한 결석을 제외한 다른 결석들은 근거 없는 결석으로 간주된다. 법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모든 결석에 대해 왜 결석했는지에 대한 설명(서면 또는 구두로 정당성을 설명)을 심 (10)일 이내에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당 학생은 무단 결석생(무단 결석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리고 학생 출결석 심의위원회(SARB) 그리고 시 또는 교육구 검찰청에 의뢰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제시하면, 해당 학생은 교장의 사전 승인 하에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결석할 수 있다 [교육법 제 46014] 더불어, 종교적 피정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수 있지만 매학기 4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교육법 제 48205 (a)(7)]. 위의 사항은 정당한 결석으로 간주되며 그런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미완성 공부를 보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무단 결석 통지서

6 세부터 18 세 미만의 학생이 합당한 결석사유를 제공하지 않고, 해당 학년도 동안 결석, 조퇴 그리고/또는 30 분 이상 지각을 3 회 이상 한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자동적으로 무단결석 통지서가 우송될 것이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분류되어 계산된다.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런 서신이 작성하게된 학교로 연락하도록 한다. 결석과 관련하여 정정하거나 업데이트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한 정정은 해당 학년도가 종료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통지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이 통지서를 발부한 해당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출결석 데이터 및 기록 정정 및 업데이트는 해당 학년도가 종료된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면제 프로그램

부모/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수반한 경우,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도덕 및 종교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결석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위원회 규정 2125 항 그리고 교육법 제 46014 조에 의거한 것이다:

- 해당 학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면제 (Religious Released-Tim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학교일 일주일 동안 40 분 미만으로 허용된다.
- 어떤 학생에게도 학교일 1 개월마다 4 일을 초과하는 이런 목적을 위한 결석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 각 학생은 적어도 각학년에 준한 최소 학교일만큼 학교에 다닌다.
- 당일 면제 시간은 교장에 의해 결정되며, 매주 같은 시간에 동일한 교실에서 실시된다. 이것은 수업이 자주 중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무단 결석

의무 교육을 풀타임으로 받아야 하는 학생 또는 연속 의무 교육의 대상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한 학년도 동안 삼 (3)일을 전체 결석하였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한 학년도에 삼십 (30) 분 이상의 지각 또는 결석을 3 번 한 경우, 또는 위의 내용을 어떤식으로도 합계하여 해당되는 경우, 해당인은 법에 의거하여 무단결석으로 간주된다 [교육법 제 48260 (a)항]. 자녀가 무단결석생으로 처음 분류된 경우, 교육구는 그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우편 혹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단 결석 통지서를 (교육법 제 48260.5 항), 통해 다음을 통지한다:

- 학생이 무단결석생이다
-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다.
- 이런 의무를 불이행한 부모나 보호자는 위반사항에 대해 유죄이며 기소될 수 있다.
- 대안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 교육구에서 제공될 수 있다.
-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의 무단 결석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교직원과 만날 권리가 있다.
- 해당 학생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당 학생은 운전 특권의 중지, 제한, 연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학교에 와서 하루 동안 학생과 함께 수업을 참관할 것을 권고받는다.

해당 학년도 동안 무단결석으로 삼 (3) 회 이상 보고되었고 그리고 담당 교육구 직원 또는 교직원이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학생과 적어도 1 회의 면담을 실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후에도, 결석한 경우 상습적 무단 결석생(habitual truant)으로 간주된다[교육법 제 48262 항].

상습적 무단 결석생으로 간주되거나 정기적으로 학교를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시 상습적으로 비복종 또는 무질서한 행위를 하는 학생은 학교 출결석 심의 위원회 (School Attendance Review Board-SARB)에 회부될 수 있다. 학교 출결석 심의 위원회 담당인은

부모/보호자에게 학교 출결석 심의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통지서를 보낼 것이다. 해당 통지서에는 해당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 출결석 심의위에 와서 면담을 받도록 요구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법 48263 항].

부모, 보호자 기타 사람이 학교 출결석 심의위의 지시 또는 제공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출결석 심의위는 교육구 변호사에게 이를 알리고,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관련인에게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지한다 [교육법 48263.5 항].

교육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과 로스앤젤레스 시 검찰청과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무단 결석생의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콜, 담배, 약물 및 폭력-예방 및 금지

공문 문서 번호 3277.1, 약물, 알콜, 담배 및 기타 독성을 관련 법규 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책 및 규정 절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교 교정이나 학교 후원 행사에 학생이 약물, 술, 담배 또는 관련 도구를 사용,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학교 행정관은 교정 및 학교 행사에서 약물, 술, 담배 또는 관련 도구의 사용, 소지 또는 판매를 방지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위반 학생의 징계에 있어서, 학교 행정관은 학교 경찰 및 커뮤니티 기관과의 공조 하에 약물, 술, 담배, 폭력 없는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예방-교육, 직접 중재, 정학, 퇴학 또는 체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케이스별로 처리된다.

흡연 및 모든 담배 제품, 마리화나 알콜이나 처방약 남용을 포함한 약물 사용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전체 부지에서 금지되며, 이에는 교육구 소유 또는 임대 건물과 교육구 차량도 포함되며, 직원, 학생 및 학교나 교육구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항상 금지되며, 교육구 후원 행사 참여에서도 금지된다.

더불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ENDS) 사용을 금지하며, 전자담배, 후카펜, 시가리오스 및 기타 기체 방출 도구가 금지되며, 니코틴이 함유 및 비함유에 상관없이 금지되며, 담배 제품 사용을 모방하는 것도 모든 교육구 부지와 교육구 차량에서 항상 금지된다. ENDS 는 담배, 시가와 파이프 모양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펜, 천식흡입기와 식음료 용기와 같은 일상품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도구들은 기체 니코틴에 제약되지 않으며; 마리화나, 코카인과 헤로인과 같은 여러 약물을 기체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형법 제 308(a)(1)(H) 항에 의거하여, 미성년자 즉 학생에게 전자담배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따라서 학생은 이런 도구를 소지해서는 안된다. ENDS 를 사용, 소지, 또는 권유, 판매를 주선하거나 협상하는 행위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해당 학교 현장에서 도움을 찾을 것을 권한다.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학습지도 부서의 건강 교육 프로그램 부 또는 로컬 교육구의 구조적 퍼시리데이터에게 연락하십시오.

알콜, 담배 및 기타 약물 사용 예방 교육은 헬스 교과목에서 가르친다. 헬스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는 학과 내용은 검증된 중재가 포함된다. 더불어, 폭력 예방-교육도 검증된 사회-정서 학습에 중점을 둔 중재법으로 가르친다. 채택된 그리고 요구되는 검증된 예방-교육 교과과정은 2001년 NCLB 법 조건 및 타이틀 IV, 안전 및 마약 없는 학교와 커뮤니티 법에 의한 채택된 그리고 요구되는 증거-중심 교과과정 충족을 위한 공문번호 3403.1 로 학교에 제공되었다. 학교 차원의 시행을 위해 초등학교는 REF-3398.1 로; 중학교는 REF-3404.1; 그리고 고교는 REF-3405.1 로 설명되었다.

방부 처리한 유기체 및 생체를 사용하는 과학 실험의 대안

교육구 방침 및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2255.1 조에 의거하여, 동물을 대상으로 한 과학 실험 수업을 도덕적 사유로 인하여 거부하는 학생에게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거나, 대체 수업 활동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동물이 이용될 과학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생은 대체적인 수업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부모의 내용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배정된 수업은 과학 수업과 상응하는 시간과 노력을 학생에게 요구되는 것이어야 한다.

체육 교육 필수조건 연례 통지서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1210(a)(7) 항에 의거하여, 1 학년부터 6 학년의 초등생들은 10 일의 학교일마다 총 200 시간 이상의 체육 수업을 받아야 하며, 이에는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초등교 교사들은 각자의 체육 수업 일정을 학교 웹사이트나 초등교 담당 학급에게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체육 수업 일정은 그 학교의 사무실에도 붙여 놓는다. 체육 수업 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은 자녀의 교사 또는 교장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한다.

체육 교육 이의 제기 고소장. 자녀가 법으로 정해진 체육 교육 수업 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고소장 서식서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구 체육 교육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Page/8392> 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메인오피스에 가서 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체육 수업에서 요구되는 총 시간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학교로부터 받은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로컬 교육 서비스 센터의 학교 학습지도 디렉터에게 연락할 수 있다. 체육 수업에서 요구되는 총 분단위 시간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학교로부터 받은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해당 로컬 교육구에 학교 담당 디렉터에게 연락할 수 있다.

석면 및 납 관리

교육구에 속한 각 학교에는 석면 관리 계획서(AHERA 보고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가 해당 학교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상태에 대해 알려준다. 학교는 석면 제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및 법적 보호인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AHERA 보고서는 6 개월마다 한 차례씩 최근의 정보로 업데이트되고, 요청시 검토용으로 제공된다. 샘플링 결과를 포함한 식수의 납에 대한 정보는 <https://achieve.lausd.net/Page/3450>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 및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구 산하 단체인 비온드 더 벨(Beyond the Bell-BTB) 부서는 수업 시작 전, 방과후 프로그램, 연장 학습 기회(Extended Learning Opportunities), 보충 교육 서비스(Supplemental Educational Services) 그리고 학생 보조 서비스(Student Auxiliary Services)를 담당하고 있다. 아래에 간략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추가 정보는 (213) 241-7900 으로 전화하거나, BTB 웹사이트를 www.btb.lausd.net 검색 또는, BTB 사무실 주소 333 South Beaudry Ave., 29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수업 시작 전, 방과후 프로그램 -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있는 커뮤니티 단체와의 파트너십 하에 BTB 는 훈련받은 직원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업 지원, 심화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한다.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BTB 는 튜터링, 멘토링, 시각 및 공연 예술 및 여러 체험 기회도 선정된 학교에 제공한다.
- 연장 학습 기회 - 각 학교는 학년별 학습기준에 미달되는 학생 그리고 캘리포니아 고교 졸업시험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학교 수업일 그리고/또는 수업이 없는 날에 보충 수업을 제공한다. BTB 는 학습기준에 미달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주자 교육 프로그램(Migrant Education Program), 자금이 있을 경우 고교 학점 재취득 섬머 스쿨 프로그램, CORE 면제 프로그램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기타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연장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학생 보조 서비스(Student Auxiliary Services) - BTB 학생 보조 서비스는 안전하고, 전인적이며 잘 감독된 활동을 제공하며, 이는 교육을 교실 밖으로 그리고 정규 학교 시간 이후로까지 연장시킨다. 여러 서비스에는 학생, 학교, 교직원 및 커뮤니티를 위한 보조 서비스뿐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포함된다. 방과후 안전망 역할을 하고 심화 및 스포츠 프로그램인 유스 서비스(YS)가 이런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이 프로그램은 하교 시간 이후부터 오후 6 시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제공된다; 클리어 클릭 및 포인트 퍼민 야외 교육 센터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 과학 학습기준을 지원하고 인간 관계 활동을 접목시킨 야외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 레디-셋-고우,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유스 서비스 플러스, 시정부 센터 퍼밋 프로그램 및 고용인 레크리에이션 유니트 등.

블랙보드 커넥트 통지 시스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블랙보드 커넥트라고 불리는 교육구 전역 통지 시스템을 통해 비상 상태, 출결석, 학교 행사 및 귀하와 귀하 자녀에게 관련된 중요 사항을 부모 및 교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블랙보드 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개별적 음성 메시지를 귀하의 가정, 직장 또는 휴대폰으로 보내고 또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와 소셜네트웍을 통해 귀하게 연락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에 대한 비용은 부모와 보호자 책임이다. 블랙보드 커넥트를 통해 교육구 소속 모든 사람에게 몇분내에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며 이로서 학교와 학부모 및 교직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부모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학생의 성취도와 안전을 높일 수 있다. 귀하의 현재 연락 정보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 이머전시 정보서에 일반 통지, 출결석 및 비상시 통신을 어떤 전화번호로 전달받기를 원하는지를 명시할 수 있다.

블랙보드 커넥트 정보를 받기 위해 어떤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가?

학교가 귀하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 **일반 통지**는 초저녁에 보내지며, 이런 일반 통지는 비-긴급성으로서 앞으로 있을 행사나 공고 내용들이다.
- **결석 통지**는 대개의 경우, 아침 시간 그리고 초저녁 시간에 보내진다. 이런 메시지는 자녀가 한 교시 이상 또는 하루 전체를 결석한 것으로 보고된 경우에 보내진다. 가장 적절한 번호는 낮 시간동안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이다.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들은 직장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이에 해당된다. 낮시간에 집에 있는 부모인 경우, 집 전화번호가 해당된다. 낮시간 동안에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결석하는 연락번호로 집 전화번호를 추천하지 않는다.
- **비상 상황** 통지 메시지는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며,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보내질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부모가 제공해야 하는 전화번호는 취침 이외 시간에 가장 잘 연락될 수 있는 번호이어야 한다. 블랙보드 커넥트는 일반 및 결석 통지를 포함한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로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번호는 이머전시 카드에 적힌 대체 연락번호가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의 전화번호여야 한다. 학교가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이머전시 카드에 있는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 **교사 메시지**는 자녀의 현재 학업 수준, 품행 및 학습 습관 그리고 학급 관련 공지 및 통지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보내진다.

중요한 전화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 학교(또는 교육구)가 전화 연락을 취할 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콜러 ID 에는 학교 (또는 교육구) 명칭 또는 전화번호가 될 것이다.
-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중, 주변 잡음은 이 시스템을 “중지 및 시작”을 초래시킬 수 있다. 블랙보드 커넥트는 사람이나 자동응답기/음성 메시지에 연락이 닿았는지 그리고, 주변 잡음이 메시지 전달에 지장을 주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매우 세밀히 접속되어 있다. 가급적 조용한 곳으로 가서 받거나, 귀하 전화기에 “mute” 버튼을 누르시오.
- 메시지의 일부를 놓쳤을 경우,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 전화기의 “*” (스타) 키를 누르면 전체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855) 473-7529 로 전화하여 최근의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다.
- 블랙보드 커넥트 서비스는 교환번호로는 연락이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곧 이용 가능할 것임), 직접 연결되는 번호여야함을 유념하시오.

일반 통지를 선택하지 않은 방법:

부모는 일반 통지 메시지를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 메시지 끝날 무렵 음드-아웃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시 메시지 받은 것으로 선택하고 싶은 경우, 이런 전화를 받았던 전화기로 (855) 502-7867 으로 전화하면 된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않으려면, 문자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일반 통지 전화에만 해당된다. 출결석 및 비상 연락 전화는 계속해서 보내질 것이다.

완전히 작성된 학생 이머전시 정보서를 가급적 신속히 자녀편으로 보내도록 한다. 연락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정정해야 한다면 학교로 직접 연락하도록 한다. 해당 학교만이 이런 귀하의 연락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학교가 귀하의 현 연락번호를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며, 그래야만 귀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개인 정보는 철저히 기밀로 유지될 것이며, 본 교육구의 시큐리티 방침에 의거하여 준수될 것이다.

왕따 및 신고식 유형의 괴롭힘 금지 방침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안전한 직장 및 학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전심전력할 것을 약속한다. 교육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복지에 저촉이 되거나 배움과 교육을 방해하는 왕따 행위, 신고식 타입의 괴롭힘 또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 교육구는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 또는 조사 과정에 개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하며, 이 방침은 교육구 관할권에 소속된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공립학교에 속하는 모든 프라이머리,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안전, 안정, 평온한 교정에서 근무하고 공부할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권리가 있다(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1 조, 28(c)항). 왕따 및 헤이징 방침은 연방법, 주법 및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 및 교직원들은 상호 존중 및 수용 환경을 육성해야 한다.

본 방침은 학생, 교육구 직원 및 관련 성인 사이에 발생한 행동 및 행위들이 포함된다. 본 방침은 학교 교정 내, 학교 및 교육구-관련 활동 및 행사 장소, 등하교 그리고 교육구 관할권 소속 기타 구역에 적용된다(교육법 제 48900(s)항).

왕따는 (bullying) 의도적이며 상대방이 원치않는 심각하거나 침해적인 신체, 언어 또는 전자상의 행위로서, 다음들 중 하나의 효과를 취득할 의도로 또는 그런 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
- 신체 또는 정신 건강에 파괴적인 효과가 상당한 경우
- 학업 성취를 상당히 방해하는 경우
- 학교 서비스, 활동, 특권에 참여할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상당한 방해를 주는 경우

사이버 왕따 행위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왕따 가해 행위이다(예: 문자, 이메일, 블로그, 포스팅). 학교에서 또는 학교-관련 활동 및 행사시 사이버 왕따 행위에 개입한 학생은 징계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행위가 개인 전자 도구를 통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교정 밖에서 발생했지만 학교의 안전이나 학업 환경을 저해하는 커뮤니케이션 경우에도 교육구 관할권 하에 적용될 수 있다.

신고식형 괴롭힘(Hazing)은 학생 단체나 학생회 회원되거나 회원 희망자들에게 신고식 또는 신고식 유형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단체가 교육 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된 단체이거나 인정되지 않은 단체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섹스팅 또는 사이버 성적 왕따 행위는 부적절한 성적 내용을 전자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일단 게시되면, 이런 영상의 이용을 통제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성적 영상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참여한 학생은 징계처분,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섹스팅이 평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해당 학교의 행정관에게 서면으로 이런 혐의주장을 제기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할 것을 권한다. 추가 정보,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로컬 교육구에 연락하도록 한다. 인간 관계, 다양성 및 형평성 부서에(213) 241-8678로 연락하면 자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차별/괴롭힘 혐의에 대한 혐의주장은 교육적 형평성 부서에 (213) 241-7682로 연락한다.

캘리포니아 학생 성취도 및 진전도 학력고사 (CAASPP)

캘리포니아 학생 성취도 및 진전도 학력고사 또는 CAASPP 는 주 학력고사 프로그램이다. CAASPP 는 학업 진전도를 매년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모든 학생들이 대학과 커리어를 준비한 상태에서 고교를 졸업시키기 위함이다. CAASPP 학력고사는 다음의 학력 평가를 포함했다:

- 스마트 발라스트드 종합 수학 및 영어 (ELA) 학력고사는 3 학년부터 8 학년 그리고 11 학년생 대상으로 함.
- 캘리포니아 대안 학력평가는 (CAA) 유자격 3 학년부터 8 학년 그리고 11 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ELA.
- 캘리포니아 과학 시험은 (CAST) 5 학년과 8 학년을 대상을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모의 테스트로 일회 실시된다.
- 캘리포니아 대안 과학 학력평가는 (CAA) 5 학년, 8 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일회 실시되는 시범적인 테스트이다. 2019년 봄학기 CAASPP 학력고사 이후, 개별 점수 보고서는 부모들에게 보내질 것이다. 시험 점수를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부모 포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학생 점수 보고서는 종합 점수 그리고 ELA 및 수학 성취도 등급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5, 8, 11 학년생의 점수 보고서에는 과학 시험 결과도 포함될 것이다. 조기 학력 평가 프로그램 (EAP) 결과는 11 학년 학생의 점수 보고서에 포함되며, 이는 대학-수준의 학과목을 이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조기에 알려주는 정보이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가 CAASPP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라도 치르지 않도록 면제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자녀를 이런 시험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싶다면, 요청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야만 한다. 가급적 학교에 신속히 알려서, 학교가 자녀를 위해 시험 시간동안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일정은 www.lausd.net 에서 알아볼 수 있다. LAUSD 하에 교육구 학교 칼렌다를 클릭하도록 한다. 자녀 학교의 학력고사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다면, 학교 교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http://www.cde.ca.gov/ta/tg/ca/> 에 게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조기 평가 프로그램 (CSU-EAP)

EAP 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의 합동 프로그램이다. EAP 는 12 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영어와 수학에서 대학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조기에 평가받을 수 있다. 더불어, EAP 는 CSU 신입생들과 CCC 에게 요구되는 영어 그리고/또는 수학 배치고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EAP 는 CAASPP 스마트 발라스트드 의 11 학년 대상 ELA 과 수학 학력고사 점수를 점목시키고 있다. 11 학년때 이 학력고사를 치르는 학생은 자동적으로 EAP 에 참여하게될 것이다. 학생 자신의 대학 학업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리기를 원한다면, 학생은 자발적으로 그 점수를 CSU 와 CCC 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입학 사정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CAASPP 프로그램 CSU/EAP 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녀의 카운슬러 또는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http://www.cde.ca.gov/ci/gs/hs/eapindex.asp>.

휴대폰 및 기타 모바일 도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 방침에 의하면, 학생들은 휴대폰, 전자 이동 기구를 정규 학교 시간동안 사용할 수 없다. 학생들은 휴대폰 또는 기타 전자 이동 도구 즉 카메라, 전자 게임기, 라디오, MP3 플레이어, 계산기, 태블릿 등을 교정에서 소지 할 수 있지만, 이런 도구들은 오프 상태로 락커, 백팩, 지갑, 포켓 주머니 또는 기타 장소 등 정규 학교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휴대폰, 또는 기타 전자 이동 도구는 수업 전 또는 방과후 교정에서 사용이 허락되며 또는 학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의 발생하는 학교 활동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교육구, 주 및 전국 학력 평가 실시 중에는, 학생은 전체 테스트 시간 동안 어떤 때라도 비허용된 전자 도구를 이용하는 것을 금한다. 수업 시작 전 그리고 방과후에라도 교직원이 휴대폰, 페이지, 전자 신호 전달 기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이것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 자율 위원회(School Site Council)를 통해 보다 엄격한 휴대폰 방침을 채택할 수 있다. 통학버스 내의 휴대폰 사용은 비상 상황에만 국한된다; 운전사의 허락이 요구된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교통편 서비스부에 (800) 522-8737 로 연락하십시오. 본 교육구는 휴대폰 또는 기타 전자 이동 도구의 분실 또는 절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학생 기록 정보에 대한 이의 제기

- A. 학생 기록의 일부 또는 전체의 검사/검토는 정규 학교 시간에 행해지며, 학부모(또는 해당되는 경우 학생과)와 학교 직원이 상호 편리한 시간으로 주선될 것이다. 교육구 유자격 직원이 반드시 참석하여 서류 보관인의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어야 한다. 일개 학생의 학생 기록이 다른 학생 관련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런 자료를 검사 및 검토를 원하는 부모(또는 학생, 해당되는 경우)는 당사자 부모의 자녀와 관련된 부분만을 볼 수 있다. 부모(또는 학생, 해당되는 경우) 교육 기록의 일부분 또는 전체 내용에 대한 사본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교가 사본을 제공할 것이다. 해당 학교 또는 교육 서비스 센터는 요청한 사본의 첫 페이지는 25 센트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10 센트(\$.10)의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가주 교육법 제 49070 조에 의하면, 부모(또는 학생이었던 사람)는 성적을 제외한 다음의 기록 정보 제거 또는 정정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해당 학생 기록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틀린 정보
-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결론이나 추정
- 외부 비전문인에 의한 결론이나 추정
- 기록된 관찰 내용의 시간, 장소, 관찰인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개인적인 관찰내용을 근거로 한 경우
- 오도 내용
- 해당 학생의 사생활 또는 권리 침해하는 내용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교육 기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교장이 부모가 제기한 이의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록은 정정되거나 제거될 것이다. 교장이 부모의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항소할 수 있다. 교장의 결정에 반대하는 항소는 로컬 교육구 학습지도부 교육감에게 제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교육위원회에 제기하게 된다. 로컬 교육구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는 중립적인 패널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이의 제기 내용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만약 패널이 부모의 이의를 인정하는 경우, 이의 제기된 자료는 정정 또는 제거 및 소멸될 것이다. 만약 부모의 이의가 최종적으로 거부된 경우, 부모는 해당 정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이의 제기된 정보가 변경, 제거되지 않는 한 그리고 변경, 제거될 때까지, 이런 진술서는 학생의 학교 기록의 일부가 된다.

- B.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는 별개의 절차가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9066 조에 의하면, 사무 또는 기계상의 오류, 사기, 불성실, 무능력의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가 학생에게 내린 성적은 최종적이다.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는 캘리포니아 법규 및 LAUSD 방침에 의거하여 실시될 것이다. 성적 변경 요청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참고하십시오.
- C. 교직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이나 정보는 해당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참고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교직원의 대리교사를 제외한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없으며 그리고 부모 또는 성인 학생이 조사, 검토 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교육적 기록이 아니다.
- D. 학생이 등록하기를 원하거나 등록 의사가 있는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적 기록은 해당 학교로 보내진다.

고소 제기

권리 및 사생활 보호권에 대한 교육구 절차 관련 고소장을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그리고/또는 가족 정책 준수 부서, 미 문교부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Washington, D.C. 20201.

거주지/비상시 연락처 변경

주소, 전화번호 또는 비상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알리는 것은 부모, 보호자 또는 포스터 케어 성인의 책임이다. 학교가 거주지 정보 조건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 했다고 가정할 경우, 학생의 가정이 주소 변경 이후 30 일 말력 날짜 이내로 통지하는 것을 불이행한 경우, 모든 종류의 퍼밋에 대한 권리가 몰수되는 사유가 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미 우편물)과 구두 전달(전화, 휴대폰)의 두가지 방법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학생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학부모/법적 보호자나 탁아인에게 즉각적으로 연락취하기 위해, LAUSD 는, 교육법 제 49408 항에 의거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비상시 연락처 정보를 학교의 정식 이머전시 카드(서식 34-EH-12, 수정 1/14)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학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탁아인은 학생이 학교에 등록할 때마다 이머전시 카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한다. 이머전시 카드의 기재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집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포함한 현재 사용하는 전화번호
- 직장/비즈니스 주소 및 직장 전화번호
- 친척/친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서 이들은 비상 사태 발생 시, 학부모/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을 픽업해서 돌보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녀가 학교 버스로 왕복 통학을 하는 경우, 자녀의 버스 노선 정보; 버스 노선 번호, 승차차장소를 포함하여 기입한다. 더불어, 장애 학생의 부모는 비상시 자녀를 데려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먼전시 카드에 기재되지 않은 어떠한 사람도 학생들 데려가지 못하며, 단지 각 케이스 당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서면 허락서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부모는 적어도 일년에 두번 이런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갱신해두어야만 한다. 부모 및 친척/친구의 비상 연락처 전화번호는 학부모 포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성명 또는 주소와 같은 기타 다른 정보는 반드시 직접해야 한다.

학생과의 행동 규범

본 교육구는 서약하는바, 학생과 접촉하고 교육시키는 직원과 개인들은 학생들과의 행위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 그리고 긍정적이며, 전문적이고, 비-착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교육구는 본 교육구 직원 또는 학생을 접하거나 함께 학습하는 개개인에 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생과 함께 부적절한 행위나 행동의 어떠한 것도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다. 학생을 접하거나 함께 학습하는 직원 또는 개개인에 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생과의 행위나 행동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염려 사항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 행정관에게 상의할 것을 권한다.

LAUSD 학생과의 품행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육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학생들의 안전이다. 모든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모든 개인은 학생의 예민함과 지원하는 측면과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육구는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직원들과 학생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성별에 관계없이 문을 닫은 상태로 학생과 개별적으로 만난다.
2. 마지막 관리자가 학교를 떠난 후 학생(들)과 캠퍼스에 남아 있다. (예 : 드라마 / 음악 활동을 위해 학생들과 연습하는 교사 또는 심중 학력경시 학생들을 고정하는 교사는 사전에 사이트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생 (들) 또는 학생 (들)의 직간접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비 윤리적인, 불법적인, 부도덕한 또는 착취적인 행동을하는 행위
4. 학교와 관련이 없고 학생이 직접 또는 암묵적으로 학생이 (들) 대가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할 것을 제안하는 학생에게 선물, 보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5.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나이에 적합하지 않거나, 전문적이지 않거나, 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괴롭히거나 평하하는 내용을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의견이나 의견을 말함.
6. 연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직원 / 개인의 책임 및 / 또는 의무의 범위 내에서 학생을 만지거나 신체적 접촉하는 행위.
7. 사전에 적절한 서면 행정관자 및 학부모 승인 서식서 없이 개인 차량으로 학생(들)을 운송하는 행위
8. 교육구가 승인한 학교 여행이나 견학 이외의 활동을 위해 캠퍼스 밖으로 학생을 데리고 가거나 동반하는 행위
9. 학교에서 승인한 활동 및 / 또는 승인된 활동을 제외하고 캠퍼스 밖의 학생과 만나거나 함께 있는 경우.
10. 특별히 학교와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해 서면으로, 전화 / 이메일 / 전자,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학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행위
11. 특정 학교 관련 목적 및 / 또는 상황을 제외하고, 집이나 휴대 전화로 학생에게 전화하는 행위.
12. 학생(들)에게 특정 학교 관련 목적 및 / 또는 상황을 제외하고 개인 주택 / 휴대 전화 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또는 기타 개인 연락처 정보 제공하는 행위

직원 / 개인의 의도가 순전히 전문적 일지라도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위의 행동 중 하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되는 경우, 해당인은 부적절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자신에게 있다. 직원 / 개인에게 조언하는 바, 부적절한 행위나 행동에 대한 혐의주장은 그 혐의를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리고 해당될 경우, 적절한 행정적 그리고/또는 징계처분이 취해질 것이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직원 / 개인은 현장 행정관 또는 감독자에게 문의하거나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에 (213) 241-7682 로 전화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법 제 44807 에 의하면, 공립학교 교사는 등하교 시, 운동장 또는 휴식시간 동안 학생에게 학생의 품행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을 금지한다. 하지만, 교사, 교감, 교장 또는 기타 자격증 소지 교육구 직원이 그의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모가 자녀의 신체에 취할 수 있는 특권과 동일한 정도로 신체 규제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질서 유지, 재산 보호 또는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합하고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타당히 필요한 신체적인 규제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런 신체적인 규제 수행으로 인하여, 해당인은 형사 소추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규정은 추가 사항이며 제 49000 조의 규정을 우세적으로 대체하지는 않는다.

교육구의 학생과의 품행 규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학교 행정관과 상의하거나 <https://achieve.lausd.net/Page/3649> 를 방문하십시오

대학 입학 조건 및 고교 졸업 후 교육 정보

고교 졸업 후 교육을 지속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는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CSU)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를 (UC) 제공한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재학하기 위해서는 고교 졸업생 또는 18세 이상인 것만 요구된다. CSU를 다니기를 원한다면, 특정 고교 학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 그리고 고교 졸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수능 점수는 GPA가 3.0 또는 그 이상인 경우 요구되지 않는다. UC 계열 대학은 학과목 필수조건, GPA, 그리고 수능 점수 또는 재학 고교의 상위 4 퍼센트 등급 또는 시험 점수만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재학 한 후, CSU 또는 UC로 편입할 수 있다.

대학 입학 필수조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www.cccco.edu: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공식 웹사이트이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링크할 수 있다.
- www.assist.org: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로부터 CSU 또 UC로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과목 편입 정보를 제공하는 상호작용 웹사이트이다.
- www.csumentor.edu: CSU 시스템에 대한 웹사이트로서 학생과 그의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 원서 그리고 모든 CSU 캠퍼스에 링크할 수 있다..
- www.universityofcalifornia.edu: 이 웹사이트를 통해 입학 정보, 온라인 원서 그리고 모든 UC 캠퍼스에 링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커리어 기술 교육을 통한 커리어 옵션도 알아볼 수 있다. 커리어 준비 그리고/또는 취업 준비에 특별히 중점을 둔 학교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클래스들이다. 이런 프로그램과 클래스들은 학과목을 접목시켜서 학업 성취도를 지원한다. 다음 웹페이지를 검색하면 커리어 기술 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www.cde.ca.gov/ds/si/rp.

학교 카운슬러와 만나서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대학 입학 필수조건에 해당되는 학과목을 선택하거나 커리어 기술 교육 과정에 혹은 둘 다에 등록할 수 있다.

보건 교육 및 캘리포니아 건강한 청소년 법 준비 학과정(캘리포니아 종합 성 건강 및 HIV 예방-교육법에 준한 성교육 과목)

중고교에서, 학생들은 한 학기 전체 기간, 90-시간 헬스 교육 과목을 7 학년과 9 학년에서 이수하며, 이는 단일-과목 유자격 헬스학 자격증 소지 교사가 지도한다. 헬스 교육 과목에서, 종합 성 건강 및 HIV 예방에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건강한 청소년 법은 2016년 1월 1일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종합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을 7-12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CEC 51930-51939). CEC 51930 에 의거하면, 학교는 다음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성 건강 및 임신 건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HIV 와 기타 성병 그리고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춘기 성장 및 발육, 신체 이미지, 성별, 성적 취향, 인간관계, 결혼 및 패밀리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 성적 감정은 인체 발육의 정상적인 일부임을 이해시킨다.
- 통합된, 종합적, 정확한 성 건강 및 예방 수업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명확한 도구와 지도를 제공한다.
-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안전한 인간관계와 행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다음의 법 정의가 적용된 CEC 51931):

- (a) "연령에 적합한"은 해당 연령 또는 연령 집단의 인지력, 감성 및 행동 능력을 토대로, 특정 연령 또는 아동 및 사춘기 연령 집단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주제, 메시지, 교수 방법을 의미한다.
- (b) "종합 성 건강 교육"은 인체 발육과 성적 감정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에는 임신, 피임 그리고 성병에 대한 교육도 포함된다.
- (c) "영역 학습생"은 제 306 항 (a) 부조항에 명시된 학생을 의미한다.
- (d) "HIV 예방 교육"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및 AIDS 의 성격, 전염 방법,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전략 그리고 HIV 와 AIDS 의 사회적 및 공공 건강 문제에 대한 학습지도를 의미한다.
- (e) "해당 학과정에 트레이닝을 받은 교사"는 인체 성적 감성, 건강한 관계, 임신 그리고 HIV 와 기타 성병에 대한 최근 의료적으로 정확한 연구조사에 대한 지식을 갖춘 교사를 의미한다.
- (f) "의료적으로 정확한"이란 과학적 방법에 준해 실시한 연구조사 그리고 동료에 의해 검토된 저널을 발표하여 검증된 것을 의미하며, 관련 영역의 전문적 기관에 의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하며, 이에에는 연방 질병 통제 및 예방국, 미 공공 보건 협회, 미 소아과 아카데미, 산부인과 미 대학 협회 등이 있다.
- (g) "교육구"에는 카운티 교육 위원회, 카운티 교육감, 캘리포니아 청각 장애 학교와 캘리포니아 시력 장애 학교가 포함된다.

필수 종합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은 중학교(15-20 시간)와 고등학교(25-30 시간)에서 최소 일회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받은 교사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1. 교육구는 반드시 종합 성 건강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인체 발육 및 성적 취향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며, 임신, 가족 계획, 성병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K 부터 12 학년까지.
2. 교육구는 인체 성적 관심, 임신 및 성병에 대해 가장 최근의 의료 리서치를 정확히 알고 있고, 연수교육을 받은 교육구 직원 또는 외부 자문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업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이런 수업을 받는 연령 학생의 지성, 감성, 행동 능력에 적합해야 한다.
 - 가르치는 모든 정보는 의료적으로 정확하며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리서치에 의해 검증 또는 뒷받침되고, 과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검토되었으며, 연방 기관 및 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

단체로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제 220 조에 의해 보호되는 범주에 기초하여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반영해서는 안된다.
- 수업 내용은 반드시 영어 학습(제 306 조 부조항 (a)에 설명됨)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의 교과과정 및 영어 학습자를 위한 대안 학습과 일치해야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인종, 성별, 성적 성향, 민족, 문화 배경, 장애 학생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장애학생에게 적합해야만 하며, 이는 수정된 교과과정 및 자료, 수업 방식, 보충 자료 및 기타 방법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하며, 관계 및 부부의 사례를 토론하거나 제공할 때 동성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
-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성별, 성적 표현, 성 정체성에 관한 가르침을 장려하고 부정적인 성별 고정 관념의 해를 탐구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학생이 부모, 보호자 또는 신뢰하는 성인들과 함께 인간의 성적 관심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독려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학생이 결혼과 같은 서약된 관계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상호 존중과 애정을 기반으로하며 폭력, 강제 및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수업 내용 및 자료는 학생들이 성에 대해 건강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이에는 또래 압력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협상력과 거절력이 포함되며 위험도 높은 행위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결정력을 이용하도록 한다. 교칙과 자료는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나 홍보 할 수 없습니다.
-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나 홍보하지 못할 수 있다.

필수 종합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은 중학교(15-20 시간)와 고등학교(25-30 시간)에서 최소 일회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받은 교사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1. 교육구는 반드시 종합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을 중학교와 고교에서 최소 일회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인체 발육 및 성적 취향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며, 임신, 가족 계획, 성병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K 부터 12 학년까지. 수업 내용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7 학년부터, 수업 내용 및 자료는 HIV의 성질뿐만 아니라 기타 성병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 7 학년부터,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성행위와 마약 주사제 사용을 포함한 특정 행동에 따른 감염의 상대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HIV 및 기타 성병 감염이 전파되지 않는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
 - 7 학년부터,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성행위와 마약 주사제 사용을 금하는 것이 HIV와 성병 감염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성교를 금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쳐야 한다. 이 수업은 성행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HIV 및 기타 성병 감염 및 임신을 예방하는 다른 방법에 대한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7 학년부터, 수업 내용 및 자료는 HIV 및 기타 성병에 걸릴 위험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모든 연방 식품 의약품 안전청 (FDA) 승인 방법의 효과 및 안전성을 교육해야 하며, 이에는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물 사용을 포함하여 PrEP 및 HIV 백신 접종은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 7 학년부터,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주사 바늘 사용과 주사침 공유를 줄여 주입 약물 사용으로 인한 HIV 전염 위험을 줄이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 7 학년부터, 수업 내용 및 자료는 항 바이러스 치료가 HIV 감염자의 삶을 극적으로 연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HIV 를 전염시킬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을 포함하여 HIV 및 기타 성병 감염 치료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 7 학년부터, 수업 내용 및 자료는 HIV 와 에이즈에 관한 근거없는 고정 관념과 잘못된 편견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여 HIV 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견해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이런 수업은 성공적으로 치료된 HIV 양성인이 정상적인 평균 수명을 갖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HIV 에 감염 될 위험이 있으며, HIV 양성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 7 학년부터,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지역 자원에 관한 정보와 HIV 및 기타 성병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임신 예방 및 치료와 같은 성적 및 임신 건강 관리를 위한 지역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성폭력 및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도 포함된다.
 - 7 학년부터,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응급 피임을 포함해 임신 예방을 위한 FDA-승인 피임 방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임신 관련 수업에는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임신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토론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자녀 양육, 입양 및 낙태.
 - 7 학년부터, 수업 내용 및 자료는 건강 및 안전법 1255.7 항 및 형법 271.5 항에 의거하여, 태어난지 72 시간 이하의 아동의 물리적인 양육을 포기하는 법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7 학년부터,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산전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 7 학년부터, 수업 내용 및 자료에는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 인신 매매, 건강한 경계를 정하는 기술 및 안전하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7 학년부터는 수업 및 자료에 사춘기 시절의 관계 남용 및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조기 경고 신호를 포함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2. 7 학년 이전에 종합 성 건강 교육을 가르치는 학군은 위의 1 ~ 13 에 포함된 일반 주제에 대해 연령에 맞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7 학년 또는 그 이전에 시작할 경우 다음의 문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종교 교리를 가르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
 - 학습지도 및 자료는 성별, 민족 집단 식별, 인종, 원래 국적, 종교, 피부색,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조상, 남녀,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성향을 근거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편견을 반영하거나 장려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직원 연수 교육

1. 교육구는 지역 계획, 공동 전원 협약 또는 계약 서비스를 통해 HIV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교육구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협력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한다.
2. 연수 교육을 개발하고 제공할 때, 교육구는 주 교육부와 공동으로 HIV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구의 교사들과 협력해야 한다.
3. 교육구는 직원이 HI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새로운 발전을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HIV 예방 교육에 관한 연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연수 교육은 전문성을 입증했거나 주 교육부 또는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 연수 훈련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교육구에서는 성 건강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새로운 발전을 알 수 있도록 종합 성 건강 교육 주제를 다루기 위해 HIV 연수 교육을 확대할 수 있다.

외부 자문인 동의 및 승인

교육구는 다언어 교과과정을 개발했거나 또는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종합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을 하거나 교육구 직원을 트레이닝할 교과과정을 만든 외부 자문관과 계약 채용할 수 있다. 외부 자문관과 초청 연설인은 종합 성 건강 및 HIV 예방-교육에 전문가이며 그리고 이런 수업에 관련된 주제 또는 주제들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의료적으로 정확한 연구조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든 자문관과 초청 연사는 교육구의 건강 교육 프로그램인 HIV / 에이즈 예방 부서로부터 검토받고 승인받아야 한다.

통지 및 부모의 면제

학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인간의 성욕과 HIV에 관해 자녀와 대화하고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교육을 감독 할 권리를 존중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학교는 학부모 및 보호자가 종합 성 보건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에 관한 수업 및 관련자료 및 평가 도구를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주 정부는 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에게 의학적으로 정확한 종합 성교육을 하도록 전적으로 지원하며, 부모와 보호자는 인간의 성에 관한 가치를 자녀에게 지도하는 궁극적 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자녀가 종합 건강 교육이나 HIV 예방 교육을 받기를 원치 않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서면으로 학교에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법 51938 조항에 의거하여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다음 조건 하에서 종합 성 건강 교육, HIV 예방 교육 및 그 교육과 관련된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 :

1. A 매 학년 초 또는 나중에 등록된 학생의 경우, 학교는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에 관한 수업에 사용되는 학생 건강 행동 연구에 대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통지서에는 다음 정보를 모두 알려야 한다.
 - 종합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에 사용된 서면 및 시청각 교육 자료를 검사할 수 있다.
 - 해당 교육구는 교육구 직원이나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종합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이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학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수업 또는 집회에서 이들을 통해 이런 수업이 제공될 수 있음을 추가로 알려야만 한다. 어느 경우든 학교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다음을 알려야 한다 (a) 수업 날짜; (b) 각 초청 연사 또는 연사의 조직 또는 소속; (c) 학부모 또는 보호인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법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교육법 51933 항 및 51934 항). 또한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외부 컨설턴트 또는 초청 연사가 지도하도록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반드시 우편 또는 다른 일반적인 통보 방법에 의해 이런 수업이 있기 전 14 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 컨설턴트 또는 초청 연사는 교육구의 재량권 하에 이용될 수 있다.
 - 부모 또는 보호자가 법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가 종합 성 건강 교육 또는 HIV 예방 교육을 받지 않도록 이르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학교는 교육법 제 51513 항의 요구 사항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이 법에 의거하면, 학생의 성, 가정 생활, 도덕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에 대한 질문 또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의 성, 가족 생활, 도덕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에 질문이 포함된 질문지, 설문조사, 검사를 K-1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단지, 그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런 테스트, 질문지, 설문조사, 검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통지하고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가 이런 활동에 참여해도 좋다는 허락을 서면으로 제시한 경우는 예외이다. 학교는 이 법에 따라 성과 관련된 학생의 태도나 관행에 대한 테스트, 질문지 및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학생의 행동과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익명, 자발적 및 기밀이 보장되는 리서치 및 검사를 K-1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하지만 단지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런 테스트, 질문지, 설문조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런 자료를 검토하고 자녀가 참여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해당 학생이 종합 성 건강 교육 및 HIV 예방 수업 또는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 자발적이며 기밀이 보장되는 테스트, 질문지, 설문조사에 참여해서는 절대 안되는 경우는 학교가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그 학생의 참여를 면제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서를 받은 경우이다.

해당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가 종합 성 건강 교육 또는 HIV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학생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 자발적이며 기밀이 보장되는 테스트, 질문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 이에 대해 징계처분, 학업 처벌 또는 기타 처벌의 대상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된다.

종합 성 건강 교육, HIV 예방 교육 또는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 자발적이면서 기밀이 보장되는 테스트, 질문지, 설문조사 실시되는 동안, 자녀가 이런 수업 또는 테스트, 질문지나 설문조사를 참여하지 않도록 부모가 요청한 경우, 그 학생에게는 반드시 대안 교육 활동이 주어져야 한다.

훈육 기초 방침

본 교육구는 안전한 교실과 건강한 학교 환경을 제공할 것을 서약한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존중되며 환경받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할 권리가 있다.

교육구 기초 방침에 의거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토대로 한 훈육 문화를 개발하고 정교화하여 시행하는 일관성있는 플랜이 설정된다. 2014년 2월 14일, 교육구는 공문 BUL-6231.0 훈육 기초 방침: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을 설정했다. 본 문서는 방침의 변경 내용을 보여주며 그리고 이런 변경 내용을 접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학교 훈육 유형은 대응적인 경향이 있었고 형벌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구의 현행 방침은 훈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을 나타내며, 적절한 학생의 행동을 장려하고 배움의 기회를 높이고 복구적 정의 적용법을 의미한다.

훈육 기초 정책에 의거하여 이해 관계자들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가르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개발, 구현 및 개선하기 위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한다. 과거에는 학교 훈육이 반응적이었고 징벌적 결과를 낳았지만, 교육구는 모든 학교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구축하고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3년 5월, 학교 문화 권리 장전이 채택되어 학교 차원의 긍정적인 행동 개입 및 지원 (SWPBIS)에 대한 의지와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복구적 정의 관행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

복구적 정의는 공동체 구축과 유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긍정적 인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복구적 관행은 학교 공동체 내에서 친밀한 학교 문화를 촉진하고 친밀한 관계를 조성한다. 학교 문화 권리 장전 및 학교 전체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SWPBIS) 태스크 포스와 같은 활동을 통한 교육구의 현 정책은 적절한 행동을 촉진시키고 학습 기회와 복구적 정의 관행을 증가시킨다. 학교 전체의 긍정적인 행동 개입 및 지원 태스크 포스 팀은 매달 회의를 통해 징계 데이터를 검토하고 훈육 기초 방침 시행에 관한 의논한다. 학교 문화 권리 장전은 SWPBIS 및 복구적 정의에 대한 각 학교와 교육구의 공약을 확인하는 기초가 된다.

교육구는 학부모가 훈육 기초 방침이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도 제공한다. 채택된 교육구 결의안에 명시된대로 학교 훈육 방침 및 학교 문화 권리 장전의 시행에 관한 이의 제기는 <https://dfpcomplaint.lausd.net>의 온라인 고소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추가 정보 및 자료는 훈육 기초 방침 웹 사이트 <http://dfp.lausd.net> 또는 전화 213-241-8767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구 서비스 센터

교육구는 교육구 직통 전화번호 (213) 241-1000로 연락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LAUSD 본부서의 모든 방문자들에게 예외적인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교육구 서비스 센터는 교육구에 전화한 사람들에게 해당 교육구 부서와 연결해주는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더불어, 교육구 서비스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LAUSD 본부를 찾아오는 방문객을 맞이한다.

성인 및 커리어 교육부 (DACE)

교육부의 일부인 성인 및 커리어 교육부 (DACE)는 학습자가 학업, 직업 및 시민 목표를 추구할 때 능력을 부여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우리는 로스 앤젤레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로스앤젤레스시 경제 인력 개발부 및 고용 개발부와 같은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모든 학습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DACE는 성인 교육 분야에서 미국 및 주 리더로서 영어, 제 2언어로서의 영어, 학업 및 고등학교 연구, 직업 및 기술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매년 7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ACE는 또한 61개의 업체와 41개의 개별 프로그램 스폰서로 미국에서 가장 큰 견습생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7-18 학년도 동안 DACE 견습 프로그램은 8,000명 이상의 등록된 견습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리의 학습자는 다양하고 독특하고 다양한 교육 요구가 있으며,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LAUSD는 성인 및 커리어 교육부와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많은 옵션과 프로그램을 탐색하기를 바란다: www.wearedace.org. DACE가 제공해야 하는 것을 배우고 해당 지역의 특정 프로그램과 학교를 검색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 DACE 성인 학교, 기술 센터 또는 직업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우리 학교 직원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열성적이며 등록은 일년 내내 계속된다.

등교복/교복

학교는 학생의 보건 및 안전에 적합한 복장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학교 복장 규정 및 교복 방침은 미합중국 헌법 제 1 수정안 및 캘리포니아 헌법 1 조 제 2 하에 명시된 권리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갱단 복장은 학교 환경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한 것으로 결정했고, 따라서 그런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다. 모든 등교복 규율은 남녀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며; 즉 학생은 자신의 성별과 다른 옷차림을 했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처해지거나 이런 옷차림 착용을 금지할 수 없다.

복장 규정

학생은 청결, 보건, 단정, 안전함을 유지하고, 학교 활동을 하기 위해 적합한 복장 및 외모를 지니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학생의 복장 및 머리 스타일은 단정해야 하며 다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학교 활동에 지장 또는 혼란을 실제로 초래했거나 학생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실제로 방해하는 것
-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에 위협한 행동
-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것

교복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5183 조에 의해 운영 위원회는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케하는 교복 방침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게 주었다. 각 학교의 자율 위원회의 합의 하에 학생 교복 방침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학교가 시행하는 모든 교복 방침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부조항을 작성해야 한다. 교복 착용을 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부모가 교복 착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교복을 입지 않을 때, 그 학생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이나 차별 조치가 내려질 수 없으며 타학생에게 주어진 권리 및 특권을 교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런 권리나 특권을 거절할 수 없다.

상기 지침에 따라 머리카락, 구레나룻, 콧수염, 수염은 어떤 길이 또는 스타일로 기를 수 있다. 의복은 학생과 부모의 결정에 따라 패션, 스타일 또는 디자인이든지 착용할 수 있다

교육적 옵션 학교

캘리포니아 주법은 모든 교육구가 대안 학교를 제공하도록 그 권한을 부여했다. 대안 학교는 보다 적은 규모 학교 그리고 보다 개별적인 학업 환경에서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이런 학교들은 해당 로컬 교육구부터 지원을 받는다. 교육적 옵션 학교는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는 학생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 졸업의 통로를 제공한다. 학생은 전인 교육을 다루는 질적으로 높은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대인관계 및 작업 기술을 연마한다. 교육적 옵션의 목표는, 고교 졸업장 취득하게 하여, 대학 진학과 커리어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해당 로컬 교육구에 연락한다.

비상시 대책 - LAUSD

모든 LAUSD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이 비상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 모든 학교는 자세한 내용이 실린 비상시 플랜을 갖추고 있고 교직원은 비상시 이 플랜을 따라 행동을 취한다. 학교는 장애인에게 편의조치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주 의무규정에 해당 또는 초과하는 예행 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예행 연습들이 있다:

- **화재 예행 연습**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매달 1 회 예행 연습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매 학기에 1 회 실시한다
- **지진 예행 연습** - 매년, 모든 학교들은 캘리포니아 대지진 웨이크-아웃의 일부로서 정식 예행 연습을 1 회 실시한다. 가을에 실시되는 예행 연습은 교육구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서, 학교 재난 대비책의 모든 부분을 예행 연습한다.
- **드랍, 커버, 홀드 드릴(Drop, Cover and Hold On Drill- 지진)** - 매달, 이런 예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진 발생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킨다.
- **락다운 예행 연습("Lockdown" Drill)** - 일년에 최소 한 번, 학교는 교정 내 또는 인근에 발생한 폭력 위협에 대응하는 법을 연습한다.
- **셸터 인 플레이스 예행 연습** - 일년에 최소 한 번, 학교는 교정 또는 인근 주변의 환경적 위험에 대응하는 법을 연습한다.
- **테이크 커버 드릴(Take Cover Drill)** - 일년에 최소 한 번,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총격, 폭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연습한다.

자녀들에게 이런 예행 연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말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예행 연습을 통해,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다. 각 학교는 비상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긴급 비품을 갖추어 놓는다. 다음 비품이 포함된다: 물, 음식, 응급치료 용품, 수색 및 구조 기구, 위생 용품. 교직원은 이런 비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재난 발생 시, 부모가 학교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학교는 자녀를 여러 날 돌보아야 할 수 있다. 충분한 비상 의료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72-시간용 처방약을 학교 양호실에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한다. 복용약은 자녀의 성명, 복용약의 명칭과 복용량, 복용법이 명시된 약국 레이블이 붙여진 용기에 넣도록 한다.

비상 사태 발생시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모는 비상사태 발생시 학교의 비상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연락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이를 업데이트시켜야 한다.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여 비상시 업데이트된 정보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녀를 어디서 픽업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시간도 줄이고 불안감도 적어질 것이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시 대책이 준비되어 있고, 비상시 이런 대책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부모들은 유념하도록 한다.

자녀들은 비상사태 발생시 부모가 자신을 인도하고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유념한다; 부모가 차분하고 비상 사태를 준비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부모의 태도를 그대로 따라할 것이다. 비상 사태로부터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점은 큰 역할을 한다. 해당 학교의 비상 대책에 대한 문의는 학교 행정인에게 연락할 것을 권한다. LAUSD 커뮤니티 비상 대책 앱을 <http://achieve.lausd.net/emergencyapps> 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LAUSD 의 비상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는 <http://parentemergencyinformation.lausd.net>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있는 정보이다. 교육구 이머전시 플랜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이머전시 서비스 부서에 (213) 241-5337 로 연락한다.

비상시 대처

비상사태 발생시, 부모들은 공립 학교가 커뮤니티 내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규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일반 공공 건물 보다 더 높은 건축기준에 따라 세워지며 이를 필드 법규(Field Act)라고 한다. 따라서 학교는 일반 가정집 또는 상업용 건물 보다 피해가 더 적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경보 및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화재/생명 안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학교는 학생들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것이다. 화재나 지진 발생시, 학생들은 교실을 나와서 건물들과 멀리 떨어진 집회 장소; 대개는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로 모이게 된다. 락다운이나 셸터 인 플레이스의 경우, 학생들은 실내로 옮겨가서 그 건물을 보호처로 이용할 것이다.

비상사태 발생시, 자녀를 픽업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학교 주위의 리퀘스트 게이트(Request Gate)로 가야하며 그리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곳이 학교가 학생들을 부모에게 내보내주는 바로 그 특정 장소가 된다. *자녀의 이머전시 카드에 기재된 이름의 사람만 학생을 픽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는 이머전시 카드의 내용이 최신의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머전시 연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학교에 통지하도록 한다.*

폭력 협박이 있을 경우, 학생들은 다칠 위험이 없는 교실로 들어가 보호받을 것이다. 캠퍼스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비상 상황 동안에는, 법 집행기관이 교정이 안전하다고 발표하기 전에는 부모는 자녀를 픽업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는 학교가 자녀를 안전한 교실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할 때에 한하여 자녀를 부모에게 보내줄 것이다.

모든 학생의 성공법: 타이틀 1 학교 통지에 대한 부모의 권리

매 학년 초에 타이틀 1 자금을 받는 관할 교육 기관은 자녀가 타이틀 1 학교에 다니는 부모에게 학생의 학급 교사, 적어도 학생의 담당 교사의 전문 자격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해당기관은 요청한 부모에게 (그리고 적시에) 제공해야만 한다:

- 교사가 수업을 제공하는 학년 및 과목 영역에 대한 주 자격 및 라이선스 기준을 충족시킴
- 비상 사태 또는 기타 잠정 상태에서의 가르치고 있으며, 이로서 주 자격 또는 라이선스가 면제되었음
- 교사 자격증 학문 분야를 가르치고 있음

또한, 타이틀 1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돕는 교사 보조 (TA)의 자격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구에서 근무하는 TA가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한 경우.
- 2년제 대학 (60 학기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또는
- 학사 학위가 AA 이상이거나
- 교육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관할 평가시험을 통과함.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4926 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누구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협력하는 캘리포니아 교사 교육 기관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을 그렇게 고용해서는 안된다.

자녀가 타이틀 1 학교에 다니고 자녀의 교사 및 / 또는 TA의 전문 자격에 관한 정보를 원하면 자녀의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십시오. 귀하는 어떤 사람의 전문 자격을 알기 원하는지 지정해야 합니다.

필드 트립

학생은 인종, 피부색, 원래 국적, 성별, 성적 성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교육적 트립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 당하지 않는다.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반드시 필드 트립 허락서, 의료 조치 허락서 그리고 건강 문제/의료 상태를 지닌 학생의 개별 병력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는 출발하기 적어도 5일의 학교일 전에 필요한 모든 복용량, 비품 및 기구를 (필드 트립용)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필드 트립에서 약(처방약 및 일반 약)을 복용하려면, 부모/보호자는 반드시 학교시간 동안의 약 복용 요청서를 작성해야만 하며, 이에에는 부모/보호자의 서명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인 의료 케어 제공자의 서명 주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급식 서비스 부서(Café LA)

LAUSD 급식 서비스 부서(Food Services Branch)는 미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SBP)이며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전국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NSL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매일 7심 5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684 개교의 학교 카페테리아와 86 개의 조기 교육 센터 및 4 개의 유아 센터 급식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더불어, 뉴먼 영양 센터에 매일 1심 2만 개의 급식을 준비하여, 학교 현장에서 급식 준비가 가능치 않은 200 개교에 급식을 배포하고 있다.

SBP와 NSLP는 영양있는 학교 급식 제공을 통해 배고픔과 영양실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더불어, 아침 및 점심 급식뿐 아니라, 거의 모든 LAUSD 학교는 방과후 저녁식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저녁식사는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토요일 급식 서비스 및 섬머 식사 프로그램(일부 선정된 학교들)을 제공하여 정규 학교 일자 또는 일반 학교 칼렌다 이외에도 급식이 필요한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Café LA는 “영양가있는 식사는 높은 학력을 성취하게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급식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대답을 듣기 위해 최선의 장소는 자녀 학교의 급식 서비스 매니저이다. 이들은 급식 서비스의 모든 영역들, 급식 준비, 위생, 안전 및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영양적 자원을 <http://achieve.lausd.net/cafela>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급식 서비스 부서	213 241-6419 / 213 241-6422	급식 신청서 관련 질문	213 241-3185
디렉터 사무실	213 241-2993	BIC 핫라인	213 241-2956
BIC 피드백	BIC@lausd.net	음식 도네이션 프로그램	fooddonation@lausd.net

교실에서 아침 급식

교실에서 아침 급식 (BIC)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수업 시작 후 첫 10분에서 15분동안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오전 수업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섭취한다. 무료이며, 이 급식의 참여는 전적으로 학생 자발에 의거한다. LAUSD 총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BIC는 659여개의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양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BIC 긴급전화 및 BIC 피드백 이메일을 통해 귀하의 소견과 의견을 제의할 수 있다.

급식 신청서

학생이 프로비전 2 또는 CEP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급식 신청서의 가족수 그리고 가계 소득이 연방 소득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무료 또는 저렴한 급식을 받을 수 있다. 학년도가 시작될 때 급식 신청서를 새로이 작성해야만 한다. 모든 가정이 이런 혜택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기를 강력히 권한다. 급식 신청서는 엄격히 기밀이 보장되는 정보이며 그리고 급식 서비스 부서에서만 사용될 것이다. 개인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되지 않는다.

- 무료/할인 급식 신청서는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의 가정에 우송된다. 개학일 이후에는 학교 현장에서도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다.
- 급식 신청서는 온라인을 통해 전자상으로 제출하면 48시간 내에 처리된다. Café LA 웹사이트 <http://cafe-la.lausd.net/new-online-meal-application>을 검색하십시오
- 학교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된 주소를 이용함으로써, 현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신청서를 받으면 작성을 한 후 동봉된 봉투에 넣어 보내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신청서가 신속히 처리된다.
- 한 가계당 한장의 신청서만 요구된다. 중복 신청서는 귀하의 서류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다.

- 서류 처리가 된 후, 자격 여부 서신이 집 주소로 우송될 것이다.
- 신청서는 해당 학년도 동안 받아들여 진다. 소득이나 가족수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로운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검증이나 증빙 서류를 보내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 급식 신청서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부서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스페니쉬, 알메니언, 중국어와 한국어 신청서도 준비되어 있다.

급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급식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 또는 무료/할인 급식 자격이 없는 학생들은 정규 풀 가격을 지불해야 하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야만 한다. 다음은 2017-18 LAUSD 의 급식 가격이다:

학생 급식 가격		
<u>정규 가격</u>	<u>아침 급식</u>	<u>점심 급식</u>
초등학교	\$2.25	\$2.75
중학교	\$2.50	\$3.25
고등학교	\$2.75	\$3.50
<u>할인 가격</u>	<u>아침 급식</u>	<u>점심 급식</u>
초등학교	\$0.30	\$0.40
중학교	\$0.30	\$0.40
고등학교	\$0.40	\$0.40

급식 서비스 부서는 돈이 없거나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에게 급식을 그 학생에게 제공하고 학생의 구좌에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 모든 구좌의 잔액은 반드시 학년도 말까지 완납되어야 한다.

연방법과 미 농산부 정책에 의거하여, 본 기관은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차별행위에 대한 고소건 접수는 다음으로 한다: USDA Director, Office of Civil Rights, Room 326-W, Whitten Building,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또는 (202) 720-5964 (음성 및 TDD)으로 전화한다. USDA 는 제공자와 고용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영양 및 카페 엘에이 메뉴

LAUSD 는 건강한 음식과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여 비만, 당뇨 그리고 기타 여러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하는 노력면에서 미국의 리더들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최근에 채택된 교육위 의결안에는 “급식 및 영양 정책 향상”과 “양호한 급식 조달 방침”이 2012 년에 채택된 결의안들이다. LAUSD 는 식사 시간을 최소 20 분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근 지역의 농장지들로부터 식품을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리 메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있으며 최고의 영양 기준을 추구한다.

현재의 메뉴 내용:

- 공인 영양사에 의해 계획된다.
- 통곡물을 사용하며 통곡물 위원회 멤버이다.
- 매일 다양한 식단과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도 제공한다.
- 고기 안 먹는 월요일에 참여한다

본 부서는 결의안을 수행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돕고자 한다:

- 지난 오 (5) 년동안 학생의 과일과 야채 섭취량을 두배로 늘렸다.
- 주 및 연방 영양 기준에 준하는 건강에 좋은 급식과 학생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과의 균형을 맞춘다.
- 학생의 입맛에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급식을 시범적으로 제시하고 메뉴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우리 메뉴로 정식 책정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가 최소 75%는 되어야 한다.

급식 메뉴는 자녀의 학교 또는 급식 서비스 부서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만약 자녀에게 특별 식단 또는 급식을 위한 특별 필요가 요구되는 경우, 카페테리아 매니저나 학교 양호사로부터 “LAUSD 특별 식단을 요청하는 의뢰서 (LAUSD Medical Statement to Request Special Meals)”를 받거나 또는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cafela> 를 검색하도록 한다. “메뉴” 페이지로부터 영양 정보 및 특별 식단 을 링크하면 다음의 서식서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LAUSD 특별 식단을 요청하는 의뢰서
- 학부모/보호자의 일반 우유를 대체하는 두유 요청서
- 영양 분석
- 탄수화물의 양
- 음식 알러지 및 성분 목록표

특별 식단 또는 메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다면, 해당 로컬 교육구의 영양 전문가에게 연락하십시오:

연락 정보:	해당 로컬 교육구	이메일	전화번호
Stephanie Marks	북서부 및 북동부	stephanie.marks@lausd.net	(213) 241-2994
Homa Hashemi, R.D., 영양 전문가	중앙 및 동부	homa.hashemi@lausd.net	(213) 241-2969
Lynn Uusitalo, R.D., 영양 전문가	남부 및 서부	lynn.uusitalo@lausd.net	(213) 241-3037

해당 지역의 영양 전문가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Ivy Marx, 상임 영양 전문가에게 ivy.marx@lausd.net 로 또는 213-241-1064 으로 연락하십시오.

학교 급식 프로그램 자격

모든 학생들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무료로 학교 급식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은 세 가지 방법으로 결정된다: 급식 신청서, 프로비전 2 학교 또는 커뮤니티 자격 프로비전 (CEP) 학교에 등록된 경우. 많은 LAUSD 학교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녀 / 보호자가 다니는 학교가 급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경우, 귀하는 우편으로 통지받을 것이다 (또는 학년도 중에 자녀를 등록시킬 때)

프로비전 2

프로비전 2는 USDA에 의해 제공되는 옵션이며 이를 통해 해당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년 회기이며 기준이 되는 해에 모든 가족들에게 급식 신청서 제출을 요청한다. 무료/할인 급식 자격성(85% 이상)이 높은 학교는 프로비전 2로 자격을 갖추게 되며 그리고 2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급식 신청서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는다. 이로써 부모와 행정관들은 서류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더불어, 프로비전 2는 카페테리아의 능률성을 높이고, 급식비와 공동 비용의 비지급에 대한 적자를 줄이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한다. 자녀의 학교가 프로비전 2 학교인 경우, 우편으로 급식 혜택을 통지받을 것이다.

커뮤니티 자격 프로비전 (CEP)

커뮤니티 자격은 USDA에 의해 제공되는 가장 새로운 옵션이다.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CEP 유자격 학교는 전교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참여도를 높이고, 학교는 노동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그리고 종이 신청서를 제거함으로써 가계와 행정인들은 서류 작성에 대한 수고가 줄어든다. CEP 유자격 학교들은 "식별된 학생들"의 숫자를 토대로 한 공식을 통해 결정된다 - 포스터 케어 또는 헤드 스타트에 있거나, 무숙자, 이주자 또는 SNAP/푸드 스탬프, TANF 현금 지원 또는 식품 배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가계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료 학교 급식 신청서 없이 검증된 학생들의 숫자이다. 자녀의 학교가 CEP 학교인 경우, 우편으로 급식 혜택을 통지받을 것이다.

외국 학생 입학

학생 건강 및 인문 서비스 (SHHS) 학생 서비스 외국 학생 입학부(FSAO)는 현재 가주 정부에서 발행한 F-1 또는 J-1 학생 비자를 소지한 9-12 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내셔널 학생이 LAUSD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I-20 발행할 권한이 있다. 이런 절차와 외국 학생 입학 자격 조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https://achieve.lausd.net/Page/12902#spn-content> 을 검색하거나(213) 202-7547 로 연락하십시오.

포스터케어 - 아동 및 가정 담당국 (DCFS) 또는 보호감찰 하에 가족과 살지 않는 학생들

아동 및 패밀리 서비스국 또는 보호감찰국에 의해 감독을 받으면서 공인 포스터홈, 그룹 홈, 친척 집에서 사는 아동 또는 친부모(들)과 거주하는 아동들은 특별 등록 조건을 갖는다. 하원의 법안 490 규정에 의거하여, 포스터 아동들은 반드시 학교에 즉각적으로 등록되며(교육법 제 48853.5 항) 이는 학교 기록, 예방접종 기록, 교복 또는 이전 학교로부터 벌금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교육자, 교직원, 소셜워커, 보호감찰원, 양육인 기타 관련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동들의 교육적 필요를 맞추도록 한다.

하원의 법안 1933에 (2011년 1월 1일부터 실효) 의거하여, 포스터 아동은 원래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되며, 해당될 경우, 그 학생이 다른 출석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거주하게 될 경우, 동일한 출석 지역의 중고교로 진학할 수 있다. 포스터케어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구는 법정 관할권 기간 동안에는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허용한다. 만약 법정 관할권이 그 학년도가 끝나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그 학년도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육법 제 51225.1 항에 의거하여, 고교 2년째 과정을 이수한 후 타학교로 전학한 포스터 학생 또는 청소년 사법 제도에 가입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졸업 면제권을 제공한다 (취득한 학점 수 또는 등록 기간 둘 중 하나에 자격이 있는 경우).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포스터 학생 또는 청소년 사법 제도에 가입된 학생들은 교육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교과목 이수 및 기타 필수조건 그리고 주차원의 교과목 필수조건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단지, 교육구가 그 학생이 고교 과정이 끝날 시점 또는 고교 4년차에 교육구에서 요구하는 졸업 필수조건을 완성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구가 포스터케어에서 거주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사법 제도에 가입된 학생이 고교 5년차에 졸업 필수조건을 합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완성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교육구는 학생이 그 학교에서 5년차를 다녀서 졸업 조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일단, 어떤 학생이 이런 면제권에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 학생의 포스터 케어 건이 종료되거나 또는 타학교로 전학하여도 이런 면제권은 계속하여 적용된다. 만약 어떤 학교, 학생, 교육 권리 보유자, 소셜워커, 보호 감찰관이 어떤 학생에게 관할 조건 면제 자격을 갖춰 주기 위해 그 학생을 타학교로 전학을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일은 불법행위에 속한다.

학부모, 보호자, 포스터 케어 양육인, 소셜워커 그리고/또는 보호감찰원은 학생의 거주지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급적 빨리 교육구에 알려서 적정 시한 내에 전학할 새학교를 알아보고 학생 기록을 새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관련 포스터 케어 문의가 있다면 학생 서비스 포스터 청소년 성취도 프로그램에 (213) 241-3552로 연락하십시오.

정치적 행위, 군중, 집회, 데모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학생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교정 내에서 정치적 또는 언론의 자유 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반영한 서면 자료를 배포할 있다. 비-수업 시간동안 교정에서 집회를 결성하여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토론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비-수업 시간동안 교정에서 평화로운 데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의 언어, 표현 또는 행동이 상스럽거나, 음용하거나, 명예 훼손, 서면의 명예 훼손, 학생을 자극하여 건물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학교에게 막대한 방해물을 주는 요소인 되지 않는 한, 학생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교정 내에서 또는 학교 시간 동안 언론 자유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행정관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학교 행정관은 학생 및 교육구 고용인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간, 장소, 언어 및 행동의 방식에 대해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 학교 행정관 또는 데모, 집회, 실-인 등의 관련 교육구 방침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징계 처분 받을 수 있다.

데모 동안 교정 또는 교실을 자발적으로 떠난 학생은 교정이나 교실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거부하는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으로 기록되며 더불어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일단 학생들이 교정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학교 현장 행정관들은 이런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학생의 데모 또는 워크아웃이 일반 대중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관할 법 집행기관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본 교육구는 관할 법 집행기관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전혀 규제할 수 없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생의 언론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지만, 교육구 직원은 이런 학생의 데모, 자료 배포, 집회, 실인 또는 근무 시간 동안이나 LAUSD 대리인 또는 대변인으로 일하는 동안 워크-아웃을 장려, 후원하지 않으며 또는 학생들에게 참여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이런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자녀의 학교 행정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성적 변경 요청 절차

교육법 제 49066 에 의하면, 다음의 근거 하에, 부모는 자녀의 성적 점수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오류
- 사기
- 불성실; 그리고/또는
- 성적 책정을 할 능력이 없음.

공립학교에서 이수한 학과목에 대한 성적이 취득될 때, 각 학생의 성적은 해당 과목 교사에 의해 정해진다. 위에 명시된 근거가 없을 때에는 해당 성적은 최종 성적이다.

성적 변경에 대한 요청은 성적표가 우송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학급 교사에게 먼저 해야만 한다. 교사와 잘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는 교장에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을 로컬 교육구 교육감에게 항소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 단계로서는 최고 학업 책임자에게 항소하는 것이다. 각 단계마다, 부모는 변경을 요청하는 타당성 관련 정보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교장에게 문의하거나 해당 로컬 교육구 사무실에 연락하여 학생 성적 변경 요청서(Request to Change Pupil Grades Bulletin) 공문 -1926.2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총기로부터 안전한 학교

연방법 총기 불용납 안전 학교법(Federal Gun Safe Schools Act) 및 캘리포니아 법규에 의거하면, 학교 교정에서 총기 소지를 금한다. 이런 법규들에 의하여, 총기를 소지한 학생이 발견되면, 해당 학생은 체포의 대상이되며 정학 처분을 받을 것이며 퇴학처분이 권고된다. 퇴학 기간은 일년이다. 해당 학생이 무기를 소지했다고 판명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학생을 퇴학시킨다. 퇴학 기간은 일 년이다 소지(possession)에는 락커, 지갑, 백팩, 차량에 보관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건강 관련 정보

중병, 장기 질환, 부상, 수술 또는 기타 입원(정신과 및 약물 또는 알콜 입원 치료) 후에 재등교하는 학생은 재등교를 허용한다는 공인된 캘리포니아 의료 조치 제공자의 서면 허락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체육 활동과 관련한 추천 사항도 있을 경우 포함시킨다. 의료 조치 제공자는 캘리포니아-공인 의사 [의학 박사 (MD) 또는 정골 의학 박사 (DO)], 캘리포니아-공인 치과 의사, 캘리포니아-공인 간호 프랙티션너 (NP), 또는 캘리포니아-공인 의사 보조인 (PA)으로 정의된다.

봉합(스티치, 스테이플), 에이스 반창고(신축성이 있는 반창고, 팔걸이 붕대), 깁스, 목발, 지팡이, 워커, 무릎 워커/무릎 스쿠터, 또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재등교하는 학생은 재등교를 허락한다는 공인된 캘리포니아 의료 제공자의 서면 허락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신체 활동, 이동, 안전 관련 금지사항 그리고/또는 권고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모든 기구는 반드시 부모(들)/보호자(들)이 제공해야 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잠정 기간동안 일반 체육 수업이나 수정된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체육 수업을 면제(10 주 미만)받을 수 있다. 체육을 면제 해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서는 최고 5 일까지 허용되며; 따라서, 자녀의 의료 제공자가 작성한 서면 요청서가 필요하다.

학교는 부모/보호자의 동의없이, 학교는 12 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비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학교 수업을 면제해 줄 수 있다.

학생에게는 실외의 휴식시간 또는 운동시간 동안 보호용 장비(모자, 선바이저 그리고/또는 선글라스) 착용이 허용된다. 학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5183.5 조에 의거하여 자외선 차단용 의복/모자의 유형을 규제할 수 있다. 학교는 보호용 물품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학생들은 교정에서의 실외 활동 시 허용될 수 있는 자외선 보호품으로서 선스크린(의사 처방 없는 제품)도 사용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

전염병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전염병이 의심되는 학생은 학교에 다시 출석해도 된다는 규정이 충족될 때까지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 출석 제외 및 재출석 지침사항은 교육구 그리고 주 보건부와 주 교육부에서 정한 방침을 따른다. 더불어, 전염병 관련 지시사항은 질병 통제 및 예방국 그리고 미국 단체로부터 나온 내용이다. 구체적인 질병 지침은 학교 내에서의 전염병 참고 안내서를 참고한다. 교육구 양호 서비스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nursing#spn-content>.

잠정적으로 학생을 출석 금지시키는 것은 주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이며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결막염("삼눈-pink eye"); 피부 염증(농가진), 패혈성 인두염, 수두, 옴, 머릿니, 백일해(백일 기침). 출석금지지는 즉시 행해지거나 당일 학교가 끝날 무렵에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질병, 전염 속도 그리고 교육구, 카운티 및 주 방침에 달려있다. 재출석은 학생의 상태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의한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 그리고/또는 100 도 이상으로 열이 있어서 결석한 학생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4 시간 동안 이런 증상이나 열이 없어야 학교에 다시 출석할 수 있다(REF-4832.0).

학교가 수두(chickenpox), 머릿니, 기타 위험할 수 있는 전염병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학부모/보호자들에게 통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녀가 수두에 노출되는 경우 특히 위험한 상대가 초래될 수 있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간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학생은 면역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지닌 학생 그리고 양 또는 장기이식 치료 동안 특정 약을 복용하는 학생을 포함한다. 머릿니 치료 및 예방법은 자격증을 소지한 양호사나 학교 보건 직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진성 당뇨병

제 1 유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유전적, 환경적 또는 기타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다. 제 1 유형 당뇨병은 예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인슐린 치료가 있어야 한다. 학생, 부모, 교직원, 의료 제공자 그리고 행정관 사이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었을 때 학교에서의 당뇨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학생은 혈액 글루코스 모니터링, 저혈당 치료, 케톤 검사, 탄수화물 양 수치, 인슐린 투입에 대한 도움을 학교 시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의료 제공자와 부모/보호자로부터 서면 허락서가 있을 경우이다. 당뇨 관리 계획을 시작하려면 자녀의 학교에 근무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양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비만 아동 및 청소년은 제 2 유형 당뇨, 고혈압, 심장병, 천식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다. 제때에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는 신장 부전, 실명, 심장마비, 사지 절단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국가 기관 및 관할 보건 기관과 함께 공조하여, 제 2 유형 당뇨병 정보를 작성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7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해오고 있다. “당뇨병이란 무엇인가?”라는 본 정보지는 현재 7학년생과 7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시 또는 정규 학급 시간에 제공한다

예방 접종 필수조건

등록 당시, 의료 제공자 또는 보건국이 작성한 예방 접종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현시점에서 접종해야 하는 모든 예방 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경우, 신입생은 등록이 안될 것이다. 등록 당시, 백신이 추가로 더 요구되는 학생 또는 서면상 기록을 제시 못한 학생에게 유예기간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구에 처음으로 등록하거나 교육구에 속한 타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현시점에 요구되는 모든 예방 접종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 더불어, 7학년으로 새로이 입학하거나 진급하는 모든 학생들은 백일해 백신 주사(일명 Tdap)를 7세 생일날짜 또는 그후에 접종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부모(들)/보호자(들)은 해당 학생이 6학년일 때 의료 제공자를 만나서 모든 예방접종을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한다.

예방 접종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열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이다. 주(state) 시행 수칙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은 해당 필수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절대로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 전염병에 노출되었고 이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학생은 공공 보건국의 재량에 따라 출석을 못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공인 의학 박사(MD) 또는 정골 의학 박사(DO)는 의료 상황을 근거로 예방접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시킬 수 있다. 부모/보호자는 반드시 캘리포니아-공인 (MD) 또는 DO로부터 다음이 포함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자녀의 신체적 건강 상태 또는 건강 상태가 필요한 예방 접종이 금기 사항이라는 것
2. 어떤 백신이 면제되었는가.
3. 의료적 면제가 영구적인가 잠정적인가.
4. 면제가 잠정적인 경우, 면제 종료 날짜.

2016년 1월 1일부터, 주법에 의하면 학교 또는 차일드케어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현행 필수 예방접종으로부터 개인 신념 면제서(Personal Belief Exemption - PBE)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된 PBE는 다음 학년이 시작될 때까지 인정되며, 이는 법이 정의한 내용이다. 예방접종 조건은 학생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이 요구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접하는 기회를 금하지 않는다.

학교 보건 관련 직원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학교-중심 클리닉이 여러 곳에 소재한다. 교육구 양호 서비스에 (213) 202-7580 또는 (213) 202-590으로 연락하여 정보를 받거나 예약을 할 수 있다.

처방약 투약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9423 조에 의하면, 정규 학교일 동안 약(의사 처방약 또는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약)을 복용해야 하는 학생은, 다음을 교육구에 매년 한 차례 제출한 경우 유자격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담당 교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공인된 의료 케어 제공자로부터 해당 처방약의 복용법, 양, 복용 시간 간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힌 진술서를 제시하는 경우; 그리고
2. 의료 케어 제공자의 의사의 진술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학생이 약을 복용함에 있어서 교육구의 도움을 희망한다는 내용서를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출하는 경우.
3. 가능할 때마다, 공인 의료 제공자는 학생이 학교 시간 동안 약을 복용할 필요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복용 스케줄을 만들어 주기를 더 선호한다. 부모(들)/보호자(들)은 공인 의료 제공자들에게 이런 조치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해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4. 서면 허락서는 반드시 매년 또는 공인 건강 제공자로부터 새로운 서면 허락서를 받을 때마다 갱신해야 한다. 허락서는 공인 의료 제공자가 서명한 날짜로부터 달력 년도 일년동안 유효하다
5. 부모나 보호자가 복용약 투약 지시 사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또는 이런 변경이 공인 의료 제공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낼 때까지 실행하지 않게 된다.

서면 동의서 없이, 학생은 약을 교정에서 소지하거나 복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구가 증빙 서류를 받았을 경우, 학생은 특정 약 (예: 흡입용 천식 약 또는 자동-투여가능한 에피네프린 약)을 소지하거나 자신 스스로 투여할 수 있다. 다음이 포함된다:

1. 약명, 복용법, 복용량, 복용시간 그리고 학생이 혼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을 자세히 적은 의료 케어 제공자의

- 처방 관련 문서; 그리고
2. 학생 혼자 힘으로 복용해도 좋다는 허락 내용을 적고, 유자격 양호사와 의료 케어 직원이 복용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학생 의사에게 연락해도 좋다는 허락 내용 그리고 부작용 발생 시 교육구나 교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진술서.

특정 천식 치료법(Asthma Action Plan)은 학생이 학교에서 천식약을 소지하고 스스로 복용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처방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복용약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생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수 양식서를 유자격 양호사나 행정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교육법 제 49414 항에 의거하여, 교육구, 교육 카운티 부서 및 차터 학교들은 비상 에피네프린 자동-주입기를 양호사와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원 직원에게 제공하여 즉 에피네프린 자동-주입기를 도움을 자원했고 이에 대해 위임받은 사람들은, 아나플락시스 반응 (심각한 알러지 반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보기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에게 비상시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구강 건강 정보

공립학교에 등록된 유치원생 또는 이전에 공립학교를 재학한 적이 없는 1학년생들은 해당 학년도 5월 31일까지 구강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았다는 증빙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해당 학생이 공립학교에 처음으로 등록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전의 검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규는 현재 유치원이나 1학년으로 등록된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구강 검진은 공인 치과의사, 기타 공인/면허 치과 전문인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부모/보호자는 기권서에 서명함으로써 구강 검진 법규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 자녀의 보험을 받는 치과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검진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자녀의 구강 검진을 원치 않는 경우. 구강 검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가해지는 벌칙을 전혀 없다(예: 검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기권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출석을 거부당하지 않는다).

건강 검진

1학년생들은 입학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또는 1학년 입학 후 3개월까지 종합건강 검진 및 의료 평가를 요하는데 이는 아동 보건 및 장애 방지(CHDP)의 지침 사항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아동 보건 및 장애 방지 또는 이와 상응하는 검진은 사설 의료 제공자, 보건국 진료소 또는 교육구 학생 의료 서비스 직원이 실시할 수 있다. 초기 유아 프로그램에 진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요구되지 않지만, LAUSD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학생은 최근의 건강 검진서를 학교에 제출할 것을 권한다. 이런 용도의 양식서는 “학교 입학에 위한 건강 검진서”(PM 171)라고 불리며, 양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의료 보험이 없거나, 부분 보험이거나 또는 부모가 메디칼 수혜자인 경우, 자녀는 학교에서 아동 보건 및 장애 방지 검진을 무료로 해당 학교 또는 LAUSD 학교 중심 클리닉(SBC)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다. CHDP 검진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양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만약 부모/보호자가 학교에서 자녀의 건강 검진(시력 및 청력 검사 포함)을 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해당내용을 작성한 진술서를 행정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주(state)의 의무 조항에 의거하여, 시력 검사 및 청력 검사는 학교에서 실시될 것이다. 7학년 여학생 및 8학년 남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척추 측곡(척추가 한 방향으로 기우는) 증상이 있는가를 검사하게 된다. 위의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발견한 내용이 앞으로 주의가 요하는 경우, 부모/보호자는 해당 내용을 통지 받게 된다.

학교와 학교사이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은 반드시 공인 의료 제공자가 실시하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건강 검진으로 치장되는 신체 검진을 매년 통과해야 하며, 이는 현행 교육구 방침 준수와 일치한다. 개인 의료 제공자가 없는 학생은 학교 의사 및 간호사 프렉티셔널과의 예약을 통해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입학, 아동 건강 및 장애 방지 그리고/또는 스포츠 건강 검진을 위한 예약 관련 정보는 학생 의료 서비스 부서에(Student Medical Services) (213) 202-7584 로 연락하거나 (213) 202-7590 으로 연락하여 예약을 잡도록 한다. 더불어, 학생 의료 서비스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Page/6200> 를 통해 클리닉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학교 정신 건강 학생 건강 및 인문 서비스 (SHHS)

학생 건강 및 인문 서비스 (SHHS) 학교 정신 건강 부서(SMH)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들에게 그들이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폭넓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SMH 서비스는 학교, 클리닉, 웰니스 센터, 그리고 LAUSD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 서비스와 지원책은 무료이며 그리고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된다. 임상인들은 복수 증거-중한 치료를 트레이닝 받았고 그리고 우울증, 불안, 문제 행동 및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료한다. 복용량 도움은 현재 SMH 의뢰인으로 등록된 유자격 메디-칼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213) 241-3841 로 연락하거나 학교 정신 건강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Mental-Health> 를 검색하면 클리닉과 웰니스 센터 명단을 찾아볼 수 있다.

학교 정신 건강 의뢰 절차

서비스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교직원과 패밀리리는 해당 학교에 준비된 의뢰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교직원 그리고 부모들/보호자들은 클리닉에 연락하여 당일 당직 직원에게 의뢰할 수 있는지를 상의하도록 한다.

- 교직원은 학교 행정관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리고 부모/보호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학생을 위해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 교직원은 (행정관, 교사 또는 보조 직원) 부모/보호자와 함께 클리닉 상담 의뢰 서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의뢰서를 작성할 때, 가족 연락 정보가 (주소 및 전화번호)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 작성된 의뢰서는 각각의 로컬 교육구에 지리적으로 해당되는 클리닉으로 보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은 의뢰서 상단 부분에 표시되어 있다)
- 일단 해당 의뢰서가 접수되어 처리되면, 학교 정신 건강 직원은 전화 또는 우편물로 가족에게 연락하여 일차 예약을 잡을 것이다.

- 일차 접수 면담과 평가 과정 동안, 학교 정신 건강 직원은 학교-중심 직원 특히 의뢰 당사자와 공조할 것이다.
- 해당 정신 건강 치료는 필요성을 토대로 학생과 패밀리에 제공될 것이다.

해당될 경우, 학교 정신 건강 클리닉 직원은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학생과 패밀리에 제공하여, 여러 건강 및 소셜 서비스 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건강 및 인문 서비스/학교 정신 건강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

<https://achieve.lausd.net/smh#spn-content>.

LAUSD 소속 웰니스 센터

웰니스 센터를 통해 학생들은 필수 건강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웰니스 육성, 및 커리어 진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웰니스 센터는 LAUSD 와 파트너십이 있는 커뮤니티 의료 제공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종합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예방 접종, 건강 검진 (스포츠 신체 검사 포함), 건강 방문, 질병 방문, 민감한 서비스,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전문 진료 의뢰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성인은 또한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성인 예방 접종, 결핵 검진 및 전문 진료 의뢰에 대한 검진 및 의료 관리와 같은 서비스 메뉴에 액세스 할 수 있다.

모든 웰니스 센터는 Medi-Cal 및 My Health LA 보험을 받는다. 건강 보험이 필요하면 CHAMP 직원 1 (866) 742-2273 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웰니스 센터에 관한 최신 정보는 학생 건강 및 인문 서비스 웹 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Page/11883#spn-content> 를 방문하십시오. <https://achieve.lausd.net/Page/11883#spn-content> 를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 상단의 "Center / Clinics"링크를 클릭하여 진료소 및 웰니스 센터 목록을 볼 수 있다.

자살 예방, 중재 및 후속 예방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LAUSD) 안전하고, 정중한 안전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살 생각 또는 행동을 표현하거나 나타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리고 자살 사망 후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직원,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들은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학교 및 커뮤니티 정신 건강 기관과 연결시키는 강력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녀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믿어지면, 질문을 하면서 그 상황을 접근하도록 한다. 질문하는 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첫 발걸음이 되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곳에 있을 것이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릴 것이라고 말해준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911 로 전화한다. 정신학적 긴급상황일 경우, 정신 건강 부 24-시간 액세스 센터에 (800) 854-7771 으로 연락한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SHHS 학교 정신 건강에 (213) 241-3841 으로 전화하거나 <http://ccis.lausd.net> 를 검색하십시오. 학교 정신 건강 위기 상담 및 중재 서비스 직원은 학년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 30 분까지 자문을 제공한다.

고교 졸업 필수 조건

2005 년 6 월 14 일에 LAUSD 교육위원회는 a-g 결의안을 승인함으로써, 고교 졸업 필수조건의 일부로 a-g 학과목 과정 시행을 통해 교육적 형평성을 이룩하고자 한다. a-g 결의안은 2008 년 7 월 1 일부터 시작하여, 15 개의 대학 진학을 위한 학과목 과정 완수를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졸업 조건으로 설정했다 (LAUSD 공문 2513.1).

2016 년에 졸업하는 학생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LAUSD 학생은 반드시 본 교육구의 졸업 조건들 중 일부로 a-g 순차적 학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다음 도표에는 a-g 순차적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학과정과 비-학과정 조건을 적정하게 이수한 12 학년생들은 졸업장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모든 과정을 적정하게 완료했으며, 졸업 기념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본 교육구는 졸업 기념식에 참여하는 유자격 학생들에게 졸업모자와 가운을 대여해줄 것이다. 부모는 졸업 모자와 가운을 기념품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LAUSD 고교 졸업 필수 조건

과목	2016 을 통해 졸업 년도 2019
역사/사회 과목 – A (3 년))	학생은 최소 UC/CSU 열 다섯(15)개의 A- G 학과목 조건을 적어도 D 성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영어 – B (4 년)	
수학 – C (3 년)	
과학 – D (2 년의 실험 과학)	
외국어 – E (2 년)	
시각 및 공연 예술 – F (1 년의 동일한 과목)	
선택 학과목– G (1 년)	
보건 헬스	1 학기
체육	4 년*
선택 과목	
졸업을 위해 필요한 총 학점수	210

* 학생이 주에서 요구하는 신체 피트니스 테스트의 6 가지 구성 요소 중 5 가지를 합격하면 2 년 옵션 면제가 가능하다. 학생들은 2 년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이거나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면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카운슬러에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교 졸업장 취득에 필요한 비-학과목: 요구되는 고교 학점 취득, 서비스 학습 조건을 성공적으로 완수, 그리고 커리어 패스웨이. 학부모들은 이 모든 필수조건들을 매년 자녀의 학교 카운슬러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학부모들에게 적극 권장한다.

카운슬링 요소

중학교/고등학교 보충 카운슬링 프로그램에(**AB1802**) 의거하여, 7-12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학생, 부모 그리고 카운슬러와 함께 컨퍼런스를 매년 받아야만 한다.

모든 중고등 학교는 중고교생 개인별로 개별 졸업 플랜 (**Individual Graduation Plan - IGP**)을 작성해야 한다. **IGP** 면담은 카운슬러, 학생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 사이의 개인적 관계까지 연장되어 학업, 사생활 및 커리어 계획을 상의한다.

SB 405/EC 제 52378 항에 의거하여, 학생의 커리어 목표, 학업 및 커리어-관련 기회를 검토하고, 4 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학과목 과정을 설명해야만 한다. **A-G** 필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과정에 속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식별하여 모니터되어야 한다.

영어 학습생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 및 캘리포니아 주 영어 언어 능숙도 평가 (ELPAC)

LAUSD 는 자녀의 문화 및 언어 자산을 소중히 여기며 자녀의 교육적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옵션을 제공한다. 유창한 영어 구사자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구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교 직원은 가정 언어 설문 조사를 사용하여 가정과 학생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결정한다. 가정 언어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교육구는 주법에 따라 초기 **ELPAC** 평가를 사용하여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신규 등록생의 영어 실력을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는 등록 후 처음 30 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는 *영어 학습생을 위한 초등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 및 배정에 관한 최초 통지서 또는 영어 학습생을 위한 중고교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 및 배정 통지서*라는 학부모 서신으로 이 요구 사항을 통보한다.

학생의 영어 학습 진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한 모든 영어 학습생은 재분류 기준이 충족 될 때까지 봄학기에 캘리포니아 영어 언어 능숙도 종합 평가 (**ELPAC**) 시험을 실시한다.

ELPAC 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학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https://achieve.lausd.net/Page/14132> 또는 www.elpac.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USD 는 영어 학습자의 부모를위한 다섯 가지 학습 프로그램 옵션을 제공한다

- 듀얼 랭귀지
- 지속적 이중언어
- 전환적 이중언어
- 구조적 영어 이머전
- 주류 영어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중 언어 / 이중언어 상용화 및 / 또는 영어 숙련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장 또는 다국어 및 다문화 교육부 웹 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Page/172#spn-content>)에 문의하십시오.

학습지도 테크놀로지 결의안

학습지도 테크놀로지 결의안(ITI)은 학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학생에게 학습지도 테크놀로지 접목을 최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ITI 프로그램 및 지원은 **ISTE** 학생용 학습기준과 일치하며 그리고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의 목표는 학습지도 리더십 팀의 역량 구축을 통해 맞춤형 학습 관행을 설계 및 적용하여 디지털 도구와 지원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한다.

더불어 ITI 는 상식 교육과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매년 디지털 시민의식 주간을 후원하며, 교과 자료와 전문적 배움의 기회를 통해 책임있고 원숙한 디지털 시민이 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디지털 시민의식은 지속적인 학습지도 과제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로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안전 길고 대학 및 커리어 목표에 있어서 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기르친다. 학생 디지털 안전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http://achieve.lausd.net/iti> 을 검색하십시오.

부모와 보호자는 이런 노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ITI 는 교육구 여러 부서와 공조하여, 부모들과 함께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여, 학습지도용 테크놀로지 목표,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시민의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해충 종합관리 프로그램

1999 년 3 월, 교육위는 제초 기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살충제 및 제초제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목표로 작성한 수정된 살충제 종합 관리(**IPM**) 방침을 승인했다. 인체, 환경,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해충 문제를 가장 안전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교육구의 목표이다. 아래에 설명된 **IPM** 방침에 의거하여, 장기적인 예방에 주력하며 적절한 살충제를 선택할 때 비-화학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기 전에 기계적인 살충법(예: **glue traps**), 축출 살충법(문예 방충방 설치, 구멍이나 틈을 메운다)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공공 보건 공직자, 의사, 두명의 부모, 기타 일반인, 총 15 명 회원으로 구성된 해충관리팀(**Pest Management Team**)과 교육구 직원은 본 방침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위험률이 적은 살충제와 제초제를 승인하는 일도 이에 포함된다.

살충제/제초제는 **IPM** 에 의해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살충제의 함유물, 사용 유의사항, 위험률이 적은 살충제들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승인된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교육구의 공인된 해충 관리 기술자에 의해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 학교-중심 직원, 계약 업체, 학생, 부모는

살충제/제초제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교육구는 IPM 프로그램 요약 내용과 목표 그리고 IPM 방침서, 통지서 요청 그리고 이 핸드북에 포함된 현행 IPM 팀-공인 살충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부모, 고용인 및 학생들에게 살충제 사용을 통지할 것이다.

다음 정보는 해당 학교의 메인오피스에서 받아볼 수 있다:

- IPM 팀 공인 살충제 목록
- 해당 학교에서 IPM의 활동을 적은 기록
-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이를 72 시간내에 통지받기를 원한다는 통지 요청서(Request for Notification)에 부모 서명 (IPM 조정인, 독립 IPM 전문가인 긴급상황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

통지서에는 다음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제품명, 활성요소, 제거 대상 해충, 살충제 사용일자, 살충제의 독성을 나타내는 기호,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는 연락처와 전화번호, 학교 사무실에서 추가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 자녀가 살충제에 노출되면 자녀의 건강 그리고/또는 행동에 지장을 주거나 살충제가 뿌려질 때마다 통지받기를 원하는 부모나 보호자들은 통지 요청서를 통해 이를 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IPM 팀이 승인하지 않은 살충제를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고문을 최소 72 시간내 그리고 해당 살충제의 효능이 지속되는 시간 절반의 5 배되는 시간내에 눈에 잘 띄는 주변에 붙여 놓는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긴급상황에서는 살충제를 뿌림과 동시에 이에 대한 공고문도 붙인다. IPM 프로그램 및 방침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는 교육구 관리 및 운영부에 (213) 241-0352 로 연락하시오. 해당 정보는 www.laschools.org의 Links 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다. IPM의 학부모 대표 자리가 공식일 경우, IPM 위원에 관심있는 학부모나 보호자들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이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한다.

방침 설명서: 해충 종합관리(IPM)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방침이다. 본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은 연방법, 주법, 규제법과 카운티 조례를 의거한 것이다. 모든 교육구의 방침은 본 IPM 방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살충제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위험하며 특히 아동들에게 더 위험하다. 살충제는 인체에 나쁜 영향 즉 암, 신경 손상, 기형아, 유전자 변경, 생식기관 관련 유해, 면역기관 장애, 내분비선 파괴, 독극성의 원인이 된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양호한 교육환경과 학교 건물과 부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 해충은 규제될 것이다. 살충제는 외관상의 미적인 면만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 교직원 및 환경의 안전과 건강을 더 우선으로 둘 것이다. 더불어, 인체, 환경 및 재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가장 안전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살충법으로 해충을 규제하는 것이 교육구의 목표이다. 교육구 IPM 방침에 의하여, 장기적인 예방에 주력하며 적절한 살충법을 선택할 때 비-화학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교육구는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화학 살충법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예방 원칙이 교육구의 장기적인 목표이다. 원칙적으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은 살충제는 없으며 그리고 살충제 제조 회사는 자사 제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부담시키기 보다는 자사 제품이 상기에 나열한 위험요소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예방원칙을 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수십년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방침은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구는 이런 것을 가능케하는 검증된 과학자료가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통합 안전 학교 계획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교육구는 학교 안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교육법 32281 항을 준수해야 한다. LAUSD 통합 안전 학교 계획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다루며 폭력 예방, 비상 사태 대비, 교통 안전, 위기 중재 및 웰니스를 포함한다. 학부모는 교장 또는 학교 안전 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특정 학교의 안전 학교 계획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다. 학교 안전 계획위원회는 매년 계획 검토 및 업데이트를 담당한다. 특정 학교의 안전한 학교 계획 사본은 각 학교의 메인오피스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다. 교직원은 각자 온라인으로 로그인하여 학교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교육구 컴퓨터 네트워크(LAUSDnet)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 및 이메일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구 웹사이트는 www.lausd.net이다. LAUSD 학생이나 직원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LAUSD의 책임감있는 사용 규칙(RAUP)에 의해 규제되며 이런 내용은 교육구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aup>에서 찾아볼 수 있다. LAUSDnet를 통한 인터넷 사용 및 이메일 구좌를 포함한 교육구 네트워크 자원 사용은 특전이지 권리는 아니다. 인터넷과 전자 메일을 부적절히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전은 취소될 수 있다. 학생증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등록된 학생과 현직 LAUSD 직원들 그리고 교육구에 의해 채용된 계약인들은 LAUSDnet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과 교육구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하는 취지는 정규 수업 또는 업무 활동, 교육적 리서치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학생은 LAUSDnet 이메일 구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학생이 등록된 학교의 교사 또는 행정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육구 시설물에 인터넷을 접속하거나, 교육구 시설물과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지만 교육구 시설물과 접속된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은 학교에 **학생 서명**과 **학부모 허락서**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패스워드를 잘 관리하고 이런 정보를 기밀에 부쳐야 한다. 어휘와 숫자를 섞어서 패스워드를 어렵게 만들어 안전을 도모할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학생들은, 어떠한 상황 하에라도 자신의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된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연방 아동 인터넷 보호법(Federal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CIPA)을 준수한다. 특히 CIPA는 교육구가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A) 음용한 내용, (B) 아동 포르노, 또는 (C) 미성년에게 해로운 내용. 차단용 테크놀로지가 100%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학교나 집에서 자녀의 인터넷 접속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없다. 인터넷을 제공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21 세기의 아동 보호 법에 의거하여 교육한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책임감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한다. 인터넷을 학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도 있으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부모와 학생은 반드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http://achieve.lausd.net/cybersafety>를 검색하여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음악, 사진, 비디오, 소프트웨어,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학생은 반드시 모든 해당 저작권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에 더불어,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그 적합성을 세심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음악, 사진, 비디오,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는 개인용이 아니라 교육구용으로만 다운로드해야 하며 개인 용도로 다운로드할 수 없다. 개인적 다운로드 특히 저작권으로 보호된 LAUSD의 RUP에 저촉되는 자료인 경우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승인되지 않거나 그리고/또는 불법 다운로드 행위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LAUSDnet 사용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사생활 비밀 보장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교육구는 학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좌 감사 및 로그인 행위를 모니터링 권리를 보유한다. 인터넷은 공공 네트워크이며 이 속에 있는 이메일 또는 기타 통신 내용은 사적 내용이 아니다. LAUSDnet 시스템 운영자들은 모든 사용자의 주소 및 자료, 이메일, 웹페이지, 그리고 시스템 서버(server)에 저장된 기타 자료를 접할 수 있다. 시, 주법 및 연방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교육구의 목표, 목적, 방침 및 교육적 사명과 불일치하는 자료를 사용자가 접속을 시도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학생은 온라인상의 활동을 실제 인간관계의 행위처럼 생각해야 한다. 타인의 계좌를 위험하게 하거나 비허용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더불어, 타인의 이름, 이메일을 삭제, 복사, 수정 또는 위조, 타인의 신원으로 변조하거나 사칭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용자는 인종, 종교, 신념, 피부색, 국적, 조상, 신체 장애, 성별, 성 및 성적 성향 또는 기타 이유로 타인을 협박, 조롱, 명예 훼손, 비하할 목적으로 LAUSDnet를 접속할 수 없다. 더불어, 인터넷과 전자 메일을 포함한 교육구 네트워크와 전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때, 이를 왕따 또는 타인이나 타인들을 위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로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는, 이메일이나 기타 게시 자료에 포함된 개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은 해당 내용을 작성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이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견해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LAUSD의 RAUP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이메일 특권을 상실할 수 있고, 더불어 징계/법적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학교 대항 운동경기

LAUSD 학교 대항 운동부(Interscholastic Athletics Office)는 중학교 교내 프로그램(Middle School Intramural Program)뿐 아니라 고교 운동 프로그램도 주관한다. 이 두개 프로그램 모두 학업과 운동사이의 결함을 장려하고, 스포츠 참여 가치를 육성하도록 고안되었다. 더불어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학교 대항 운동경기 참여는 모든 고교생에게 제공되며, 이는 대부분의 스포츠 학교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싱글-사이트 매그넷 학교도 포함된다.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학교 대항 연맹 및 LAUSD 학교 대항 운동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자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참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학생은 반드시 내신 성적을 최소 2.0으로 유지하고, 매년 교육구의 현행 방침에 준하는 공인 캘리포니아 의료 제공자가 실시한 종합 신체 검진을 통과해야 하며, 그리고 이머전시 카드를 제출해야만 한다. 더불어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의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보험 증서도 제출해야만 한다. 운동 학생은 스테로이드 사용 금지서, 품행 서식서, 헤이징 및 왕따 금지서, 비시즌 책임부담 면제서, 운동 보험 증서, 헤이징 및 불링, 타박상 정보 서식서, 급작 심장 마비 경보서 그리고 언론 공개서에도 반드시 서명해야만 한다. 부모는 위험 경고 확인서(Acknowledgement of Risk Warning)와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캘리포니아 학교 대항 운동 연맹 경기 또는 치어리딩에 참여할 계획인 학생은 반드시 연례 예비 신체 검진을(PPE) 유자격 캘리포니아 공인 건강 케어 제공자로부터 받아야하며, 이는 트라이아웃과 연습 운동을 포함하여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 전에 갖추어야 한다. 교육구는 캘리포니아-공인 의사(MD 또는 DO), 간호사 프랙티셔너(NP), 또는 의사 보조인(PA) 작성한 PPE를 받아들인다. 일부 보조 유니트와 마칭밴드는 반드시 신체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는 트라이아웃, 연습 및 참여가 있기 전에 적어도 일회는 검진을 받아야 한다. 만약 공인 건강 케어 제공자가 해당 운동 선수가 타박상이나 머리 부상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운동선수는 공인 건강 케어 제공자의 감독 하의 기간이 칠 일 미만일 때 수료 리턴-투-플레이 서식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한다. 운동선수 학생은 치료 의사와 학교 양호사가 운동을 해도 좋다는 검증이 기재된 서면 확인서가 없을 경우 운동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학생 대항 운동 프로그램 및 중학교 교내 대항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학교 대항 운동부에 213-241-5847로 연락하십시오.

미성년자 감옥/캠프 수강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

교육법 제 48645.5 항에 의거하여, 학생이 미성년자 사법 제도에 접촉되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공립학교 등록이나 재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공립학교 교육구와 카운티 교육부는 학생이 이전에 재학했던 공립학교, 미성년자 법정 학교 또는 비공립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전체 또는 일부 학점을 인정해야 한다. 의무교육 출석을 면제받지 않은 한, 미성년자 사법 시설, 기타 법령으로 배정된 곳으로부터 재입학하는 학생은 기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동일한 권리가 주어지며 그리고 즉각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육법 제 48645.5, 49069.5 및 48648 항에 의거하여, 카운티 교육부와 카운티 감찰국은 합동 전환 플래닝 방침을 설정하여, 미성년자 법정 학교로부터 방출되어 해당 교육 기관으로 등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LAUSD,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부(LACOE)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호감찰국은 서로 공조하여, 교육구에 재-입학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절한 학교 배정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이런 절차와 단계를 개발하며, 그리고 모든 LAUSD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프터케어 케이스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법 제 51225.1 항에 의거하여, 고교 2년차를 수료한 후 새학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졸업 조건이 면제된다. 이런 조항의 취지로 미성년자 법정 제도에 개입된 청소년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은 반드시 복지 및 제도법(WIC) 602 항 하에 탄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미성년 법정에서 범죄로 기소된 모든 경우는 복지 및 제도법(WIC) 602 항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고려된다; 이미 유죄 판결이나 보호감찰에 놓이지 않아도 이에 해당된다. 추가 정보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생 건강 및 인문서비스 부서, 학생 지원 프로그램, 미성년자 감옥/캠프 재입학 프로그램에 (213) 241-3844으로 연락하십시오.

학생 기록의 보관 장소

대부분의 학생 기록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보관되어 있다. 초등학교가 보관하는 학생 기록은 교장이 기록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메인 오피스에 보관하는 것이 상례이다. 중고교에서는 대개의 경우 해당 정보를 아래 명시한 바와 같이 보관한다:

1. 학생의 보건 관련 교육 기록은 양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양호실에 보관된다.
2. 성적, 상담 또는 훈육 지원과 관련있는 교육 기록은 학생 상담 서비스 담당 교감이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담 부서에 보관한다.
3. 출석 관련 교육 기록은 학생 보조 서비스를 담당하는 교감이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출석 부서에 보관한다.
4. 운동 활동 관련 교육 기록은 체육 교육 지도 교사가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체육 교육 부서에 보관한다.
5. 수업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 기록은 담당 교사가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해당 교실에 보관한다.
6. 특수교육 IEP 는 학생 종합 기록부(student's cumulative record folder)에 보관된다.

징계처분, 특수 교육, 심리 기록과 같은 학생 기록의 일부는 로컬 교육구, 지원부서 또는 중앙 교육구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뉴스 미디어 공개

때때로, 기자와 언론 매체 종사자들은 운동 경기, 학교 집회, 특별 프로그램 그리고 뉴스가 될만한 행사에 대한 기사 작성,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 진행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학생을 사진 촬영하는 것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부모는 이 핸드북과 함께 보내진 위임 및 허락서에 서명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학교 또는 교육구가 LAUSD 데일리,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기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공유하고자 하는 좋은 뉴스를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 자녀가 인터뷰, 비디오나 사진 촬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와 보호자는 이 서식서를 서명하지 않거나 돌려 보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서명된 서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담당 교사에게 말하여 인터뷰나 사진 촬영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서식서는 교정에 있는 학생들만 포함된다. 학생이 교정 밖으로 나가서 인도와 같은 공공 부지에 있을 때, 기자와 사진사는 질문을 하거나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에 대한 허락이 필요없다.

이러한 사유로, 자녀와 함께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결정이 더 좋은지에 대해 미리 사전에 대화하도록 한다.

차별 금지 성명서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불법 차별행위와 괴롭히는 행위,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가 없는 근무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교육구는 상당한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각 개인의 실질적 또는 인지된 인종 또는 민족, 남녀/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임신, 출산, 모유 수유, 임신 관련 의료 상태가 포함됨), 성적 경향, 종교, 피부색, 국적, 조상, 이민 신분, 신체 장애 또는 정신 장애, 의료적 상황(양-관련 및 유전적 특징), 군대 및 재향 군인 신분, 결혼 신분, 등록된 주거 파트너 신분, 연령 (40 그리고 그 이상), 유전자 정보, 정치적 신념 또는 소속 (노조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런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그리고 연방법, 주법 또는 관할 법규, 조례 또는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여러 근거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를 금지한다.

차별은 합법적인 비 차별 사유없이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맥락속에서 보호된 영역을 토대로 다른 처우를 하며, 그리고 서비스, 활동 또는 교육구에 의해 제공되는 특권으로부터 참여나 혜택을 받는 개인의 능력을 방해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괴롭힘 행위는 다음의 경우 발생한다: (1) 표적 당사자는 보호된 영역에 관련하여 원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다; (2) 괴롭힘 행위는 표적인에게 주관적으로 공격적이며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연령과 특성을 지닌 합리적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3) 괴롭힘 행위는 교육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활동, 기회에 대한 참여 또는 혜택으로부터 방해받거나 제약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고, 침투적이며 지속적이다.

괴롭히는 행위(harassment)는 위에 명시된 보호받는 분류에 속하는 일종의 불법적인 차별이며 본 교육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괴롭히는 행위는 학생 또는 고용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위협적이거나 학대적인 행위이며,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행위의 가해자인 학생이나 고용인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괴롭히는 행위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며, 언어 행위 및 욕, 시각적이거나 글로 제시한 내용,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창피를 주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보호된 영역(위에 언급된 상황들)의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을 근거로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를 목격하는 즉시, 학교 직원은 중재가 안전할 경우 이를 즉시 조치해야만 한다. 학교 또는 해당 부서가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왕따 행위를 통지받는 즉시, 그리고 이런 행위가 교직원, 학생 또는 제 3자에게 의해 행해진 것에 상관없이, 즉각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조사하거나 발생한 상황을 결정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그 행위를 종료시키고 공격적인 환경을 제거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한다. 이런 조치들은 불평 제기가 없다고 하여도 그리고 학교나 부서에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없어도 취해져야 한다.

본 비차별 방침은 교육구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입학이나 기회, 또는 처우나 고용에 적용되며, 이에는 작업 교육도 포함된다. 이동성 장애를 지닌 학생의 부모/보호자들은 교통편이 비장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LAUSD 또는 학교 후원 현장 학습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통편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을 요청하려면 학교 현장 행정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영어력 부족은 교육구 프로그램 또는 활동 접근 또는 참여에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 비차별 방침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육감 관할권 소속의 모든 학교 또는 부서 내에서 행해지는 학교 활동 또는 학교 출석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포함된다.

여러 다른 형태의 불법적인 차별, 괴롭히는 행위, 부적절한 행위 그리고/또는 증오로 인한 사건/범죄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기타 교육구 방침에 명시되어 있고, 학교 및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 교육적인 서비스 및 기회 제공시 불법적인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런 모든 방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본 교육구의 의도이다. 본 교육구는 고소 또는 항소한 사람, 차별, 괴롭힘, 그리고/또는 왕따 사건을 신고한 사람 또는 고소-접수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복 행위를 금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위에 나열한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고소장 제출(균일 고소 절차를 참고하시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학교 행정관, 학교 타이틀 IX/왕따 고소 매니저 또는 교육구 섹션 504 그리고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의 타이틀 IX 코오디네이터에게 (213) 241-7682 로 연락하거나, <http://achieve.lausd.net/eeco> 를 검색하도록 한다.

미 장애인법 (ADA) 하의 통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LAUSD")는 1990 년 미 장애인 법 ("ADA") 타이틀 II 의 요건에 따라 장애를 가진 유자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를 근거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차별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 : LAUSD 는 일반적인 경우, 요청이 있을 때, 언어, 청각, 시각 장애인들이 정보 및 통신을 이용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자격 수화 통역사, 점자 문서 및 기타 LAUSD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 및 절차 수정 : LAUSD 는 장애인이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수정한다. 예를 들어, 애완 동물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서비스 동물을 소지한 사람은 LAUSD 지사에서 환영을 받는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 보조 기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LAUSD 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정책이나 절차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신속히 지역 관할 당국 또는 해당 행사를 주최하는 교장에게 예정된 이벤트 48 시간 전에 연락해야 한다. 비-관할 행사의 경우 ADA 준수 관리자에게 ADA-Info.net 의 전자 메일로 연락하여 이용 가능성 수정에 대해 문의 할 수 있다.

ADA 는 LAUSD 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부당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인 부담을 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LAUSD 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다는 고소장은 ADA-Info.net 의 전자 메일 또는 213-241-4628 로 전화하여 ADA 준수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LAUSD 는 특정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에게 보조 기구/서비스, 정책의 합리적인 수정을 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어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장소로부터 물품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패밀리 교육적 권리 및 사생활 보호권 (FERPA) 통지서

패밀리 교육적 권리 및 사생활 보호권법(FERPA), 그리고 교육법 제 49060 항에 의거하여, 부모와 18 세 이상의 학생 ("유자격 학생")은 해당 학생의 교육 기록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보유한다. 다음의 권리에 해당된다:

1. 해당 학교가 요청을 받은 후 45 일 이내에 해당 학생의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 (가주법 하의 시한은 5 일의 영업일자이다)
 - 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은 학교 교장 (또는 담당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어떤 기록을 조사하고 싶은지를 표시해야 한다. 해당 교직원은 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이를 통지할 것이다.
2. 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이 학생 교육 기록이 오류, 오도 또는 FERPA 하에 학생 사생활 보호권을 저촉했을 때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학교에 기록 수정을 요청하는 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은 어떤 기록을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명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장(또는 담당 교직원)에게 보낸다. 만약 학교가 기부나 유자격 학생이 요청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는 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고 수정 요청과 관련된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고지할 것이다. 청문회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청문회 권리를 통지할 때 해당 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제공할 것이다. 본 안내서의 "학생 기록에 대한 이의 제기" 부분에서 상세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3. 학교가 신원 판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PII)를 공개하기 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공할 권리, 단지 FERPA 범위가 동의 없는 공개를 허락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동의 없는 공개를 허용하는 하나의 예외는, 합법적인 교육적 관심을 지닌 교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교직원은 행정관, 슈퍼바이저, 교사, 또는 지원 직원 (건강 또는 의료 직원 및 법 집행 부 직원) 또는 학교 위원회 관련인으로 학교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이다. 더불어, 교직원은 자원봉사자 또는 학교가 자체 직원 처럼 학습지도 서비스를 수행하며 그리고 학생 기록의 PII 을 이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학교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외부 계약인, 이에는 변화사, 감정사, 의료 자문인 또는 치료사가 포함된다; 또는 공식 위원회에 멤버로 자원한 부모 또는 학생, 즉 훈육 또는 항소 위원회; 또는 교직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자원한 부모, 학생 또는 기타 자원봉사자. 교직원은 담당 전문성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적 기록이 공식으로 필요한 경우 합법적 교육적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학교나 교육구가 FERPA 필수조건 준수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미 문교부에 고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FERPA 를 실시하는 부서의 명칭과 주소이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

FERPA 는 학생의 교육적 기록을, 부모나 유자격 학생의 동의없이, 만약 그 공개가 FERPA 법규의 제 §99.31 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PII 공개를 허용한다. 교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정 명령 또는 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과 관련된 공개, 주소록 정보 공개 그리고 FERPA 법규 제 §99.32 하의 부모나 유자격 학생에게 공개하는 경우, 학교는 이런 공개를 기록해야만 한다. 부모와 유자격 학생은 공개된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부모나 유자격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의 경우, 학생 기록의 PII 를 공개할 수 있다:

- 교사를 포함하여, 교육 기관이나 단체로서 학교가 합법적 교육적 관심이 있는 곳이라고 결정한 사람들. 계약인, 컨설턴트, 자원봉사자 또는 §99.31(a)(1)(i)(B)(7) - (a)(1)(i)(B)(2)에 명시된 조건에 의거하여, 학교가 외부로부터 기관의 서비스나 기능을 요청한 제 3자가 포함된다. [§99.31(a)(1)]
- 타학교, 학교 제도, 또는 학생이 등록을 추구하는 고등교육 기관, 또는 학생이 등록할 의도가 있거나 이미 등록한 기관으로서 이는 이런 공개가 학생의 등록이나 전학과 관련된 취지에 부합하고, §99.34의 필수조건과 교육법 제 49068항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99.31(a)(2)]
- 공인 대변인: 미 회계 감사원장, 미 검찰청, 미 문교부 장관, 또는 주 및 관할 교육 기관, 부모나 유자격 학생이 해당되는 주 (SEA) 교육기관. 이런 조항 하의 공개는, §99.35 필수조건 대상이며, 연방- 또는 주- 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감사나 심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 법적 필수조건의 집행이나 준수를 위한 것이다. 이런 기관들은 PII 를 외부 기관에 추가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이는 감사, 평가 또는 그들을 업무를 대리하는 활동을 준수하는 공인된 대변인으로서 지정된 기관들이다. [§99.31(a)(3) and 99.35]
- 학비 보조과 관계된 경우: 학생이 신청한 학비 보조나 이미 받은 지원으로서 만약 그 정보가 지원 자격을 결정하거나 지원 액수, 지원 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또는 이런 지원의 조건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99.31(a)(4)]
- 주 및 관할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서 주 사법 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보고받거나 공개하도록 허용된 경우로서, 미성년 사법 제도 그리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 그 기록은 공개 대상이 된다. [§99.31(a)(5)]
- 학교를 위해, 학교를 대신하여 다음을 위해 연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a) 예측된 검사를 개발, 타당성 검증 및 실시하기 위해; (b)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또는 (c) 학습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99.31(a)(6)]
- 공인 기관으로서 공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99.31(a)(7)]
- 학생이 IRS 세금 보고서 피부양자일 경우 유자격 학생의 부모에게 공개됨 [§99.31(a)(8)],
- 16 세 이상의 학생 또는 10 학년을 완료한 학생.
- 14 세 이상의 부양자를 동반하지 않은 무숙자 청소년
- 정보의 지식이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비상 사태와 관련하여 적절한 사람에게 알린다. 준항 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학교 또는 교육구는 연방 규정배 타이틀 제 34 조 99.32 (a) (5) 항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인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인 협회 인가.
- 재정 보조를 위해 학생을 신청하는 것과 관련된 기관이나 조직. 그러나 학생 또는 부모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정보는 재정 보조를 받을 학생의 자격을 결정하고, 재정 보조 금액을 결정하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공개 할 수 있으며 재정 보조와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재정 보조의 조건을 집행할 수 있다.
- 법정 명령 또는 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준수하기 위해 [§99.31(a)(9)] 건강, 또는 안전 비상국과 관련된 해당 공직원 §99.36. [§99.31(a)(10)]
- 부모/보호자/유자격 학생이 공개 옳아맞지 않은 경우 §99.37 [§99.31(a)(11)]하에 학교가 "주소록 정보"로 지정한 정보.

더불어, 공개되어도 위해성이 없거나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주소록 정보는 부모의 사전 서면 동의서 없이도 외부 기관에 공개될 수 있다. 주소록 정보 공개의 주된 취지는 학교나 교육구로 하며금 자녀의 교육적 기록을 특정 학교 인쇄물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 연극 공연에서 자녀의 역할을 보여주는 공연 안내장
- 연례 앨범
- 성적 우수자 또는 수상자 명단; 그리고
- 졸업 프로그램

외부 기관은 졸업 반지나 앨범을 제작하는 회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것은 아니다. 더불어, 두 개의 연방법에 의거하여, (ESEA)에 의해 수정된 바와 같이, 1965년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법 하에 지원금을 받는 관할 교육 기관(LEAs)은 요청이 있을 경우 군대 신병 모집관에게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단지 부모가 LEA에게 학생의 정보가 부모의 사전 서면 동의서 없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고지한 경우는 예외이다.

부모가 해당 학교나 교육구가 아래 주소록 정보로부터 자녀의 교육 기록으로 지정된 모든 종류의 정보 또는 일부를 부모의 사전 서면 동의서 없이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부모는 반드시 본 안내서에 있는 정보 공개서를 통해 학교에 통지하십시오.

정보 공개서에 명시된 정보를 공개를 보류하라는 서면 요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기 전에는, 학생 관련 주소록 정보의 다음 중 어떠한 내용도 그리고 모든 내용도 지정된 수령인에게 공개될 수 있다.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출석 일자 (예: 학년도 또는 학기)
- 현재 학교 및 최근에 재학한 학교(들)
- 학위 및 수상 경력

교육구에 의해 지정된 주소록 정보 수령인은 정보 공개서에 실려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9073 항에 의거하여, 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은 반드시 McKinney-Vento 무숙자 교육 지원법 하에 유자격 학생에게 주소록 공개 동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학생과 관련된 주소록 정보 동의서가 없을 경우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법 제 69432.9 항에 의거하면, 모든 12학년생들은 칼 그랜트 신청인으로 간주하며, 단지 학생이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신청을 원하지 않는 학생 제외한 12학년생들을 위해 교육구는 평균 내신 성적(GPAs)을 캘리포니아 학생 지원 위원회(CSAC)에 제출해야만 하며 이는 칼 그랜트 자격성을 결정하고 그리고 대학 교육을 위한 적절한 재정 지원금을 결정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교육구에 의해 검증된 GPA 정보가 없다면, CSAC는 칼 그랜트 자격성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이가 18세인 12학년생 또는 18세 미만의 12학년생의 부모/보호자는 자동적으로 칼 그랜트 신청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제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성인 학생은 반드시 정보 공개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감일까지 학교에 돌려보내야 한다.

양호사-패밀리 파트너십

양호사-패밀리 파트너십은 무료이며 처음으로 임신/자녀 양육을 하는 십대 학생들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유자격 양호사(정식 간호사)가 임신 기간동안 일-대-일 가정 방문을 하고 그 아이가 2 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 간호사는 임신한/자녀를 양육하는 십대 학생에게 건강한 임신 그리고 건강한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프로그램은 십대 학생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교육적 목표를 도와준다. 이런 자격에 해당되는 첫 아기를 임신한 십대 학생은 임신 초기에 가급적 빨리 등록하기를 권한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213) 202-7534 으로 연락하십시오.

기회 전학

기회 전학(OTs)은 학교나 교육구가 선도적으로 주선한 신중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전학으로서, 중재 및 행동 교정을 위해 LAUSD 산하 타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이다. 이전의 중재 노력이 올바른 행동 교정에 실패했을 때 또는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계속 다닐 경우 타학생의 안전에 위험을 노출시킬 경우, 비행 교정을 위한 대체적인 방안으로 발부된다. OT의 취지는 학업의 중단되는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학부모 및 커뮤니티 서비스 – 학부모 참여

주 교육 위원회 방침 #89-01

학부모 참여는 효율적인 학교 경험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 교육에 참여하면 학력이 향상된다는 점이 확실히 나타났다. 더불어, 부모가 자녀의 학교에서 참여하는 경우, 자녀들의 성취도는 더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 학교도 더 성공한다.

중요한 사실들:

- 가족은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이다.
- 자녀 교육에 부모가 참여하면 학력이 향상된다.
- 부모 참여는 잘 계획하여 종합적으로 장기간 지원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 부모의 참여로 인한 혜택은 모든 학년에 나타나며, 조기 유아 교육이나 초등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만 돕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커뮤니티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모는 반드시 학교에 전반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 가정의 소득 또는 교육 수준 보다는 부모의 자녀 교육 참여 범위가 학생의 성공에 더 중요하다.
- 학교와 가정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파트너 관계여야 하며, 가정과 학교는 자녀가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및 패밀리 참여 방침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교와 부모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성공적인 학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학부모 결의안*은 모든 학교와 교육구 업무 수행시, 모든 학교와 교육구에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더불어,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의거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은 모든 학교는 반드시 학교 자율위원회(SSC)를 결성해야만 한다. 학부모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별 자금 사용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 참여 플랜을 조인하고 또는 SSC의 멤버로서 결정하는데 반드시 개입해야만 한다. 새로이 제정된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에 의거하여, 본 교육구는 타이틀 I 학부모 참여 방침을 설정했고, 이를 통해 각 학교는 필요한 경우 학교 타이틀 I 학부모 참여 방침을 매년 검토하고 수정한다. 학부모는 www.achieve.lausd.net/families 를 검색하여 LAUSD 타이틀 I 학부모 참여 방침과 비-타이틀 I 학교에 대해 알아보거나 학부모 참여 방침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재분류된 영어 능숙생(RFEP)을 포함시키지 않은 영어 학습생(EL)이 스물 한 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영어 학습생 자문 위원회(ELAC)를 결성해야만 한다.

매년 봄에 실시하는 학교 경험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은 LAUSD 의 여러 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에 학교가 부모를 파트너로 얼마나 잘 환영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LAUSD 의 모든 학교는 학부모 센터를 운영하거나 학부모 지원과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할 것을 권장받는다. 학부모 참여를 위한 학교 목표에는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모든 학년의 부모들이 다양한 역할과 활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다음의 이런 목표들이다:

- 부모를 동등한 파트너로 환영한다
- 학업을 도울 수 있는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부모의 영려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 학부모 참여 관련 의무조항을 잘 준수한다..

학교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에서 작성되며, 학교와 학부모 센터 직원은 학부모 및 커뮤니티 서비스 (PCS) 부서 그리고 각 로컬 교육구(LD) 소속 학부모 및 커뮤니티 참여 팀으로부터 지원과 지침을 제공받는다. 영어 학습생, 이주자 학생 그리고 장애 학생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은 학교 중심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받는다. 요청을 받는 즉시, 학교는 장애가 있는 부모 또는 기타 특별 조치가 필요한 부모에게 특별 편의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특수교육 부서는 장애학생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과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자원을 제공한다.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213) 241-6701으로 연락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 연례 콘돔 제공 프로그램 관련 통지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AIDS)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HIV / AIDS)로 인한 만성적이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며 성병은 우리 공동체에서 전염된다. 공중 보건 통계 및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활동에 개입하는 10 대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구는 금욕이 감염을 방지하는 백퍼센트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교육 방법으로 금욕을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금욕 생활을 할 수는 없으므로 제대로 사용 된 콘돔이 HIV / 에이즈 바이러스 성병을 예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과 의료 및 공공 보건 당국과의 협조하에 교육위원회는 1992 년에 학생에게 콘돔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단지 학부모가 학교 간호사와 서면으로 허락을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인 방침을 제정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을 통한 교육구 학교 콘돔 제공 프로그램은 (CAP) 이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무료이다. 자녀가 콘돔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보호자들은 이런 내용을 언제든지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양호사 또는 담당 학교 현장 CAP 직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콘돔 제공과 관련하여 본 교육구는 어떠한 책임도 수용하지 않는다.

학부모 포털 (이전에는 PASSport 으로 알려짐)

학부모 포털을 통해 (PASSport) 부모/보호자는 24/7 항상 온라인 한 곳에서 여러 도구와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학업적 성공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https://passportapp.lausd.net/parentaccess/> 온라인을 통해 제공된다. 이 포털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http://passport.lausd.net> 을 검색하도록 한다

등록하려면, 다음의 것들이 필요하다:

- 개인 이메일 주소
- 자녀의 디지털 시큐리티 번호 (미 우편물로 또는 학교에서 받을 수 있음)
- 자녀의 생년월일
- 자녀의 교육구 ID 번호

학부모 포털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여러모로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에는 출결석, 성적과 숙제 그리고 표준 학력고사 점수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더불어 온라인으로 자녀의이머전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다음은 부모에게 제공 가능한 기능들이다:

- 출결석/스케줄
- 이머전시 카드 정보 및 연락 정보 업데이트 가능
- 성적과 숙제
- 영어 언어 학습생 진전도 (EL 학생 대상)
- 예방 접종 기록
- 학생 훈육 기록
- 표준 학력고사 기록
- IEPs (특수 교육 학생 대상)
- 연장 학년도 (ESY) 신청서 (특수 교육 학생 대상)
- 학교 급식 신청서
- 학교 자원봉사자 신청서
- 학교 초이스 신청서
- 고교 졸업 필수조건 및 진전도
- 버스 라인 및 지체 (통학버스 이용하는 학생 대상)
- 학교 칼렌다
- 학부모 자원

학부모 권리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1101 에 의하면, 공립학교 재학생의 부모/보호자들은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학교와 협조하고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 관계로 노력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기회를 가지며 그리고 사전에 학교 규율과 학교 방문 및 수업 참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LAUSD 학부모 권리 및 의무 장전은 학생의 성공에 필요한 부모의 파트너십 역할을 명시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부모 결의안*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자녀의 학업 성공을 옹호하는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시키는 내용이다.

자녀의 성공을 위한 부모의 권리 및 의무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이다. 이 명제는 2010 년 12 월 교육위원회가 수용한 결의안으로서 학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 가정의 강점과 자산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를 자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평생의 교사로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가정과 학교는 학생 성공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파트너십을 공약한다:

- 학생 성취도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유지한다
- 모든 학생이 대학 입학, 커리어 및 삶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 건설적인 대화를 늘리고 공조체계를 확고히 한다
- 상호 존경과 서로 돕는다.

학부모는 다음에 대한 권리가 있다:

- 자녀의 학업을 육성하고 대학 입학, 커리어와 삶을 준비시키는 무상 교육
- 각 가정이 지닌 자산의 가치를 두고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부모를 환영하는 학교 분위기

- 학교의 기대사항, 교육적 프로그램, 방침 및 절차에 대한 정보
- 자녀 학교의 질적 평가를 위한 CA 스쿨 대쉬보드
- 자녀의 학업을 참관하고 그리고 교직원과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 집과 학교에서 학생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기회들
- 자녀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튜터링 서비스와 기타 학습 기회
- 가급적 자녀에게 최상의 학교/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식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권리
- 교직원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번역/통역 서비스에 대한 권리

학부모는 다음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

- 읽기/쓰기, 높은 학업 성취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격려한다
- 자녀가 매일, 정시에 학교에 출석하여 배움에 대한 좋은 태도로 수업을 준비한다
- 자녀의 학업 진전도를 모니터링하고 지도한다
- 자녀의 교육에 대해 교사와 기타 교직원들과 상의한다
- 회의와 교육 활동에 참석하여 자녀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 연례 학교 경험 설문지를 통해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한다
- 학교가 자녀에 대해 알아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자녀의 교육을 옹호한다.

학교 자원봉사 프로그램 (SVP)

학교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사와 기타 직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학교를 지원한다. 학부모 및 커뮤니티 서비스 부서는 자원봉사자 서류 처리를 하며, 학교 자원봉사자의 명단과 자료를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클래스를 제공한다. 학교 자원봉사자들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녕을 위해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부모는 PCS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다. 학부모 포털을 통해서도 자원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해당 학교에 연락하거나 PCS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pcss>를 검색하시오.

등록 허가증 (PERMIT) 및 전학

교육구는 학생과 그 가정의 필요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증 통합 목표, 학생 수용력과 비용 요건은 등록 허가증을 시행할 때 불가피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들이다. 교장 및 각 로컬 교육구 담당 행정관은 등록 허가증 정보를 학생, 학부모 및 커뮤니티에게 제공할 것이다. 등록 허가를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곳에 신청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항소 절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등록 허가를 거절, 취소 또는 기각하는 학교나 교육구는 부모/보호자에게 항소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허위 정보나 등록 허가 자격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등록 허가는 즉각적으로 거절되거나 취소될 것이다.

등록 허가 신청서 절차 정보는 <http://studentpermits.lausd.net> 을 검색하거나 학생 서비스국의 등록허가 및 학생 전학 부서에 (213) 241-5255 로 연락하도록 한다.

캘리포니아 개방 등록법

새로운 캘리포니아 학생 수행도 평가 및 진전도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2014 성장 베이스 및 2015 성장 APIs 산출은 주교육위원회에 의해 중지되었다. 2015 API 점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CDE) 다음 학년도의 신규 개방 등록법을 만들어낼 수 없다.

타교육구 사이의 등록허가증

등록 허가 및 학생 전학부는 타교육구 사이의 퍼밋 요청과 이의 항소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있다. 타교육구 사이의 퍼밋은 LAUSD 에서 타교육구로 또는 타교육구에서 LAUSD 로 전학하기 위한 학생에게 발행될 수 있다. 타교육구 등록 허가는 반드시 등록허가 및 학생 전학부를 통해 처리 되어야만 한다. 교직원은 타교육구 등록허가증을 승인, 거절 또는 취소할 수 없다. LAUSD 퍼밋 신청서는 <http://studentpermits.lausd.net> 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야만 한다. 신청서는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서만 접수되어야만 한다. 다음 학년도를 위한 지속적인(ONGOING) 타교육구 사이의 퍼밋 신청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이 신청기간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퍼밋은 학부모의 직장을 통한 지속적인 퍼밋 신청서이다. 다음 학년도를 위한 타교육구에서 본 교육구로(INCOMING) 들어오고자 하는 퍼밋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각 신청서는 개별적으로 심의될 것이다. 본 교육구에서 타교육구로 가고자하는(OUTGOING) 퍼밋 신청서는 전자상으로 작성되어야만 하며; 서류 신청서는 받지 않을 것이다.

본 교육구는 다음의 경우 OUTGOING 타교육구 퍼밋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

- 부모의 직장
- 특별 종합 프로그램
- 10-12학년 고교생이 그 학교에서 계속 재학하기 위해
- 형제자매
- 예외 조항

본 교육구는 다음의 경우 INCOMING 타교육구 퍼밋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

- 차일드케어
- 부모의 직장
- 등록을 지속하기 위해
- 12학년의 경우
- 특별 프로그램
- 형제자매
- 예외 조항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는 (LAUSD 산하의 학교에서 타학교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거주지 학교와 지망학교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한다.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는 로컬 교육구 운영 행정관을 통해 항소할 수 있다.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는 LAUSD 거주지 학교로부터 다른 LAUSD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한다.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 신청서와 절차서는 LAUSD 학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전학은 부모/보호자가 이런 절차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 전학 허가는 다음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발부될 수 있다:

- 차일드케어
- 부모의 직장
-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다니기 위해
- 12학년생
- 안전 및 보호 차원
- 특별 프로그램
- 형제자매
- 예외 조항

교육구 내의 퍼밋은 신청한 학생이 자격이 있고, 주거지 학교와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행정관이 모두 이런 전학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주어진다. 이런 퍼밋은 통학버스 교통편 특권을 주어지지 않는다.

체력 검사

종합 FITNESSGRAM® 테스트는 다음 영역에 대한 학생의 능력을 측정한다:

- 심폐용량
 - 신체 구성
 - 복부 힘과 지구력
 - 상체 강도와 지구력
 - 트렁크 신전근의 강도와 유연성
- 유연성

교사 및 행정관은 체력 검사에 해당되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학습지도와 적절한 연습을 통해 학생들이 체력검사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학교는 해당 학년도 동안, 정기 체육(P.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연습을 제공할 것을 추천한다. 2 월부터 5 월 사이에 체력검사가 실시된다. 부모는 자녀가 정기적으로 신체 운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영양 상태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학부모는 2019 봄 spring FITNESSGRAM® 개별 학생 점수를 학부모 포털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교사 및 행정관은 체력 검사에 해당되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학습지도와 적절한 연습을 통해 학생들이 체력검사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학교는 해당 학년도 동안, 정기 체육(P.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연습을 제공할 것을 추천한다. 2 월부터 5 월 사이에 체력검사가 실시된다. 부모는 자녀가 정기적으로 신체 운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영양 상태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모든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2년동안 체육 수업을 받아야만 한다 (9 학년과 10 학년). FITNESSGRAM®를 “통과”해야만 2년(11 학년과 12 학년)의 고교 체육 수업을 면제받을 수 있다. “통과” 점수는 6 개의 영역들 중 5 개에서 건강 체력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9 학년과 10 학년에서 건강 체력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은 FITNESSGRAM®를 “통과”하거나 또는 졸업할 때까지 체육 수업을 계속해야만 할 것이다.

FITNESSGRAM®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http://www.cde.ca.gov/ta/tq/pf/>.

금전적 배상/학부모 채무

민법 제 1714.01 항은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비행으로 인하여 재산 또는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모든 민사 손해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양육권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보호인의 책임이며 양육권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보호자는 고의적인 비행으로 인해 미화 2 만 5 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미성년자와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8904(a)(1) 항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가 대여한 물품, 비상한 물품, 또는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손상한 물품에 대하여 해당 교육구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배상 책임은 \$19,100 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례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정되며 이는 EC 제 48904(a) (2) 항에 의거한다. 더불어, 학생의 적법 절차 권리를 행사한 후,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학교 물품의 (예: 교과서, 도서실 책, 컴퓨터, 도구, 삼 자료, 체육복 및 운동 기구) 분실 또는 손상을 배상할 때까지, 해당 학생의 성적, 졸업장, 또는 성적 증명서를 보류하는 방침을 관할 학교가 채택하도록 법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금전적 손상을 지불하는 것을 대신하여, 미성년은 자발적으로 일하여 배상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음의 경우 배상을 추구하는 것이 본 교육구의 방침이며, 교육구 또는 학교 직원 소유 부동산, 대여 또는 개인 소지품을 고의적으로 칼로 자르거나, 외관을 손상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분실하거나 반환을 불이행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포함되지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허락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설치, 교육구 소프트웨어 수정, 추가 또는 삭제, 또는 모든 IT 계산 도구 및 부속도구의 배열을 수정하는 경우이다 -예: iPads, 노트북과 기타 도구. 부모/보호자는 1 만 9 천 1 백불을 초과하지 않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매년 인플레이션에 의해 수정된다. 위에 언급한 유형의 손실 또는 피해의 경우, 해당 학교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손실 액수를 식별하기 위해 시도해야 하며 그리고 이는 공문 번호-5509.2, 학교 물품 손실/피해 배상 절차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한다.

이런 통지를 받는 즉시, 부모나 보호자는 그 물건을 되돌려 보내거나 잔여 채무를 지불할 수 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그 물건을 돌려보내지 않거나 잔여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배상부서는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액 청구권을 접수시킬 것이다. 부모나 보호자가 법적 판결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소유주-채무인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 책무 보고서(SCHOOL ACCOUNTABILITY REPORT CARD)

교육법 제 35256 조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학교 책무 보고서(SARC)를 학교별로 매년 발행해야 한다. SARC 는 매 학년도마다 2 월 1 일에 발표된다. 해당 학교는 학교 보고서를 요청받을 경우에 그 사본을 제공하며, LAUSD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Page/8027> 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다.

학교-중심 메디칼 서비스

다음의 메디칼 정보는 메디칼이 자격있는 장애학생의 부모를 위한 것이다.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에 의거하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자녀의 IEP 에 명시된 모든 의무 서비스를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하지만, LAUSD 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연방 정부 메디케어 프로그램(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로 불려짐)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이로서 LAUSD 학생 전체를 위한 건강 관련 서비스 재정적 능력이 높아진다.

장애학생의 특정 서비스 그리고 전체 학생의 특정 건강 서비스가 현재 메디-칼로부터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건강 관련 서비스는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명시된 평가 및 치료(들) 둘다 포함된다: 전문 청력검사, 카운슬링, 양호 서비스, 작업 요법, 물리요법, 언어 교정 및 이런 서비스 관련 교통편. 메디-칼 법규는 병원, 재활 센터 및 기타 시설의 제공자들과 동일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학교-중심 제공자들에게 요구한다.

부모가 특수 교육 평가 플랜이나 IEP 에 동의 서명하는 것은 즉, 메디-칼 유자격 학생의 부모는 LAUSD 가 메디-칼 자금 서비스에 대해 메디칼로부터 상환 청구서 제출을 허락한 것이며, 단지 부모(들)가 *학부모 메디칼 청구 비-위임서(Parent Medi-Cal Non-Authorization to Bill)* 에 서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런 상환 청구서, LAUSD 는 학생 기록, 의료 정보 그리고/또는 학생 관련 기타 정보 공개가 업무 수행 일과의 일부로서 필요할 수 있다. 학교-중심 메디칼 비용 상황은 자녀가 기타 의료 치료 장소에서 메디칼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메디칼 비용 최고 제한액이 없다. LAUSD 는 학생의 IEP 에 명시된 건강 케어 서비스 비용을 가족의 사설 보험에 절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본 교육구는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공립교육을 무상(FAFE)으로 제공해야하는 필수조건과 IDEA 를 엄격히 준수한다. 부모는 LAUSD 메디칼 부서에(213) 241-0558 로 전화하여 *학부모 메디칼 비용 청구 비-위임서*를 요청할 수 있다. 메디칼 비용 청구 비-위임서에 대한 추가 정보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안내서에서도 기재되어 있다 (2014 년 2 월).

아동의 메디칼 자격 기준은 가계의 가족수, 가족의 소득과 장애를 포함한 여러 요소에 근거한다. 메디칼 관련 추가 정보를 원하는 부모는 무료전화 LAUSD 아동 건강 액세스 및 메디칼 프로그램(CHAMP) HELPLINE 에 (866)-742-2273 으로 전화하거나 <http://achieve.lausd.net/CHAMP> 를 검색하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전화가 오픈되어 있다.

LAUSD 메디칼 상환 및 준수 프로그램은 건강 보험 이전성 및 책무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 본 안내서 마지막에 첨부된 사생활 보호 업무 관련 통지서(Notice of Privacy Practices)를 참고하십시오.

학교 경험 설문조사

그는 매년 실시되는 학교 환경 설문 조사를 통해 LAUSD 학교에 대한 이해 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부모, 교사, 노동 조합 및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된 학교 경험 설문 조사는 학부모, 교직원 및 4-12 학년 학생의 각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한 인식을 기록한다. 초중등 교육 센터, 초등 센터, 특수 교육 센터, 옵션 학교 및 부속 차터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초등, 중등 및 고등 학교의 응답자는 학교 경험 설문 조사를 작성한다. 학생과 교직원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완료한다. 학부모는 온라인 또는 종이 / 연필을 통해 조사를 완료 할 수 있다. 학교 경험 설문 조사 결과는 매년 봄에 보고되어 학교는 다음 학년도를 계획할 수 있다. 개별 학교 데이터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형 대쉬보드를 통해 제공됩니다: <https://achieve.lausd.net/Page/13559>

거주지 학교

6 세부터 18 세 사이의 사람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풀타임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며, 부모나 보호자의 주거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그리고, 해당 학생에 대한 권위나 책임을 지닌 각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인은 해당 학생을 공립 풀타임 학교, 컨티뉴에이션 학교 또는 학교 시간과 동일한 풀타임으로 된 클래스에 보내며, 그 학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거주지 소재 학교로 한다 (교육법 제 48200 항). 가정의 이혼, 법적 별거, 함께 살지 않는 미혼 부모의 자녀의 경우, 해당 학생은 양쪽 부모의 거주지 중 한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중 등록은 엄격히 금지되며, 기록상 거주지는 한 곳으로만 할 수 있다[정부 법규 제 244(b)]. 학교는 거주지를 검증할 의무가 있다. 부모/보호자가 등록 당시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거주지 증명 진술서가 사용될 것이다. 해당 부모/보호자는 등록 당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거주지가 없는 홀리스 학생은 원래 거주하는 구역의 학교에도 다닐 수 있고 또는 무숙자가 되었을 때 다녔던 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 특정 상황인 경우, 거주지 학교 이외의 타학교로 전학/타교육구 학교 전학이 허락될 수 있다. 부모는 등록 허가 부서 및 학생 전학부에 (213) 241-5255 로 연락하도록 한다.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비장애인이자 다녔을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만 다만 장애 학생의 IEP 에 기타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은 다음 조건 하에 교육구 학교에 다닐 수 있다:

- 정규 공인 아동 기관 또는 공인 포스터 홈, 복지 및 기관법 하에 패밀리 홈에 배치된 학생.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 또는 양육인들은 배정된 학교에 증빙 서류를 제공한다(DCFS 에 의해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양육되는 학생 또는 보호 감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동반자 업슨 무숙자 청소년
- 타교육구 재학이 승인된 학생
- 교육구 구역 내에 거주지가 위치한 친권이 없는 독립 아동
- 교육구 구역 내에 위치한 주립 병원에 거주하는 학생
- 양육하는 성인과 함께 살고 있는 학생 (학교 또는 교육구 직원에 의한 검증 대상).

집 주소에 해당되는 학교를 찾기 원한다면, www.lausd.net을 검색하여 Find a School로 연결하여 거주지 학교 식별(Resident School Identifier)를 클릭하거나 또는 (213) 241-1000로 전화하십시오

학교 일정 스케줄

교육법 제 48980 (c) 항에 의하면, 단축수업일과 교직원 전문성 개발 휴교일 통지서를 재학생 부모 및 보호자에게 보낸다. 만약 단축수업일과 교직원 개발 휴교일이 차후에 정해진 경우, 운영위는 가급적 신속히 해당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지만 정해진 단축수업일이나 학생 수업 없는 휴교일(pupil-free day)로부터 적어도 한달 전에 통지한다.

성희롱 관련 정책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LAUSD) 성희롱이 없는 작업 및 학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교육구는 실질적 또는 인지된 성, 성적 성향,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을 근거로 교육구의 고용인, 학생 또는 교육구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는 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희롱을 금한다. 이런 방침을 불이행하는 것은 주법 및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달감지 않은 성적 접근,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 기타 언어적, 시각적 성적 내용, 또는 성적 내용이 담긴 육체적인 행위가 직업 또는 교육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런 장소에서 다음의 조건에서 행해질 경우를 성희롱이라고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12.5 항이 정의하고 있다:

- 해당 행위에 대한 복종은 개인의 취업, 학업 상황이나 진전도의 조건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
- 행위에 대한 복종이나 거절, 한 개인의 행동이 해당 개인의 취업 또는 학업 결정 근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사용되었다.
- 해당 행위가 개인의 근무 내용, 또는 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을 지니고 있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 또는 공격적 작업 또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 해당 개인의 행위에 대한 복종이나 거절, 또는 한 개인의 행동이 해당 개인의 혜택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또는 교육 기관에서 또는 교육 기관을 통한 포상상,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보호된 영역(위에 언급된 상황들)의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을 근거로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를 목격하는 즉시, 학교 직원은 중재가 안전할 경우 이를 즉시 조치해야만 한다. 이런 행위를 행정관 또는 타이틀 IX/왕따 고소 매니저에게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중재가 될 수 있다. 학교 또는 해당 부서가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를 통지받는 즉시, 그리고 이런 행위가 교직원, 학생 또는 제 3자에 의해 행해진 것에 상관없이, 즉각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조사하거나 발생한 상황을 결정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그 행위를 종료시키고 공격적인 환경을 제거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한다. 이런 조치들은 불평 제기가 없다고 하여도 그리고 학교나 부서에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없어도 취해져야 한다. 본 방침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육감 관할권 소속의 모든 학교 또는 부서 내에서 행해지는 학교 활동 또는 학교 출석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성희롱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교육구 학생 또는 고용인은 학교-현장 행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타이틀 IX/왕따 고소 매니저에게 문제건을 알려서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본 교육구는 성희롱 고소장 접수를 한 사람 또는 고소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복 행위를 금한다. 고소 내용은 즉각 조사되며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은 보호된다.

추가 정보나 학생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보호자의 염려 사항이 있다면, 학교 행정관, 학교 타이틀 IX /왕따 고소 매니저, 또는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의 교육구 타이틀 IX 코오디네이터에게 (213) 241-7682 로 연락하거나 <http://achieve.lausd.net/eeco> 를 검색하도록 한다. 교육구 직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균등 기회 부서 (213) 241-7685 로 연락하십시오.

특수 교육: 고소안 대응 부서(COMPLIANT RESPONSE UNIT-CRU)

고소장 대응 부서(CRU)의 목적은 학부모가 외부 고소장 및 적법 절차 절차에 의지하지 않고도 학부모 고소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소건"은 (1) 장애인 교육법 (IDEA) 및 규정 시행에 대한 인식된 위반의 주장을 의미한다. (2) 특수 교육 및 시행 규정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교육법; 또는 (3) 교육구의 특수 교육 방침 및 절차 안내서서 (준수 지침). 일단 불만이 접수되어 조사되면 "합법적 인 대응"이 제공된다. 합법적인 대응은 학부모에게 교육구의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서면 답변이 제공되며 다음 중 하나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구제 조치 및 적절한 경우 구제 조치가 시행되는 날짜. (2) 적절한 소개가 이루어진 정보; (3) 신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제안; 또는 (4) 고소건을 조사하여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정보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소안 대응 부서 학부모에게 (800) 933-8133으로 연락하거나 특수교육 부서, 학교 및 패밀리 지원 서비스에 (213) 241-6701로 연락하십시오.

학생 사고 보험

학교 대항 운동경기 참여 학생은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2220-32224 항에 의거하여 의료 또는 사고 의료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 건강 보험 하에 참고된 건강 보험 플랜은 부모들이 주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운동, 사고 및 질병을 커버하는 공공 및 사설 보험 관련 정보를 원한다면, 위험 관리 부와 보험 서비스 부에 (213) 241-2176 으로 연락하십시오. 사설 보험 정보도 위험 관리 부서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Page/4141> 에서 찾을 수 있다.

무료 및 저-비용 건강 보험 정보는 LAUSD 아동 헬스 액세스 또는 *매디-칼*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Access and Medi-Cal Program-CHAMP)에 무료전화 HELPLINE 에 (866) 742-2273 로 전화하거나 그리고/또는 <http://achieve.lausd.net/CHAMP> 웹사이트를 검색하십시오. *매디-칼* 연장 및 구입 가능 의료법 (ACA 또는 오바마케어)하의 CHAMP 를 통해서도 부모, 성인 및 일반 주민의 건강 보험 등록을 도와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전화가 오픈되어 있다.

학생 출석 옵션

캘리포니아 법 [교육법 48980 (h)]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교육구는 교육구가 배정한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서도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정보를 새학년초에 각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지리적 위치, 학과목 제공, 과외 활동 등을 기반으로 학교를 검색하려면 교육구 웹 사이트 <https://goto.lausd.net> 를 방문하십시오. 이 웹 사이트에서는 매그넷 학교, 이중 언어, 스쿨 포 어드밴스트 및 교통편 제공 퍼밋과 같은 교육구의 선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선택 프로그램은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액세스하고 완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종이 신청서는 관할 학교, 도서관 또는 로컬 교육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학부모 지원 전화 (877) 462-4798 로 연락하십시오.

학생 건강 보험

LAUSD 의 아동 헬스 액세스 및 메디-칼 프로그램은 (CHAMP) 메디-칼 및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같은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보험을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등록시킬 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부모는 CHAMP HELPLINE 에 무료 전화 (866) 742-2273 로 전화하여 등록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CHAMP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wellnessprograms#spn-content> 를 검색하도록 한다. 학교는 CHAMP 사무실에 연락하여 직원 또는 학부모 대변인과의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이 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오픈되어 있다.

학생/학교 품행 규정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5 의 제 300 조에 의하면, 학생은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모든 지시를 복종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교사와 권위 있는 타인에게 예의바르게 대하고, 음용하거나 상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프리스쿨부터 성인학생들까지 모든 학생들은 안전, 존중, 우호적인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교육자들은 교육에 방해와 장애가 없는 분위기에서 교육시킬 권리가 있다. 교육구 훈육 기초 방침: 학교-차원의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에는 행정적 리더십, 팀-중심 실행, 행동 기대치의 정의, 교육, 모니터, 강화, 정정 그리고 데이터 중심 결정권이 설정되어 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우호적인 학교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품행 원칙

- 존중
- 책임감
- 다양성 이해
- 정직
- 안전
- 평생 학습자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서, 학생은 다음을 행해야 한다:

- 학교 및 학급 규율을 배우고 준수한다.
- 갈등을 신체적, 언어적 폭력 없이 성숙한 태도로 해결.
- 낙서, 무기 및 약물이 없는 안전하고 정결한 교정을 유
-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
- 왕따, 괴롭힘, 혐오 사건을 신고한다.
- 경기장이나 운동장에서는 양호한 스포츠맨십을 보인다
- 교과서/학습자료를 가지고 배울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정시에 학교에 출석한다.
- 안전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학생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한다. 학생의 아이디어, 생각 및 의견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학교의 기상은 다음을 의미한다 :

- 타인 존중
- 평화적인 해결책
- 타인의 말 경청
- 약물 사용하지 않음
- 청결하고 아름다운 교정 유지
- 건전한 친구관계
- 자신 직접한 공부
- 정직함과 인격 수양터
- 공감과 배려심
- 타인의 권리 옹호
- 다양성 이해
- 타인의 재산을 존중
- 안전한 활동에 참여

학생 수색

미합중국 헌법 제 4 수정안은 불법 수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하지만, 법은 제한된 특정 상황 하에 학교 직원이 학생을 수색하는 것을 허용한다.

1. 합당한 의심에 근거한 수색
범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질러려고 하거나, 제정법 또는 학교 규율을 위반했다는 *합당한 의심*을 행정관에게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학생이 개입한 경우, 해당 행정관은 학생을 수색할 수 있다. 해당 행정관은 다음을 해야 한다:

- 의심의 이유 그리고 사실 그리고/또는 특정 사건의 간접 정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학생과 특정 사건, 범죄 또는 규율 또는 제정법 위반 행위를 합당하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사적인 지식 그리고/또는 기타 증인들로부터 최근의 신빙성 있는 정보에 근거한다.
 - 합당한 의심에 근거한 수색이 학생의 연령, 성별, 범법 행위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합당한 의심에 근거한 학생 수색을 집행할 때, 학교 직원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심 사유가 있고, 학생과 특정 비행 사건과 연결시키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수색을 행한다.
 - 해당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자켓, 지갑, 주머니, 백팩, 가방 및 용이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색할 수 있다
 -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체, 나체 수색은 행해질 수 없다.
 - 동일한 성별의 학교 직원만이 수색을 행할 수 있다.
 - 합당한 의심에 근거한 수색은 기타 학생이나 교직원이 볼 수 없는 사적 공간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성별의 학교 행정관 또는 지정된 증인은 예외이다).
3. 무작위 금속 탐지기 수색 및 여러 학교 지역 수색:
캘리포니아 법정 및 캘리포니아 경찰청은 무작위 무기 탐지기 사용을 승인했다. 금속 탐지기의 무작위 사용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수색 대상의 학생 선정 방식이 진실로 무작위이다.
 - 무작위 금속 탐지기 수색에 선정된 학생은 인종, 성별, 성명, 그룹 결연관계, 또는 과거의 비행 행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식별될만한 특징을 고려치 않고 선정되었다(예: 수색 대상을 선정할 때 무작위로 한다)
 - 수색은 침범 범위를 최소화하여 해야 한다.
 - 락커에 숨긴 총기 수색도 실시된다
 - 자녀가 수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학부모-학생 안내서에 고지를 했지만, 학교는 반드시 학년도 초기에 이를 서면 통지서를 통해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더불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등록된 학생들에게도 이런 통신문이 제공된다.

금속 탐지기 수색의 결과, 만약 특정 학생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합당한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발생한다면 학교 직원은 사적 공간에서 학생을 수색할 수 있으며, 이를 합당한 의심 수색에 대한 위의 지침사항에 따라 집행한다.

거주지가 없는 홈리스 학생

McKinney-Vento 무숙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법에 의하여,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무숙자 아동들은 비-무숙자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및 적절한 공립교육을 똑같이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홈리스 학생은 저녁시간에 거주할만한 고정된, 정기적인 충분한 주거지가 결핍된 개인으로 정의되며 그리고 다음이 해당될 수 있다한다:

- 비상 또는 임시 보호처에 살고 있는 경우
- 폐기된 건물, 주차 차량, 차고 또는 인간이 정기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숙소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 살고 있는 경우
- 재정 문제로 인해 주거지가 없어져서, 다른 패밀리와 함께 얹혀서 살고 있는 경우 (예: 실직, 퇴거 또는 자연 재난)
- 호텔이나 모텔에서 살고 있다;
- 자신의 가족과 트레일 팍이나 캠핑장에서 주거;
- 병원에 버려졌다;
- 학교 다닐 연령으로, 미혼모나 임산부를 위한 숙소에서 살면서, 기타 다른 숙소가 가능치 않는 경우; 또는
- 이주민 아동, 버려진 아동, 집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쫓겨난 청소년들은 위에 명시된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숙자에 해당될 수 있다.

학생은 학생 주거지 질문서를 (SRQ) 통해 식별되며, 이는 모든 등록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되며 그리고 매년 모든 학생들에게 이머전시 카드와 함께 배포되어야 한다. 각 가정은 학생 주거지 질문서에 스스로 현재의 주거지 상황을 식별한다. 각 학교는 반드시 담당 학교 현장 홈리스 연락인이 있어서 SRQ를 학생 서비스 홈리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는 해당 학년도 동안 언제라도 해당 학교 또는 학생 서비스 무숙자 교육 프로그램에 자진하여 학생 주거지 질문서로 식별받거나 학생 서비스 홈리스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연락하여 식별받을 수 있다.

무숙자 학생은 기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출석할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그러나 이에 더불어 다음의 선택할 권리도 있다;

- 홈리스가 되었을 당시 학생이 다니고 있던 학교 (예: 원래 다녔던 학교)
- 해당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
- 거주지 학교
- 지난 15 개월동안 학생과 관련되어 재학했던 학교들 중 하나
- 원래 다녔던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교로 피더 패턴으로 설정된 학교

교육구는 적절한 경우, 교통편을 제공하며, 이는 부모/보호자/동반자 없는 홈리스 학생이 원래 학교로부터 왕복 교통편을 요청하여 가능한 경우에 제공된다.

법규에 의하면, 무숙자 학생을 즉시 등록시켜야 한다. 학교 기록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 등록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 이전에 다녔던 학교로부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요청하고 부모와 동반자 없는 청소년 학생에게 모든 유자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의뢰해 주어야 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다. 의뢰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무료 급식, 특수 교육 서비스, 튜터링, 프리 스쿨, 방과전, 방과후 서비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비스들.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

더불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실효되는 교육법 제 51225.1 항에 의거하여, 고교 2년을 마친 후 타학교로 전학한 무숙자 학생들은 특정 고교 졸업 조건을 면제받는다. 유자격 학생은 학과목 및 기타 필수조건 면제에 대한 자격 여부를 통지받으며, 필수조건들은 주차원의 학과목 필수조건에 추가된 교육구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것들이 포함된다. 더불어 본 법안은 무숙자 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닐 때 이수한 정식 학점 또는 부분 학점을 학과목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조항까지 연장 적용된다. 본 법안에 의거하여, 교육구 무숙자 담당인은 퇴학 권고가 있을 때 이를 통지받아야 하며 그리고 퇴학 결정이 정해질 모든 IEP에 초대되어야 한다.

학교 선택이나 등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는 반드시 등록을 원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즉시 등록시켜야만 하며 이는 분쟁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적용된다. 학부모/보호자/동반자 없는 학생은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SHHS 학생 서비스 무속자 교육 프로그램에 (213) 202-7581 로 연락하십시오.

학생 소지품

개인 소지품은(휴대폰, 손을 잡는 도구, 테블릿, 카메라, 전자게임, 라디오, CD 플레이어, 노트북 등) 손실, 절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더불어 이런 것들은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교직원 이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교육구는 이런 물품의 손실이나 절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락커에 둔 경우도 포함).

장애 학생 및 특수 교육

아동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공부한다. 장애 학생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장애 학생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에 의해 결정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팀은 학생의 부모(들)도 동등한 파트너로 포함된다. 특수 교육 서비스는 특수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고안되었고 부모의 재정적 부담은 없다. 일반 교육, 지원, 편의조치를 받으면서 정규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도 있다. 최대 적절한 범위에서, 장애 학생은 반드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자신이 장애인 이 아니었다면 다녔을 일반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IEP 팀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교육 환경은 비장애 학생들과 최대한의 통합 기회가 주어지도록 모든 해당되는 보충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시하는 일반 교육 학급이다. 학생의 장애의 성격 또는 심각성으로 인해 보충 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일반 학급에서 만족할 정도의 학습 환경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그 학생을 일반 교육 학급으로부터 탈퇴시킬 수 있다.

취학-연령의 자녀가 장애 가능성의 의심이 있고 그리고 특수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부모는 인근 공립학교 행정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비-등록 프리스쿨-연령 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장애 가능성이 의심되고 그리고 특수 교육 서비스 자격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기 유아 특수 교육부서에 (213) 241-4713 으로 연락한다.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교육구 발행물 즉,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안내서(절차상의 권리 및 안전 조치 포함)*에 제공되어 있고, 교육구 학교 및 특수 교육 부서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sped> 에서도 제공된다. 특수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학교 행정관이나 특수 교육 부서에 (213) 241-6701 로 연락하도록 한다.

1973년 재활법 제 504 조 하의 장애 학생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제 504 조) 제 504 조는 연방 민권법이며, 미 문교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를 근거로 저질러지는 모든 유형의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구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관련 고소건을 즉시 조사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본 교육구는 제 504 조는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FAFE)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규에 대한 특정 책임이 있다. 장애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비장애 학생의 교육적 필요만큼 충족시키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은 없지만, 제 504 조 하의 연방정부의 장애인 정의를 충족시키는 학생들을 위해, 제 504 조 계획안(Section 504 Plan)은 편의조치, 보충 지원 그리고/또는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된다. 제 504 조에 의하면, 장애 학생들에게 반드시 비학업적 및 과외 활동을 제공하여 그들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검사, 장애 판별, 그리고/또는 학교 및 학급 배정에 대한 결정내용 그리고 제 504 조하에 명시된 결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향소 권리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섹션 504 에 대한 정보 그리고/또는 향소서나 고소장(균일 고소 절차를 참고하십시오)을 접수시키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섹션 504 관련 비공식 중재나 중립 청문회를 원한다면, 형평성 준수 부서의 교육구 섹션 504 코오디네이터 (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에게 (213) 241-7682 로 연락하거나 <http://achieve.lausd.net/eeco> 를 검색하십시오.

임시 장애 학생

주법에 의거하여, 비전염성, 임시 의료 장애로 인해, 일반교육 또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잠정 기간동안 출석할 수 없는 유자격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 K-12 학년생은 학생의 집 또는 병원에서 학습 지도를 제공받는다. 잠정적인 장애 기간동안에도 학생의 학습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의도이다. 홈/호스피탈 교사는 가능한 최대의 범위 내에, 학생의 학교 프로그램과 상호관련된 과목/학과정 수업을 온라인 또는 직접 제공한다. 홈/호스피탈 학습지도는 잠정적인 서비스이다. 장기기간 동안의, 정규 필수 교육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는다. 홈/호스피탈 수업은(1) 학생의 참여 능력에 근거하여 시작해도 좋다는 주치의 허락이 있을 때 시작되며 그리고 (2) 교육 의무를 잠정적으로 이전한다는 부모의 허락을 받는 즉시 시작될 것이다. 잠정 기간동안의 홈/호스피탈 학습지도는 현재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학생 또는 섹션 504 학생들에게도 제공된다-특정 상황에서만 해당됨.

의심스러운 아동학대 및 방치 신고

보고 요구 사항

아동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고의적인 행위이다. 아동 학대의 예로는 신체적 학대, 미성년자의 상업적 성 착취, 고의적인 잔혹 행위 및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는 성적 학대가 포함될 수 있다. 아동의 방치는 아동의 복지에 책임이있는 개인에 의한 아동의 치료 방치 또는 학대이며, 의도적으로 식품, 의류 또는 의료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위 또는 방치로 인한 손해를 포함할 수 있다. 아동 학대 또는 방치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있는 교육구 직원은 법에 따라 적절한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 (CPA)에 의심스러운 아동 학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관할 경찰 또는 셰리프 부서, 또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에 36 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CPA 에게 전화로 즉시 또는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법에 의해 LAUSD 학교 경찰국 (LASPD)은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LASPD 담당관은 아동 학대 신고의 수령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의심되는 아동 학대 신고는 그러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직원의 신원에 대해 기밀이 유지된다.

정학 및 퇴학

교육법 제 48925 (d)조가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정학은 조정할 목적으로 학생을 진행중인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학생은 연속적으로 5 일을 초과한 정학처분을 받을 수 없다. 교육법 제 48925 (b)조에 정의에 의하면, 퇴학은 (1) 즉각적인 감독 및 규제로부터 또는 (2) 학교 직원의 일반 감독으로부터 학생을 제거....“하는 것이다. LAUSD 소속, 학생 징계 및 퇴학 절차부는 퇴학 권고를 받은 학생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청문회와 모든 적법 절차 권리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집행 유예없는 퇴학처분(“즉각 퇴학”)을 받은 경우, 퇴학 기간동안 LAUSD 학교나 프로그램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퇴학 집행 유예를 받은 학생은, 교육법 제 48917 조에 의거하여, 퇴학 기간 동안 LAUSD의 교육적 대안 프로그램에 배정될 수 있다. 퇴학 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학기의 잔여 기간; 해당 잔여 학기와 그 다음 학기; 또는 일 년 학년도 기간, 위반 내용 그리고/또는 해당 학생의 사회 적응 배경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A. 정학 또는 퇴학 조치 관할범위는 학교 행사나 이런 활동에 출석하여 그 시간동안 언제라도 발생한 비행 문제까지 연장된다.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학교 부지에 있는 동안.
- 등하교 시.
- 교정 안팎에 관계없이, 점심 시간.
-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 동안, 또는 행사에 가는 동안, 행사로부터 돌아오는 동안.
- 통학버스를 승차하고 있는 동안.

학급 교사는 교육법 제 48900 에 명시된 문제 행동을 취한 학생에게 그 학급으로부터 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단지 교육법 제 48900 (k)항에 명시된 의도적 반항 비행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런 내용은 교육위 결의안: 학교 훈육 방침 및 학교 문화 권리장전에 설명되어 있다. (C 항 이하에 기재된 정학/퇴학 근거를 참고하십시오). 학생에게 수업 정학 조치를 내린 경우, 해당 교사는 이 정학 조치를 즉시 교장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내리도록 한다. 그런 다음, 교장은 학생을 학교 정학처분을 내릴 것인지 또는 학생을 해당 수업 정지 처분 시간동안 교정에 남아있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교장 또는 교장 대리인만이 학교 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업 정지처분 기간은 학생이 처음 수업 정지를 받은 당일 수업 나머지 시간(또는 해당 수업 시간) 그리고 다음 날(또는 다음 날 해당 수업시간)보다 더 길 수 없다. 수업 정지처분을 받은 학생은 적절한 감독 하에 교정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런 수업 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교사는 되도록 신속히, 부모가 동석한 컨퍼런스 실시하며 이에 학교 행정관, 학교 카운슬러 또는 학교 심리학자들도 참석할 수 있다. 학생이 상스러운 행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인 욕, 험한 언어 사용을 한 경우, 해당 교사는 부모/보호자에게 자녀의 수업 시간의 일부를 참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품행 교정의 여러 수단 (교육법 제 48900.5 항)

정학처분, 감독 하의 정학처분(예를 들면: 학교 내의 정학처분과 교실 정학처분)을 포함하여,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타 교정 방법이 실패한 경우 그리고/또는 안전이 위험한 경우에만 정학처분이 취해진다. 교육법 제 49069 항에 의거하여, 취해진 품행 교정의 여러 수단을 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학생 훈육 서류로 보관하여 필요할 경우 볼 수 있도록 한다.

C. 정학/퇴학의 근거 (교육법 제 48900 항 및 부조항)

- (a)(1) 타인에게 상해를 초래했거나, 시도하였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위협하였다
- (a)(2) 타인의 신체에 완력 또는 폭력을 의도적으로 가했거나, 정당 방어는 예외이다.
- (b) 화기,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다만 자격증 소지 직원이 해당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장 또는 담당인이 이를 동의한다는 허가서를 취득하여, 이런 물건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이다.
- (c) 보건 및 안전법 제 10 장 2 항(제 11053 조부터 시작)에 열거된 규제 약물, 알콜성 음료 또는 유독성 물질을 불법적으로 소지, 사용, 제공하거나 영향하에 있는 경우.
- (d) 보건 및 안전법 제 10 장 2 항(제 11053 조부터 시작하여)에 열거된 규제 물질, 알콜성 음료, 또는 유독성 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의, 주선, 또는 협상하는 경우 그리고, 리커, 물질 또는 재료를 타인에게 판매, 보급, 또는 제공한 경우 그리고, 리커, 물질 또는 재료를 규제 물질, 알콜성 음료, 또는 유독성 물질로 제시한 경우.
- (e) 강도죄, 공갈죄를 저질렀거나 시도한 경우.
- (f) 학교 재산 또는 개인 재산에 피해를 초래했거나 시도한 경우.
- (g) 학교재산이나 개인재산을 훔쳤거나 시도한 경우.
- (h) 담배, 또는 담배나 니코틴이 함유된 물품을 소지하였거나 판매한 경우이며 다음의 물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담배, 시가, 축소형 시가, 클로브 담배, 무연 담배, 코담배, 씹는 담배, 베텔 담배가 해당된다. 그러나 학생 본인에게 처방된 물품을 학생이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 (i) 음흉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상스러운 언동이나 욕설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j) 보건 및 안전법 제 11014.5 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약물 장치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제의, 주선 또는 협상하는 경우.
- (k)(1) 학교 (-전체) 행사 방해 행위 (행정관에 의한 정학에 한함; 퇴학 적용 안됨) (4-12 학년)
 - (l) 학교 재산이나 개인 재산이 장물인줄 알면서 이를 수취한 경우.
 - (m) 모조 총기를 소지한 경우
 - (n) 성폭행 또는 성 구타죄를 저질렀거나 시도한 경우.
 - (o) 고소 당사자로서 증인, 증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생이 증언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이거나 증언하는 학생에게 보복 행위를 할 목적이거나, 두 개 목적을 위해서 해당 학생을 괴롭히거나, 협박이나 위협하는 경우.
 - (p) 처방약 소마(Soma)를 불법적으로 제의, 판매 주선, 판매 협상 또는 판매한 경우.
 - (q) 제 32050 항에 명시된 신고식 유형의 괴롭히는 행위에 개입했거나 개입을 시도한 경우.

- (r) 왕따 행위에 개입하는 경우로 이에는 학생 또는 학생 집단을 특정 대상하여 전자 행위 방법으로 저지르는 왕따 행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s) 타인에게 신체적인 부상을 입히거나 시도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정학에만 해당됨)

48900.2 성희롱을 저지르는 경우 (4-12 학년).

48900.3 혐오 폭력을 저질렀거나, 시도했거나, 저지를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이런 행위에 참여한 경우 (4-12 학년).

48900.4 교육구 직원 또는 학생을 상대로 괴롭힘, 협박 또는 위협 행위를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4-12 학년).

48900.7 교직원이나 학교재산 또는 교직원과 학교 재산을 함께 목표로 정한 테러 협박하는 행위

정학 처분 전에 교장 / 담당인은 학생과의 비공식 회의를 가질 것이며 징계 조치의 이유를 학생에게 알릴 것이며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정학 이전에 시도 된 다른 교정 방법과 그 / 그녀의 견해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교육법 §48911). 학교가 학생 또는 학교 직원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에 명백하고 현재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정의되는 비상 사태가 있다고 결정하면 비공식 회의는 필요 없다.

D. 퇴학 권고 상황들 (교육법 제 48915 항)

교장 또는 교육구 교육감은 학교 활동 또는 학교 교정이 아닌 장소에서의 학교 활동에서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 퇴학을 권고하며, 단지 교장이나 교육감이 특정 상황 하에 또는 품행 교정에 대한 대안 방책이 있어서 퇴학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a) 정당방위를 제외한, 타인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혔다.
- (b) 모든 종류의 칼 또는 합리적으로 학생이 소지할 이유가 없는 위험 물건을 소지한 경우.
- (c) 다음의 제외한, 규제 약물을 불법 소지한 경우:
 - i. 농축 대마초를 아닌 마리화나 1 상형 온스를 소지한 첫 위반 행위
 - ii. 학생의 의료 목적으로 이용한 일반 약 또는 의사가 학생에게 처방해 준 약을 소지한 경우
- (d) 강도 또는 공갈 행위
- (e)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 또는 구타 행위

교장 또는 교육구 교육감은 학교 활동 또는 학교 교정이 아닌 장소에서의 학교 활동에서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 즉각적인 정학 및 퇴학 권고를 취한다:

- (a) 총기 소지, 매매, 또는 공급.
- (b) 타인에게 칼을 휘둘린 경우.
- (c) 규제 약물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d)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미수 또는 성구타를 저지른 경우
- (e) 폭발물 소지

교장 또는 학교의 교육감은 나머지 근거로 퇴학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법 제 48900 항에 명시되어 있음)

E. 장애 학생의 행동 중재

학습에 방해가 되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장애 학생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절차를 통해 행동 지원 플랜이(BSP) 요구되며 그리고 개별 교육 프로그램의 시한 내에 이를 실행되어야 한다.

장애 학생의 교육은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통해 이런 학생의 학업 및 행동 필요를 접근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장애 학생은 적정시에 긍정적인 지원과 중재 그리고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연방 장애인법(IDEA) (20 U.S.C. 조 1400 부조항)에 의거한다. 행동 중재, 지원 및 기타 전략이 적용될 때, 학생의 신체적 자유 및 대인 관계를 반드시 고려하면서 적용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학생의 최저 제한적 교육 환경에 배정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평가를 토대로 학생의 필요를 결정하고, 의미있는 목표를 설정하며 그리고 적절한 학습지도 및 행동 지원 및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의 책임이다.

F. 장애 학생의 정학, 기회 전학 및 퇴학

법에 의거하여, 장애 학생들에게는 추가 절차와 심사숙고가 필수적으로 주어진다:

정학:

특수교육: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을 경우, 교직원은 행동 지원 플랜(BSP)을 작성하기 위해 IEP 회의가 필요한지, 또는 문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표적 행동 학습지도 및 중재를 조직하기 위해 기존의 행동 지원 플랜(BSP)을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정학 처분의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 행동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 학급지도 그리고/또는 행동 지원의 필요 여부 그리고 현재 배정 및 서비스가 적절한 지를 검토하기 위해 IEP 팀 회의가 요구될 수 있다. 한 학년도 동안 10 일 이상의 정학은 내려질 수 없다. 두 차례의 정학처분 또는 총 정학 누적일수가 5, 8, 10 일인 경우, IEP 회의는 반드시 소집되어 적절한 서비스/배정을 결정해야 한다.

섹션 504 조: 섹션 504 조 플랜이 있는 학생은 일반 교육 학생으로 간주되며, 일반 교육 학생들과 동일한 정학 일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하지만 10 일의 정학처분에서, 섹션 504 확정성 결정 회의에서 분석하여, 현재의 섹션 504 플랜이 적합하지 검토하고 수정하며, 이에는 적합한 편의조치를 업데이트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보장된다.

퇴학:

특수교육: 특수 교육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고려하는 경우, IEP 팀은 명백한 결정 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예비-퇴학(pre-expulsion) IEP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장애 학생이 퇴학 당한 경우, 퇴학 기간동안 IEP 에 명시된 특수 서비스를 계속받을 권리가 있다. 퇴학 처분받은 학생은 퇴학 기간동안 퇴학 후 서비스(post-expulsion service)를 받을 권리가 있다(퇴학으로부터의 재활 및 복원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학생의 IEP 에서 정한바와 같이 가장 적절한 교육 장소에 배정된다

섹션 504 조 하에 해당되는 학생의 퇴학은 징계성 배정 변경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그 학교의 섹션 504 팀이 확정적인 결정 회의를 실시하여 징계 대상이 된 행위가 원천적으로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또는 해당되는 경우, 교육구가 섹션 504 플랜 실행을 불이행한 결과로 이런 행위가 나타난 것이 아닐 경우에만 퇴학권이 발부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안내서(절차상 권리 및 안전조치 포함)를 참고하십시오.

징계처분에 대한 항소

징계처분과 기회 전학에 대한 반대 또는 이의제기는 로컬 교육구에 직접할 수 있다. 퇴학 권고를 받은 학생은 퇴학 청문회에 대한 권리가 있다. 청문회 후, 퇴학 권고는 교육위원회에 상정되고,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의 부모/보호자, 변호사는 교육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발언할 수 있다. 퇴학 항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부에 접수시킬 수 있다.

퇴학 후 재활 및 복원

교육법 제 48916 항과 48916.1 항 그리고 하원의원 법안 922 에 의거하여, LAUSD 는 AB 922 학생 훈육 및 퇴학 지원 (Student Discipline and Expulsion Support Services Unit-SDES) 부서를 결성하여, AB 922 의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학생의 재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주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며, 퇴학생의 교육적 서비스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퇴학생에게 적절하고 적정 시한 내에 교육적 배정을 지원한다
- AB 922 를 실시하여 학생/학부모 사전 평가와 재활 플랜을 작성한다
- 학생의 대인관계, 행동 및 학업 진전도를 모니터한다
- 직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교육구 직원 및 커뮤니티 기관 직원들과 함께 자문, 공조하고 서비스를 조정한다
- 학업 성취도, 출결석, 사회 적응면에서 자격 기준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원 심의 위원회를 실시한다
- 위임 대리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를 대신하여 복원을 추천하고 그리고 복원 후 학생을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한다.
- 복원이 추천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이틀 IX 및 학생

연방법, 타이틀 IX, 주법 및 교육구 방침은 실질적 또는 인지된 성, 성적 성향, 남녀 성별(성 정체성, 성별 표현, 결혼 여부, 자녀 양육, 임신, 자녀 분만, 허위 임신, 임신 중단 또는 관련 의료 상태가 포함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학생에게 참여에서 제외시키거나, 혜택을 부인할 수 없으며,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에 대한 권리를 지니며, 다음을 포함한 모든 교육구 활동과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운동
- 체육 교육
- 수강하는 클래스
-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대우받는 방법
- 상담의 종류
- 참여할 수 있는 과외활동, 프로그램 및 클럽
- 참여할 수 있는 영예상, 특별상, 장학금 및 졸업 행사

임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들은, 결혼 신분과 상관없이, 교육구 또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그리고 차별이나 괴롭힘 없는 환경에서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교육구는 임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들에게 합당한 편의조치를 제공하며, 이에 학생이 수유할 때 필요한 편의조치가 포함되며 그리하여 학생의 성별/남녀를 근거로 참여에 제외시키지 못하며, 혜택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는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학교 행정관, 타이틀 IX/왕따 고소 매니저, 심리학자, 카운슬러나 학교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상황을 정정하려고 시도하거나 고소장(균일 고소 절차를 참고하십시오)을 접수시킬 권리가 있다. 가급적, 학생은 학교 자체에서 고소건을 해결해도록 한다. 타이틀 IX 항에 저촉되는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고소장을 접수시킬 권리가 있다.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 행정관, 학교 타이틀 IX 왕따 고소 매니저 또는 교육적 평등성 준수부서(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의 교육구 타이틀 IX 코오디네이터에게 (213) 241-7682 로 연락하거나 333 S. Beaudry Avenue, 20th floor Los Angeles, California 90017 로 서신으로 연락한다. 타이틀 IX 관련 추가 정보는 <http://achieve.lausd.net/eeco> 에서 알아볼 수 있다.

교통편-통학 버스

통학버스는 공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자격 학생에게만 제공된다. 귀하의 자녀 통학버스 스케줄 공식 통지서(Official Notification of your Child's Transportation Schedule-"mailer")는 개학하기 전에 우송되고, 버스 노선, 통학버스 규율, 연락처, 기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을 유념하십시오.

- 부모는 자녀와 함께 통학버스 규율을 잘 살펴본다.
- 부모와 자녀는 개학일 전 버스 승차지를 직접 가보고, 자녀가 이곳을 가장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알아보아야 한다.
- 학생은 통학버스 승차 시간 보다 5 전까지 도착하여 바로 승차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자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데려다 주고 픽업할 때 부모나 지정된 성인은 매일 버스 정차 장소에 있도록 한다.
- 부모와 학생은 통학버스 노선 번호와 학교명을 알고 있어야 하고, 버스가 15 분 이상 늦는 경우 버스 디스패치에게 (800) LA-BUSES 로 전화한다.
- 통학버스 승하차 시간은 노선 조정, 등하교 시간 변경, 교통 사정이나 날씨 상태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

- 부모는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그리고 학생을 데리고 가도록 위임된 성인의 이름(들)을 학교에 즉시 알린다(그리고 장애학생의 경우, 특수 교육 서비스 센터-운영부에 (213) 241-6701 로 연락함).
- 교통편 관련 질문이나 염려 사항이 있다면 (800) 522-8737 로 연락하거나 <http://transportation.lausd.net> 검색한다
- IEP(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집에서 픽업하고 데려다 주는 서비스르 받은 학생은 버스 승하차 시 학생을 데리고 갈 지정된 책임있는 성인이 있어야 한다.

통학버스 관련 행동규범

타이틀 V 항, 캘리포니아 법규 제 14103 조에 의하면, 통학버스 또는 학생 활동 버스로 이동하는 학생은 그 버스의 운전수의 권한 하에 그리고 그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된다. 더불어 해당 운전수는 버스 내 그리고 도로, 하이웨이에서 학생을 이동시키는 동안 학생들의 질서있는 품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학교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학교에서와 동일한 규율과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비행, 학교버스 운행 방해, 학교버스 운전수에게 무례한 행동, 학교버스 안전 운행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학교버스를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탈 수 없는 것을 포함한 여러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통학버스 내에서의 학생의 품행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800) 522-8737 로 연락하거나 <http://transportation.lausd.net> 검색한다.

균일 고소 절차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UCP)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법, 연방법 및 규제법을 반드시 준수해야할 책임이 있다. 교육구는 이런 법규와 법 조항 준수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고소건,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 주장 고소건; 교육적 활동에 대한 비용을 학생에게 부과했다고 주장하는 고소건; 학년별로 정해진 체육 교육 수업 시간 비준수건; 무숙자 학과 포스터 케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제공을 지키지 않은 비준수건; 교육적 내용이 없는 학과정 그리고 이전에 이수한/성적이 이미 나온 과정으로서 대학 교육의 필수조건/예비조건으로 충분한 과정, 졸업장 취득 조항 단지 특정 상황을 제외된다: 수유하는 학생들에게 합당한 편의조치 불이행; 또는 로컬 콘트롤 및 책무 플랜 (LCAP) 법적 조건 불이행 고소건을 조사한다. 본 교육구는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5, 제 4600-4687 항 그리고 교육구 방침 및 절차에 명시된 균일 고소 절차(UCP)에 의거하여 이런 고소건을 관할 구역 차원의 해결을 추구할 것이다. UCP 고소건은 반드시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5, 제 4600-4687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접수되어야 한다.

UCP 고소건이 적용되는 혐의주장:

1. 형법 제 422.5 항, 교육법 제 220 항에 명시된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을 근거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 상당한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실질적 또는 인지된 성, 성적 성향,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인종 또는 민족, 민족 집단 식별, 조상, 국적, 태어난 국적, 종교, 피부색, 정신 또는 신체 장애, 연령을 근거로 또는 이런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그리고 또는 연방법과 주법 위반 행위.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62.3 항에 의거하여, 고소건을 제기한 사람은, UCP 하에, 민법 구제책을 고지받으며, 이에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국한되지 않으며, 위반사항, 접근 금지령 또는 기타 구제책들이 주법 또는 연방법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법규 하에 제공될 수 있다.
2. 유형별 자금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관련 법규 불이행의 경우:
 - 성인교육
 - 방과후 교육 및 안전
 - 농업 직업 교육
 - 미 원주민 교육 센터 및 조기 유아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이중언어 교육
 - 캘리포니아 교사 동료 지원 및 심의 프로그램
 - 커리어 기술 및 기술 교육; 커리어 기술; 기술 트레이닝
 - 차일드케어 및 발육
 - 아동 영양
 - 통합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 교육적 내용이 없는 학과목 교시
 - 열악한 경제 상황 지원
 - 현재 교육구에 등록되어 있는 위탁 보호 학생, 무숙자 학생, 군인 자녀, 전 청소년 법정 학생. (교육 구는 지정된대로 위탁 아동과 무숙자 청소년의 교육 권리에 관한 표준화된 통지서를 EC §§48853, 48853.5, 49069.5, 512225.1, 51225.2 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게시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고소 처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영어 학습생 프로그램
 - 모든 학생 성공법/낙오자 없는 교육법 (2001) 프로그램, 이에에는 학업 성취도 증진, 보상 교육, 영어 미숙 및 미주자 교육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이주자 교육
 - 아동 영양 서비스
 - 체육 교육 수업 분수, 1-6 학년
 - 학생 비용
 - 모유 수유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조치
 - 지역별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
 - 학교 안전 플랜
 - 특수 교육
 - 주 프리스쿨
 - 흡연-관련 교육
3. 비승인 학생 비용 추가: 학생은 교육 활동에 참여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단지 그런 비용의 부과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허락된

경우 그리고 교육법 제 49011 를 저촉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만약 해당 고소건이 학생 비용 관련 법규를 비준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학생 비용 고소건은 익명으로 접수시킬 수 있다.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로부터 일년 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학생 비용 비준수 고소건은 먼저 학교 교장 또는 해당기관의 교육감 또는 그의 담당인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학생 비용 고소건이 타당성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공립학교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학생, 부모 및 보호자에게 해당될 경우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해당 학생, 부모, 보호자에게 비용을 전제 상환하며, 이는 주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법규를 통해 절차가 진행된다. 교육구는 고소건 접수일로부터 일 년전까지 학생 비용을 지불한 모든 학생, 부모 및 보호자를 식별하고 전제 비용을 상환하는데 합리적인 노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4. LCAP 관련 법적 조건 준수 불이행: 교육구가 LCAP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고소건은 UCP 고소 절차를 통해 접수시킬 수 있다. (교육법 제 52075 항). 만약 해당 고소건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고소건은 익명으로 접수될 수 있다.

LCAP 필수조건은 교육법 제 52060-52076 항에 명시되어 있다. 2013년 7월 1일, 브라운 주지사는 하원의원 법안 97 즉, 로컬 콘트롤 펀딩 공식 (LCFF) 법안에 서명했다. LCFF 의 일부로서, 교육구, 교육 카운티 부서와 차터 학교는 주 교육위 템플릿을 이용하여 삼년차 LCAP 를 개발, 채택하여 매년 업데이트시켜야 한다. LCAP 은 연례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목표 실행을 위한 행동안을 작성해야만 하며 그리고 소영역 학생 집단의 진전도를 주정부에서 설정한 여덟 개의 우선순위를 토대로 측정해야만 한다. 이런 우선순위들은 반드시 교육구의 지출 계획안과 일치되어야만 한다. LCAP 은 반드시 연례 교육구 예산이 채택되기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예산과 LCAP 이 해당 교육구 차원에서 채택되면, 그 계획안은 카운티 총교육감에 의해 심의될 것이며 그리고 예상 지출을 목표 및 서비스와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은 여덟 개의 주 우선순위들이다:

- 학생들에게 정식 유자격 교사, 주 학습기준과 일치하는 학습자료 그리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한다.
- 캘리포니아 학업 학습기준 실행, 이에는 커먼코어 주 학습기준 영어 언어 과목과 수학, 차세대 과학 학습기준, 영어 언어 개발, 역사 사회 과목, 시각 및 공연 예술, 보건 교육 및 체육 학습기준.
- 학부모 개입 및 참여, 이를 통해 인근 커뮤니티가 결정 과정과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에 개입하도록 한다.
- 학생 성취도 증진과 여러 측정법을 통한 성과, 이에는 테스트 점수, 영어 능숙도 및 대학과 커리어 준비가 포함된다.
- 학생 참여 지원, 이에는 학생의 출결석 또는 만성적 결석도 포함된다.
- 학교 문화 및 유대감 증진은 정학 및 퇴학률과 기타 학교별로 식별한 다양한 요소로 적용한다.
- 학생이 다니는 학교 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대학 진학과 커리어를 준비시키는데 필요한 클래스 기회를 제공한다.
- 필수 학과목에 대한 중요한 학생 성과를 측정하며 이에는 체육 및 예술 과목도 포함된다.

이런 여덟 개의 영역에 추가하여, 교육구는 자체적 우선순위와 관련된 플랜 목표를 식별하고 접목시킬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총교육감에게 LCAP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자문 위원회(PAC)와 영어 학습생 학부모 자문 위원회(ELPAC)를 반드시 형성한다. 어떤 교육구 등록 학생수가 최소 15%의 영어 학습생을 그리고 그 교육구에 최소 50 명의 영어 학습생이 등록되어 있다면, ELPAC은 있어야 한다. 해당 교육구가 이미 EL 학부모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교육구는 새로운 ELPAC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PAC 은 저소득층 학생, 영어 학습생과 포스터 청소년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포함한다.

LCAP 를 개발할 때, 교육구는 교사, 교장, 행정관, 기타 학교 직원, 관할 노조 협상위,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할 것이다. 이런 자문 과정의 일부로써, 교육구는 반드시 그들의 제안 플랜을 PAC 과 ELPAC 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이런 자문 위원회는 제의된 플랜을 심의하고 이에 대해 소견을 피력할 수 있다. 교육구는 반드시 PAC 과 ELPAC 의 의견에 서면으로 응답해야만 한다. 더불어 교육구는 일반 대중에게 LCAP 에 제시된 특정 실행안과 지출안에 대해 서면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해야만 한다.

교육구는 LCAP 를 토론하고 채택(또는 업데이트)하기 위해 최소 두 번의 공공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해당 교육구는 이런 플랜에 제시된 지출안에 대해 일반 대중의 추천과 소견을 듣기 위해 최소 일 회의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런 다음 차후 청문회에서 LCAP 을 채택 (또는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함) 해야만 한다. 본 교육구는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LCAP 그리고 LCAP 의 업데이트 또는 수정 내용을 교육구 웹사이트에 반드시 게시해야만 한다.

5. 초등학교에 채택된 체육 교육 과정 준수 불이행: 기존 법규에 의하면, 1 학년부터 6 학년까지 채택된 학과정, 특정 학과목 수업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에는 체육 수업을 10 일의 학교일마다 총 200 시간 이하로 포함시켜야 하며, 리세스와 점심시간은 이에 제외된다. 1 학년부터 8 학년까지 수용한 초등학교의 체육 수업을 10 일의 학교일마다 총 200 시간 이하로 포함시켜야 하며, 리세스와 점심시간은 이에 제외된다.
6. 교육법 §§ 48853, 48853.5, 49069.5, 51225.1 및 51225.2 에 의거하면, 포스터 학생, 무숙자 학생, 전 법정 소년 학교 학생, 그리고 즉시 입학 할 군인 자녀의 학생, 원래 학교에 남아서 재학, 관할 종합 학교에 등록, 일부 학정 취득, 주 최소 조건으로 졸업 그리고 학업 자원, 서비스에 대한 기회 그리고 과외 활동에 대한 학생의 교육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의 비준수 고소건은 교육구 UCP 하에 접수될 수 있도록 수정을 허용한다
7. 교육적 내용이 없는 학과정 등록 그리고 대학 교육 및 졸업장 취득의 조건 또는 예비조건을 이미 충분히 이수한 또는 성적을 받을 학과목 등록 불이행: 2016-17 학년도부터 시작하여, 교육구는 9 학년부터 12 학년 학생들에게 교육적 내용이 없는 학과정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생은 교육적 내용이 없는 학과정에 매 학기마다 1 주 이상 등록될 수 없으며 또한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 교육 기관에서 요구하는 학과목 조건 및 예비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과정을 이미 이수했거나 고교 졸업장 취득에 최소한 요구되는 학과목에서 교육구로부터 정해진 성적을 받을 학과목에 학생을 등록시킬 수 없으며, 단지 특별 상황은 제외된다.

준수 국장

교육구는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 디렉터는 교육구 준수 부서 책임자로 지정되었으며, 고소 사항을 접수, 조사를 지시하며 고소 및 차후 관련 소송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여, 교육구가 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교육구 UCP 절차 또는 고소건 접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에 (213) 241-7682 로 연락하십시오.

통지

교육구는 학생, 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 학교 자문 위원회, 해당 사립 학교 임원이나 담당인, 그리고 기타 본 절차에 이익 당사자와 고소 처리에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매년 서면으로 UCP 절차와 고소건 처리 책임자를 통지할 것이다.

UCP 고소장 접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법 또는 주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은 반드시 교육구 교육 형평성 준수국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고소인이 비준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관련된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소장은 익명으로도 접수될 수 있다. 고소인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고소장 내용이 본 방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 경우, 고소인은 서면으로 조연을 받을 것이다.

UCP 서식서는 요청시 학교나 교육구 사무실로부터 받거나 교육 형평성 준수 부서로 (213) 241-7682 로 전화하거나, 균일 고소 절차 정보 교육구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eeco> 에서 받을 수 있다. 교육구 UCP 방침 및 고소 절차서 사본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포함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고소장 접수를 원하고 서면 고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교육구 직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구는 최대한 기밀을 보장한다. 고소인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교육구에서는 고소 사항을 제기하거나 고소 조사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한다.

교육법 제 262.3 항에 따라, 고소인은 주 또는 연방 차별, 괴롭힘, 협박 및 / 또는 왕따 법률에 따라 민법의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을 조연한다.

교육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 교육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은 교육구로부터 결정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십오일(15) 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고소장 원본 사본, 교육구로부터 받은 결정서 사본 그리고 항소의 구체적인 사유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그리고/또는 왕따 혐의주장에 대한 교육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서는 다음으로 보내야 한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 Equity UCP Appeals Office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포스터/홀리스/병역 청소년 서비스, 초등교 체육 분단위 시간, 교육적 내용이 없는 학과점 등록 그리고 대학 교육을 위한 필수조건/예비조건을 충분히 이수한 이전에 완료한성적을 받은 학과목 그리고 졸업장 수령 또는 학생 비용을 포함한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구 결정에 대한 항소는 다음으로 접수시킨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Categorical Programs Complaints Management Office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LCAP 관련 교육구 결정에 대한 항소: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Local Agency Systems Support Office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특수 교육 준수와 관련된 교육구 결정에 대한 항소: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Division Procedural Safeguards Referral Service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	--

UCP 하에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서 다루는 프로그램, 서비스 및 항소 부서에 대한 추가 연락처는 <https://www.cde.ca.gov/re/cp/u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자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 또는 긴급 시설 조건, 교사의 공석이나 잘못 배정에 관한 고소건 접수에 관한 정보는 Williams 균일 고소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학교 캠퍼스 방문인

캠퍼스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교장/담당인으로부터 방문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은 가급적 요청과 동시에 또는 요청 후 적절한 시간내에 주어야 한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 아닌 아동은 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기 전에는 캠퍼스에 들어올 수 없다. 방문인은 수업이나 학교활동을 방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질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교육구 방침 즉 공문 번호 3630 호에 의거하여, 교육구-소유 또는 임대 부지 그리고 교육구 차량은 금연 장소이며 모든 담배 관련 제품, 전자-담배 및 기타 부속 기구들이 항상 금지된다. 이에는 직원, 학생 그리고 학교나 교육구, 학교-후원 행사에 참여는 모든 사람이 항상 이를 지켜야 한다. 다음은 방문인에게 기대되는 내용이다

- 교실 방문 요청시 이미 규정된 학교방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
- 학교 도착하는 동시에 방문인 허가증을 작성한다.
- 교실을 가급적 조용히 출입한다.
- 방문시 학생, 교사 그리고/또는 보조교사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 학교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 교실 방문 시간과 빈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 방문 후, 교사 그리고/또는 교장을 만나야 하는 경우 학교 규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 학교 차원에서 적용하는 행동 기대치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 캠퍼스를 떠날 때 방문인 허가증을 반납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학교 규칙 그리고/또는 절차 준수를 불이행하는 사람은 학교로부터 나가게 할 것이며 추가 방문이 제약받을 수 있다

윌리엄스/발렌주엘라 균일 고소 절차

윌리엄스/발렌주엘라 균일 고소 절차, 교육법 제 35186 항은 다음과 관련된 부모, 보호자, 학생, 교사, 기타 구성원의 소송 권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모든 학교는 영어 학습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가거나 그리고/또는 방과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과서 그리고/또는 학습자료를 제공해야만 한다.
- 학교 시설물은 청결, 안전하고 양호한 수리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 학교 시간 동안 충분한 수의 화장실이 청결하고, 비품을 잘 갖춘 상태로 오픈되어 있어야만 한다.
- 각 클래스에 일련의 대리교사나 임시교사가 아니라 한명의 정식 교사를 배정하도록 한다. 해당 교사는 적절한 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고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며, 영어 학습생이 해당 클래스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은 교사이어야 한다.

고소건은 윌리엄 균일 고소장을 사용하여 접수할 수 있고 또한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 서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고소건은 거부될 것이다. 위의 문제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학교 메인 오피스
-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에 (213) 241-7682 로 전화하거나 또는 교육구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eeco> 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문제 해결 및 응답 해당 기간을 맞추기 위해, 모든 고소장은 다음 중 한 곳에 접수시켜야 한다:

- 학교 현장(메인 오피스, 교장 등)
-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에 (213) 241-3312 로 팩스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미 운편물로 우송한다:

LAUSD - 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
Williams/Valenzuela Complaints
333 South Beaudry Ave., 20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결의안에 만족하지 않는 고소인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교육위 회의에서 교육구의 운영위원회에 고소건을 설명할 권리가 있다. 응급 또는 긴급한 위협을 제기하는 시설의 조건과 관련된 고소건을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항소의 권리가 없다. 윌리엄스 UCP 과정에 관한 질문은 교육 형평성 준수 부서에 (213) 241-7682 로 연락하거나 윌리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achieve.lausd.net/eec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부모/학생 인정서 2018-2019 학부모/학생 안내서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께:

교육법 48980 (a) 항에 의하면, 교육 위원회는 해당 교육구/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권리를 통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부모 권리에 대한 정보를 고지 받았음을 인정하는 의미로, 통지서에 반드시 서명하여 자녀의 학교로 보내야만 합니다.

새로이 작성된 학부모-학생 안내서를 읽으시고 서명한 아래 부분을 학교로 보내주시시오.

귀하의 서명은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취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연례 학부모/학생 안내서 통지서 수령증 2018-2019 학부모/학생 안내서

본인은 아래 본인의 서명에 의해, 본인의 아들/딸을 대신하여 학부모/학생 권리에 대한 연례 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합니다.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과 학년을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학생 성명:

성	이름	중간이름 이니셜	생년월일	학년
---	----	----------	------	----

학부모/보호자 서명

학생 서명(6-12 학년)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부모/학생 안내서-2018-2019

정보 공개 동의서

연방법 및 주법에 하에, 교육구는 허락된 특정 개인, 기관 그리고/또는 공직원에게 학생 안내용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9073 에 의거하여, LAUSD 는 위에 명시된 직원 및 기관에 공개될 수 있는 안내용 정보로서 다음의 유형의 정보를 식별했습니다. 17 세 이하 자녀의 부모 및 18 세 이상의 성인 학생은 안내용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개하지 말라고 학교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학생 안내용 정보 비공개 요청은 이번 학년도에만 적용됩니다.

더불어, 교육법 제 69432.9 항에 의거하여, 12 학년생들은 칼 그랜트 신청인으로 간주하며 단지 학생이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신청을 원하지 않는 학생 제외한 12 학년생들을 위해 교육구는 평균 내신 성적(GPAs)을 캘리포니아 학생 지원 위원회(CSAC)에 제출해야만 하며 이는 칼 그랜트 자격성을 결정하고 그리고 대학 교육을 위한 적절한 재정 지원금을 결정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교육구에 의해 검증된 GPA 정보가 없다면, CSAC 는 칼 그랜트 자격성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이가 18 세인 12 학년생 또는 18 세 미만의 12 학년생의 부모/보호자는 자동적으로 칼 그랜트 신청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선택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안내용 정보 공개 서식서를 읽고 작성한 다음, 학교 교장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본 서식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자녀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자녀의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 2018-2019 학부모/학생 안내서
안내용 및 GPA 정보 공개 동의서

학교 명: _____ 날짜: _____

학생 성명: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생년월일:	학년:
주소:	시:	
우편번호:	전화번호:	

1. 본인은 어떠한 안내용 정보도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또는
2. 본인은 아래 글상자 (들) I 에 표시한 내용에 따라 안내용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공개하지 않음
선출된 공직원	
L.A. 카운티 아동 및 패밀리 서비스 국	
L.A. 카운티 건강 관련 서비스 국	
L.A. 카운티 정신 건강 국	
L.A. 카운티 보호 경찰 국	
LAUSD 학교-중심 건강 케어 제공자	
LA 트러스트 아동 건강 국	
학부모 교사 학생 협회	

	공개하지 않음
1. 성명	
2. 주소	
3. 생년월일	
4. 출석 기간(예: 학년도, 학기)	
5. 현재 학교 및 최근 재학 학교(들)	
6. 학위, 아너스 및 수상 경력	

3. 11 학년과 12 학년생에게만 해당됨: 본인은 아래 글상자 I 에 표시한 기관에 위에 명시된 학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_____ 미 합중국 국군력(군대) 모병 기관
 _____ 칼리지, 대학 또는 기타 고등교육 기관
 _____ 내셔널 학생 클리어링하우스 (대학 입학 진로)

4. 12 학년생에게만 적용됨:
 _____ 본인은 위에 명시된 학생의 GPA 가 캘리포니아 학생 지원 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2018-2019
연례 살충제 사용 통지서

본 교육구는 통합 해충 관리 방침(IPM)을 채택했습니다. 본 방침에는 살충제 사용시, 이를 부모/보호자와 교육구 직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년도 동안, 해충에 의한 심각한 질병그리고/또는 건물 구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에 노출될 경우 자녀나 본인(학교 직원) 건강 그리고/또는 행동이 지장있는 경우, 다음을 통지합니다:

- 승인 목록에 속한 살충제는 해당 학년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교육구 산하 모든 장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살충제 목록이 첨부되어 있음으로 이를 참고하십시오).
- 비승인 제품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72시간 전에 통지합니다(예외: 비상시에는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교육구 승인 목록을 포함한 살충제 관련 추가 정보는 <http://www.cdpr.ca.gov> 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살충제가 사용될 때마다 사전에 통지받기를 원한다면, 아래 부분을 작성한 후 절취선 부분을 잘라서 학교 메인 오피스로 보내주십시오.

-----절취선 부분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학부모/보호자 통지 요청서

- 본인은 자녀의 학교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때마다 사전에 통지받기를 원합니다(예: 연례 살충제 사용 통지서에 추가로). 본인은 살충제 사용 전 적어도 72 시간 전에, 해당 통지서가 자녀편으로 집으로 보내지거나, 교직원으로서 본인에게 제공된 것을 이해합니다. (예외: 비상시에는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자녀의 학교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때마다 사전에 통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학부모 학생 안내서에 실린 연례 통지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학교에서 사용된 공인 살충제를 통지받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학교 성명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_____

학교 명: _____ 교실 번호 _____

부모/보호자 성명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Note to Site Administrator

File the original in the Main Office. If the above “I would like to be notified” box is checked, forward a copy of this notice via school mail to Pest Management Unit.

Maintenance and Operations Central 3 and Special Services
Attn. Pest Management Unit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Approved Pesticide Product List - 2018-2019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사전 예방 원칙과 알 권리에 약속합니다. 아래에 나열된 모든 제품은 LAUSD가 교육구 부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는 아래 나열된 승인된 제품이 모두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품 중 일부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열된 제품 중 일부는 해충 감독관 승인 및/또는 적용 중 직접 감독을 요구하며, IPM 방침에 설명된대로 건강 또는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이 목록의 맨 아래에 나열되어 있으며 제한 사항은 "설명" 열에도 나와 있습니다.

살충제	(1)				USEPA 특성 유형	(2)		의견	EPA REG. NO. or CA. REG. NO.
	유효성 성분	외형상 특성	사용 방법	목표물 해충		레벨 지정			
Advance Granular Ant Bait	아마벡틴 B1 0.011%	알갱이	실내 틈새와 구멍. 실외는 레벨에 따라 사용.	개미	3	주의	미끼 유인제.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370	
Alpine Cockroach Gel Bait	Dinotefuran	젤	실내 틈새, 구멍과 빈 공간	바퀴벌레	3	주의	미끼 유인제.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507	
Avert Dry Flowable Cockroach Bait (Formula 1)	아마벡틴 B1 0.05%	미립자	틈새와 구멍 미립자 미끼	바퀴벌레	3	주의	미끼 유인제.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294	
Bora-Care Termiticide, Insecticide and Fungicide Concentrate	disodium octaborate tetrahydrate 40%	액체 현탁	해충으로 감염된 나무에 분무기로 뿌린다	터마이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4405-1	
ContraC Blox	브로모디알론 0.005%	고체 덩어리 미끼	먹이 서식지에만 사용하는 땅굴쥐 미끼	땅굴쥐	3	주의	먹이 서식지에 간혹 사용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12455-79	
Distance IGR	피리프로시펜 0.5%	알갱이	부분 또는 전지역	불개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1021-1728-59639	
Drax Ant Kil Gel	붕산 5%	젤	실내와 실외 구멍 및 틈새. 설탕을 섞은 미끼	개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9444-131	
M-Pede	지방산 포타슘염 49%	액체	분무기로 해충에게 직접 뿌린다	아프리카 꿀벌, 삼주벌레, 농작물 해충	2	경고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53219-6	
MotherEarth 2% PY	Pyrethrin 2% (식물 재료 해충제)	에러솔	레벨에 따라 사용		3	주의	사용 후 식물을 다룰 때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520	
MotherEarth D	Diatomaceous Earth 100%	미립자	레벨에 따라 사용.	여러 해충들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509	
Niban Granular Bait and Niban-FG	붕산-5%	미립자, 미세한 미립자	실내 및 실외 미끼	여러 종류의 해충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4405-2	
NiBor-D	Disodium Octaborate Tetrahydrate-98%	분말	건조하거나 젖은 상태로 사용	여러 종류의 해충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4405-8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Approved Pesticide Product List - 2018-2019**

Recruit IV AG (Sentricon)	Noviflumuron 0.5%	고체	미끼를 서식지에만 사용	지하 터마이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2719-454
Recruit IV (Sentricon)	Noviflumuron 0.5%	고체	미끼를 서식지에만 사용	지하 터마이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2719-453
Tim-Bor Professional	붕산염 98%	분말	건조하거나 젖은 상태로 사용	나무 파괴 생물체 및 곰팡이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4405-8
ProFoam Platinum	황산염 인산수소, Sodium Lauroampho Acetate, Sodium Lauryl Sulfate.....60%	거품	거품을 내는 요소; 살충제가 아님	다양하게 사용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Ca. Reg. 1051148-50001-AA
Summit Bti Briquets	Bacillus thuringiensis subspecies israelensis solids, spores and insecticidal toxins-10%	고체 덩어리	물 위에 떠있는 유충	모기 유충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218-47
Ecovia EC	티미유 - 20% 2- Phenearyl Propionate-14% 로즈매리 오일 Oil- 8%	액체	분무기로 뿌린다	레벨의 지시에 의거에 함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예외 조항 - FIFRA 25 (b)
Ecovia WD	티미유 - 10% 2- Phenearyl Propionate-7%	분말	레벨에 따라 사용.	레벨의 지시에 의거에 함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예외 조항 - FIFRA 25 (b)
다음 제품은 제품별로 표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표시된대로 해충 관리자 또는 기타 승인이 사용되기 전에 필요합니다.								
Demize EC	리날롤 37%, 파이퍼로닐 부트오시드 40%	액체	분무기 사용	벼룩	1	위험	해충 관리자, IPM 코오디네이터 또는 독립적인 IPM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 빈 공간 시설에만 사용한다. IPM 팀은 다음 팀 회의에서 통보받는다.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PPE의 제품 라벨을 참조하도록 한다.	2724-769-57076
Generation Mini-Block	디페타아론 0.0025%	고체 미끼 덩어리	미끼를 서식장소에만 사용	땅굴쥐	3	주의	건고한 미끼 통을 사용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7173-218
Gentrol IGR Concentrate	하이드로프렌 9%	액체	틈과 구멍에 분무기로 뿌린다	바퀴벌레, 벼룩, 저장실 해충	2	경고	시설물에만 사용. 해충 성장 조정.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2724-351
PT 565 Plus XLO Formula 2	피레트린-0.5% 피페로닐	에러솔	레벨에 따라 사용.	벼룩, 각다귀,	3	주의	사용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499-290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Approved Pesticide Product List - 2018-2019**

	볼록시드-1% 엔-옥틸 비사이클헥세틴 디카르복실산 1%			모기, 벌, 진드기			출입이 가능하다. 사용 후 식품을 다룰 때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PT Wasp Freeze	페노트린 0.12%, d-트랜스 말레트린 0.129%	에러솔	실외용 분무기로 직접 말벌과 벌에 뿌린다	말벌, 벌	3	주의	사용하기 전에 수퍼바이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362
Rozol Pocket Gopher Bait	Chlorphacinone.....0.005%	알갱이 미끼	땅다람쥐 서식지에만 사용한다	땅다람쥐	3	주의	학생들이 인근에 없을 때, 운동장과 조경지에 사용함.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7173-184
Suspend SC	델타메트린 4.75%	액체	분무기로 뿌린다	벼룩, 티크, 불개미	3	주의	실외에만 사용함. 벼룩, 티크와 불개미. 사용 후 24시간이 지나야 출입이 가능하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32-763
Wilco Ground Squirrel Bait	Diphacinone 0.005%	알갱이 미끼	미끼 서식지에만 놓는다.	땅굴 다람쥐	3	주의	곧 비가 올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 매년 사용할 때 수퍼바이저로부터 승인을 받음.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36029-20
Mosquito Larvicide GB 1111	Aliphatic Petroleum Hydrocarbons- 98.7%	액체	수면에 사용한다	모기 유충	3	주의	본 제품 사용시, 사용 지역에 차단용 테이프를 치서 경고 사인을 붙이도록 한다. 본 제품 사용한 모든 경우를 IPM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인벤토리 관리 방법이 사용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8329-72
Altosid Briquets	S-Methoprene- 8.62%	덩어리	물 위에 떠있는 유충	모기 유충	3	주의	본 제품은 물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곳 즉 폭풍 배관이나 저장 웅덩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2724-375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부모/보호자 홍보 권한 부여 및 해제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께: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쇄물, 오디오, 영상 또는 전자 방식의 활동을 통한 재생산에 대해 귀하의 허락을 요청합니다. 귀하의 승인은 (1) 교사 교육 및 / 또는 (2) 대중 매체, 디스플레이, 브로셔, 웹 사이트 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및 대중 인식 향상을 위해 특별 준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1. 학생의 성명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2. 생년월일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3. 부모의 성명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 a. 위에 언급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본인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및 그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게 전기 정보, 이름, 이미지 및 기타 정보를 원하는대로 인쇄, 사진, 기록 및 편집 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부여하고 허락합니다. 비디오, 영화, 슬라이드 또는 위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현재 개발된 ("녹음"이라고 함) 기타 전자 및 인쇄 형식에 대해 상기 명시된 학생의 내용, 모양 및 / 또는 음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 본인은 그러한 기록물의 사용이 학생이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보상없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 c. 본인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및 /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저작권을 포함한 독점권, 소유권 및 이권을 녹음물에 보유해야 함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d. 본인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및 /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상기 명시된 또는 관련 목적을 위해 녹음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가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e. 본인은 학생과 관련된 부모와 보호자가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런 녹음물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여 제기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조치, 청구, 손해, 비용 또는 경비로부터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이런 해들을 해제시킵니다.

본인의 서명은 본인이 이 조건을 읽고 이해했으며 그 조항을 수락한다는데 동의합니다.

4. 학부모/보호자의 서명

5. 서명 날짜

6. 주소 (번호, 도로, 아파트 번호)

7. 사

8. 주

9. 우편번호

10. 전화번호

승인 허락은 자발적입니다. 작성된 서식서를 학교에 제출하십시오

11. 교장

법률 고문 변호사 부서에서 서식서 승인.

12. 학교

이 양식은 고문 변호사 사무실과 통신 / 공공 정보실 모두의 서면 승인 없이는 수정 될 수 없습니다

MEMBERS OF THE BOARD

MÓNICA GARCÍA, PRESIDENT
KELLY GONEZ
DR. GEORGE J. MCKENNA III
NICK MELVOIN
DR. REF RODRIGUEZ
SCOTT M. SCHMERELSON
DR. RICHARD A. VLADOVIC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STUDENT HEALTH AND HUMAN SERVICES

333 South Beaudry Avenue, 29th Floor
Los Angeles, California 90017
Telephone: (213) 241-3840 | Fax: (213) 241-3305

AUSTIN BEUTNER
Superintendent of Schools

사생활 보호 업무 수행 통지서

본 통지서는 자녀에 대한 의료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귀하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 및 관련 계약 기관/학교들은 연방 법규에 의거하여, 의료 보험 이동성 및 책무성 법규(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를 준수하여 귀하의 보호된 건강 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PHI)를 기밀에 부쳐야 합니다. PHI에는 교육구가 자녀의 신원이 식별될 수도 있는 자녀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건강/의료 상태를 처음으로 작성했거나 취득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귀하의 서면 위임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는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된 경우에만 치료, 비용 지불, 의료 케어 운영등의 건강/의료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용되는 모든 경우를 열거하지 않았지만, 다음 설명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구는 이런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 1. 시간 약속 재확인 및 건강-관련 혜택 또는 서비스:** 귀하에게 시간 약속 재확인을 보내드리기 위해 PHI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기타 건강 케어 관련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드리기 위해서도 PH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치료:** 귀하에게 의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또는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케어 전문인과 같이 자녀의 케어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귀하의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재학중 필요한 적절한 특수 교육을 추천할 목적으로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위해 PHI를 관련 교직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 3. 자녀에게 제공된 치료 비용을 받기 위해:** 자녀가 학교 또는 커뮤니티에서 받은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귀하의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AUSD는 메디칼 수혜 유자격 학생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메디케어에 청구합니다.
- 4. 건강 케어 운영:** 교육구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보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귀하의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구의 질적 개선 멤버는 질적 개선 목적을 위해 케어 및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자녀의 건강 기록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구는 연방, 주 또는 시 법규가 요구하는 경우, 정부 직원 또는 법 집행 기관에게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정 또는 기타 법 절차상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PHI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이 아동 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생에 대한 사적 정보를 신고해야만 한다고 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6. 공공 보건 활동 보고를 위해:** 특정 공공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 공무원에게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 사망 및 SARS와 수두와 같은 질병에 대한 일부 통계 정보에 대한 일반 정보를 공유합니다.
- 7. 리서치 목적을 위해:** 의료 리서치 목적을 위해 PHI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하지만, 자녀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PHI를 사용할 것입니다.
- 8.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인 또는 대중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교육구는 법 집행 기관, 응급요원이나 이런 위험을 중시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PH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9. 기금 모금:** 교육구의 서비스를 강화 및 확대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그랜트를 신청하거나 그리고/또는 기금 모금 기관에게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신원이 식별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귀하의 PHI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LAUSD의 관행입니다.

귀하의 권리

- 교육구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거나 사본을 취득할 권리 또는 분실되었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개별 정보를 정정할 권리. 다른 사람(귀하의 의사)이 이런 정보를 교육구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귀하에게 알려서 이런 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비용 지불 또는 건강 케어 운영 활동을 위해 귀하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할 권리. (교육구는 이런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합당한 대안책 또는 다른 장소에서 건강 문제에 대해 귀하와 의사소통해줄 것을 교육구에 요청할 권리.
- 귀하의 승인을 서면으로 언제든지 기각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부모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구는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가 2003년 4월 14일 이후 작성한 귀하의 건강 정보 공개 목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귀하는 공개를 허락했다.
 - 이런 공개는 치료, 비용 지불 또는 건강 케어 운영을 위한 것이다; 또는
 - 달리 법규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질문이 있다면 로전화 Margarita Bobe (213) 241-0558.

고소 절차 귀하의 사생활 보호권이 위반되었다고 생각되면, 서면 고소장을 다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Margarita Bobe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 Student Health and Human Services
333 South Beaudry Avenue, 29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고소 절차 대안책:

Privacy Complaints
P.O. Box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7500 Security Boulevard, Baltimore, Maryland
1-800-633-4227



학교 분위기 권리장전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는 모든 학생의 총괄적인 복지와 안녕을 지원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SD 학생, 직원 및 학부모/보호자들은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시행세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따라서 긍정적 행동 중재를 토대로 한 훈육 문화를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며, 학습지도 시간에 방해하는 처벌적 훈육 접근법을 멀리 하고자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도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대학 및 커리어 선택의 기회를 높여서 우리 학생들이 건설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릴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안전, 티칭과 러닝, 대인관계에 중점을 둔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며, 학생의 배움과 안녕을 장려하는 제도적 환경 하에 학교를 다닐 것입니다.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는 다음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전체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SWPBIS)**
 정학 감소, 출석 증가, 시험 성적 향상 그리고 교직원 지원을 추구하는 중재.
- 교육구 SWPBIS 특별부서 SWPBIS**
 테스크포스 구성원들은 교사, 학생, 행정관 그리고 교육 서비스 센터에서 온 학부모 대표들이며, 더불어 SWPBIS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 커뮤니티 기관의 멤버들로부터 추천사항을 받는다.
- 정학에 대한 대안 및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정학 대안 전략은 정학처분을 내리기 전, 일관성있고 연령에-적합한 방법으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것이며, 다만,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15(c) 하에 요구되는 제한적 위반행위는 제외된다. 2013년부터, 어떤 학생도 “고의적 반항” (48900(k) 위반행위로 정학 또는 퇴학처분 받지 않을 것이다.
- 교정에서의 학교 경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행세칙**
 학생들은 법 집행기관, 보호감찰, 및 미성년 및 형법 사법제도를, 가급적 최대한 범위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 이들의 개입을 최소화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분위기에 대한 권리가 있다.
- 학교 훈육 및 학교-차원의 체포 및 위반장 데이터는 볼 수 있음**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들은 학교-차원의 월별 훈육 데이터를 교육구 웹사이트를 통해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이 포함된다: 정학, 비자발적 전학, 기회 전학, 퇴학, 학교-차원의 체포 및 위반장. 이런 데이터는 개별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공될 것이다.
- 학교-전체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정식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제도**
 학생 그리고 학부모/보호자들은 만약 SWPBIS 가 요청 후, 60일 내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정식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지고 있다.
- 복구적 정의 (RJ) 접근법을 통해 학생의 대인 갈등을 해소한다**
 2015-2016 학년도부터, 모든 학교들은 전통적인 학교 훈육의 대안으로써 RJ를 개발 및시행할 것이며, 해당될 경우,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전략과 일치하는 중재로써 적용될 것이다.



학교 분위기 권리장전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는 모든 학생의 총괄적 복지와 안녕을 지원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SD 학생, 직원 및 학부모/보호자들은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시행세칙을 중요히 생각하며, 따라서 긍정적 행동 중재를 토대로 한 훈육 문화를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며, 학습지도 시간을 방해하는 처벌적 훈육 접근법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도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대학 및 커리어 선택의 기회를 높여서 우리 학생들이 건설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안전, 티칭과 러닝, 대인관계에 중점을 둔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며, 학생의 배움과 안녕을 장려하는 제도적 환경 하에 학교를 다닐 것입니다.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는 다음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전체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SWPBIS)**

LAUSD는 훈육 기본 방침에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과 함께 정학처분의 대안으로 시행할 것이다. 적절한 예방 및 중재 접근법은 책무와 화합을 가져다 주며, 이는 훈육이 주는 충격 그리고 이로 인한 상처 치료를 이해하게 된다. 이를 공동 결정 과정을 통해 시행한다.

- **정학에 대한 대안 및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정학 대안 전략은 정학처분을 내리기 전, 일관성있고 연령에-적합한 방법으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것이며, 다만,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15(c) 하에 요구되는 제한적 위반행위는 제외된다. 2013년부터, 어떤 학생도 “고의적 반항” (48900(k) 위반행위로 정학 또는 퇴학처분 받지 않을 것이다.

- **학교 훈육 및 학교-차원의 체포 및 위반장 데이터는 볼 수 있음**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들은 학교-차원의 월별 훈육 데이터를 교육구 웹사이트를 통해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이 포함된다: 정학, 비자발적 전학, 기회 전학, 퇴학, 학교-차원의 체포 및 위반장. 이런 데이터는 개별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공된다.

- **복구적 정의 (RJ) 접근법을 통해 학생의 대인 갈등을 해소한다**

2015-2016 학년도부터, 모든 학교들은 전통적인 학교 훈육의 대안으로써 RJ를 개발 및시행할 것이며, 해당될 경우, 복구 전략 트레이닝을 받은 직원 그리고 개입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한 하에, 발생된 손상을 식별하고 화합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학교 훈육 사건을 해결한다. 이런 복구 절차를 통해, 해당 그룹은 손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유해를 예방하기 위해 뿌리가 되는 원인을 찾아가는 합의안을 작성한다. 복구적 정의 (RJ) 접근법은 모든 학교 훈육 사건에 대해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SWPBIS) 방침과 일치하는 중재로서 적용될 수 있다. 단지,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15항 또는 안전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요구되는 퇴학 권고는 제외된다.

- **교육구 SWPBIS 특별부서**

SWPBIS 테스크포스 구성원들은 교사, 학생, 행정관 그리고 교육 서비스 센터에서 온 학부모 대표들이며, 더불어 커뮤니티 기관의 멤버들로부터 추천사항을 받는다. 더불어 학생, 직원 및 학부모/보호자들과 함께 교육구-차원의 긍정적 문화 및 복구적 정의 (RJ) 접근법 시행에 대한 추천사항을 제공할 것이다.

- **교정에서의 학교 경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행세칙**

학생들은 법 집행기관, 보호감찰, 및 미성년 및 형법 사법제도를, 가급적 최대한 범위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 이들의 개입을 최소화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분위기에 대한 권리가 있다.

- **학교-전체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정식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제도**

학생 그리고 학부모/보호자들은 만약 SWPBIS가 요청 후, 60 일 내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정식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지고 있다.

